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2021 개정판 실무자
길라잡이 알기쉬운

퇴직연금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고객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100세시대 은퇴설계의 필수! NH퇴직연금!

NH농협은행

2021 개정판

실무자 길라잡이 알기쉬운 퇴직연금

2021 개정판

대한민국의 행복파트너! NH농협은행

2021 개정판 실무자
길라잡이 알기쉬운 퇴직연금

NH농협은행

☎ 퇴직연금 전용 콜센터 1588-5995(평일 : 09시 ~ 18시)

🌐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 <https://pension.nonghyup.com>



2021 개정판 실무자
길라잡이 알기쉬운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IRP

NH

PART 1

퇴직연금제도

1.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01. 노후준비의 중요성	007
02.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008
03. 노후준비 기본전략	008
04. 노후 필요자금 산출방법	009
05. 퇴직연금 자산증식을 위한 상품운용의 중요성	010

2. 퇴직연금 개요

01. 계속근로기간 산정	013
02.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019
03. 퇴직연금 도입	023
04. 퇴직연금 운영	029

3. 퇴직연금 회계 / 세무

01. 퇴직연금 제도별 회계처리	057
0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061
03. 퇴직연금 세무관련 주요내용	063
04.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체계	069
05. 과세이연시 과세체계	084
06. 연금수령시 과세체계	091
07. 임원퇴직급여	099

이 책자는 2021년 6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세법 그리고 기업 회계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업무절차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개정 등으로 내용이 책자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 등을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PART 2

퇴직연금 실무

1. 부담금 입금

01. 부담금 산정	107
02. 부담금 시산(계산)	108
03. 재정검증	110

2. 적립금 운용

01. 퇴직연금 자산 운용	117
02.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법 변경	124
03. 포괄적 운용지시	125

3. 퇴직연금 지급

01. 퇴직연금 지급절차	131
02. DB형 가입자 퇴직연금 지급	132
03. DC형 가입자 퇴직연금 지급	138
04. 중도인출(DC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	143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01. 개인형IRP 개요	155
02. 개인형IRP 지급	160

5. 가입자 교육

01. 가입자 교육의 개요	171
02. 가입자 교육방법	172
03. 가입자 교육서비스 이용방법	174

6.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179
----------	-----

7. 알림서비스

알림서비스	185
-------	-----

8.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189
-------	-----

P A R T

0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 1.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006
- 2. 퇴직연금 개요 012
- 3. 퇴직연금 회계 / 세무 056

1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등 은퇴 후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생애설계 시 고려사항, 노후준비 기본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노후준비의 중요성
02.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03. 노후준비 기본전략
04. 노후 필요자금 산출방법
05. 퇴직연금 자산증식을 위한 상품운용의 중요성

01 / 노후준비의 중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통계청-생명표, 2019고령자통계〉

노후준비 왜 필요할까요?

2019년 기준 60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3.3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8.1세로 100세시대가 눈앞에 도래하였고, 은퇴 이후의 노후기간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노인의 노후자금 준비 상황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준비 자금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였으나 노인 인구의 노후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OECD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출처: OECD, 2018)



미흡한 노후 준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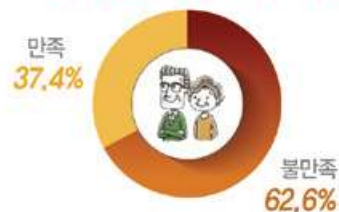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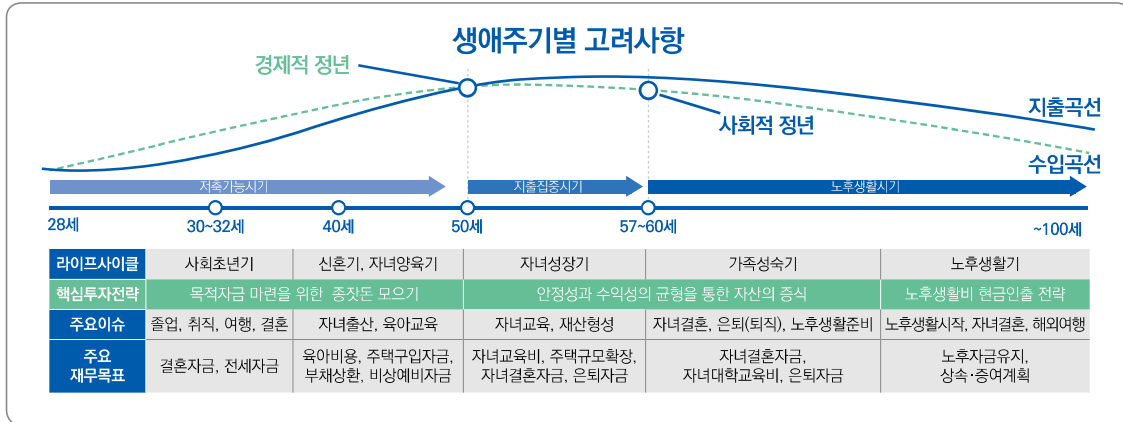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21)

노인 10명 중 6명은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02 /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흐름을 고려하여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자산·부채관리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03 / 노후준비 기본전략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정답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지만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윤택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업, 개인 각각의 노력을 모아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04 / 노후 필요자금 산출방법

체계적인 생애설계를 위하여 미래생활을 예측하고 현재 재무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노후생활비

월평균

60대 부부 275만원

60대 개인 167만원

〈출처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19〉

필요자금(예시)

〈가정〉

- 연간 노후 생활비는 부부 적정생활비 기준 (275만원)
- 소비자 물가상승률 : 1.1%
- 예상 세후 투자수익률 : 1.59%
- 60세에 은퇴하여 평균수명인 86세까지 생존
(물가상승률과 세후투자수익률은 통계청과 보험개발원 자료 참고)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60세 은퇴시점까지 준비할 예상금액은

현재 50세 부부는 **8억 원**

현재 40세 부부는 **8억 9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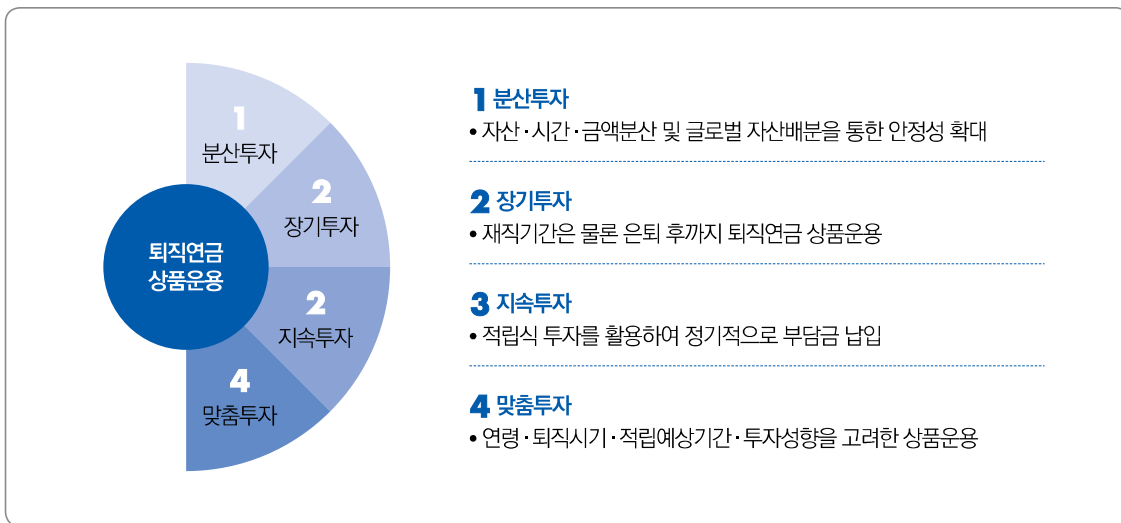
05 / 퇴직연금 자산증식을 위한 상품운용의 중요성

▣ 퇴직연금 상품운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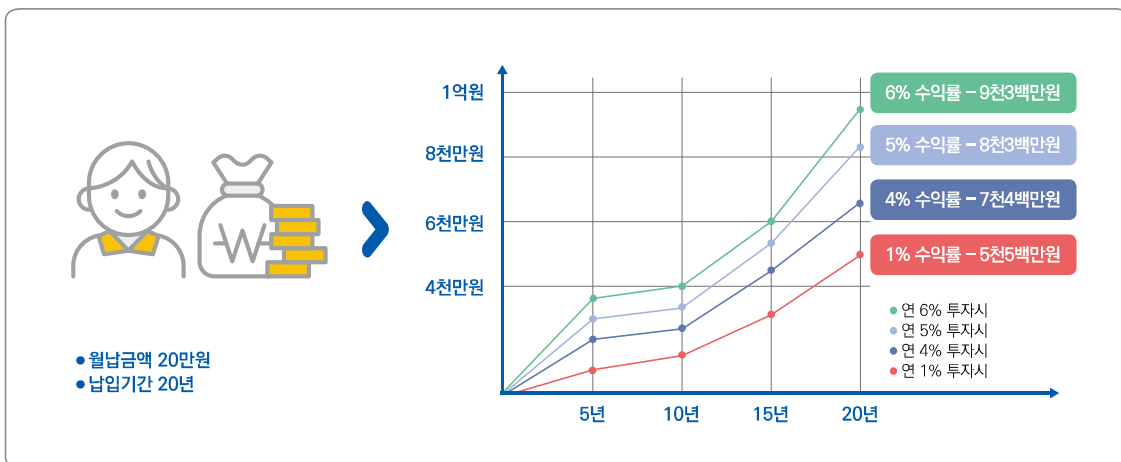
• 상품운용의 중요성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퇴직연금 등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소중한 퇴직연금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증식하기 위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화 및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상품운용 투자원칙



• 수익률 차이에 따른 자산증가



2

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유형 결정은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제도 설정·운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01. 계속근로기간 산정
02.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03. 퇴직연금 도입
04. 퇴직연금 운영

01 / 계속근로기간 산정

1.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 **원칙**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휴가 및 개근·출근율에 상관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
- **기산일** :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 의무가 발생한 날이 되며,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일 익일, 특정일부터 퇴직연금 도입 시 특정일이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됨
- **마감(퇴직)일** : 마감(퇴직)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경영상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관계 종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근로관계)이 끝나는 날
- **계속근로 1년 초과기간 기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 1년 초과 후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2. 계속근로기간 유형별 합산 여부

유형별 분류	합산	단절(제외)	
신분의 변경	비정규직 ↓ 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계약의 반복적 갱신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후 공개 채용 등 방식으로 신규입사 • 파견회사에서 사용자업주의 근로자로 직접고용
	근로자 ↓ 임원	이사 등의 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이 있는 임원이 된 경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법상 (등기)임원이나 감사 등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상의 이사(임원)에 해당)
	수습기간 등	채용된 이후 수습기간 등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	채용이 전제되지 않은 양성훈련 (인턴 등)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근로제공 중지	휴업·휴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재해로 휴직한 기간 • 개인사유로 사업주 승인 하에 휴직·휴업한 기간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음을 미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가능
기업 변경	영업양도·합병·분리	영업양도·합병·분리 시 고용 승계가 인정된 경우	영업양도·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노사 관계	쟁의행위·노조전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

3. 특수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사례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 파견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예를 들어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甲이 A의 지시로 B사에서 근무하다 C사로 근무지 변경 후 퇴직한다면 甲은 사용사업주 (B사·C사)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A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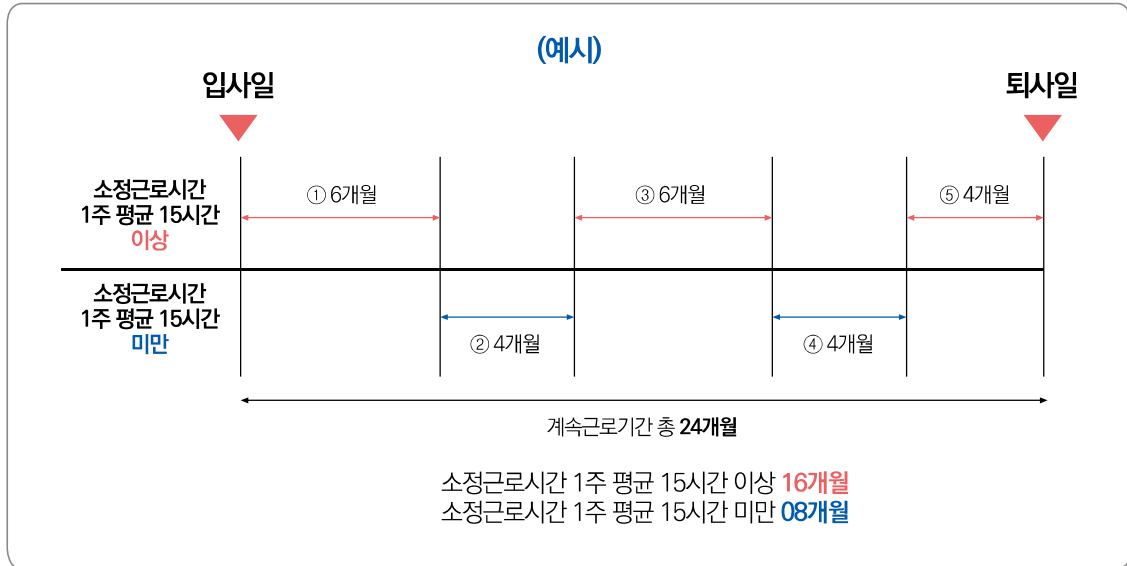
• 기업간 전적 시 계속근로기간

- 전적(轉籍)은 종전에 근무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전적 시 기업 간 약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사용자가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정년 도달 이후에도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정년퇴직) 되므로, 사용자는 정년까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이 원칙
-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므로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가 발생함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

• 예시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상기 예시와 같이 총 24개월의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6개월인 근로자는 총 24개월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8개월)을 제외한 16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5. 퇴직급여 부담금 납입 원칙

• 원칙

퇴직급여는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전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예외

그러나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규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산정기간에서 제외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계속근로기간 관련 Q/A

FOCUS ON!

Q1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회사 휴무일(선거일)인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회사 휴무일이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어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2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Q3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Q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하는 방법은?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Q5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각각의 근속기간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6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7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8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시점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9

부당해고 판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Q10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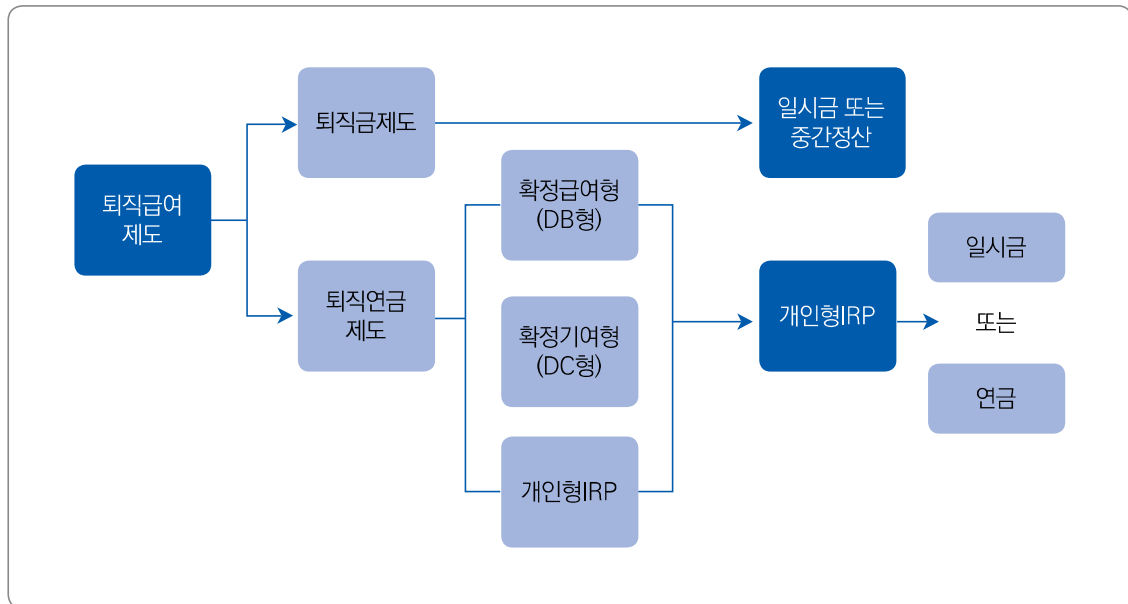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민법」 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02 /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 집니다.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란 회사(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 이하 DB형	
개념	•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 •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 회사는 사업연도말 기준책임준비금의 90%(2021년 기준) 이상이 적립되도록 사외예치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납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 이하 DC형	
개념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결정 • 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는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계좌 합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 9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초과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적용제외]

※ DB형 VS DC형

구분	DB형	DC형
개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	회사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급여수준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수급권 보장	기준책임준비금의 90% 이상 사외예치	적립금의 100% 사외예치
중도인출	불가	가능
담보대출	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적립금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 이하 개인형IRP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 또는 여유자금을 자기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퇴직급여 재원 외 추가로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부 가능) 17년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 개설 가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결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등은 연 1,800만원까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계좌 합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 9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가능

기업형퇴직연금제도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 이하 기업형IRP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DC형과 동일하게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결정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 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는 연 1,8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계좌 합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 9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초과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적용제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DC형 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3. 퇴직급여제도 운영방식

① 퇴직금 제도, DB형·DC형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② 혼합형퇴직연금 제도^{주)}(DB형 + DC형) 운영 가능

주) 혼합형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DB형·DC형 동시 운영(ex DB형 80%, DC형 20%)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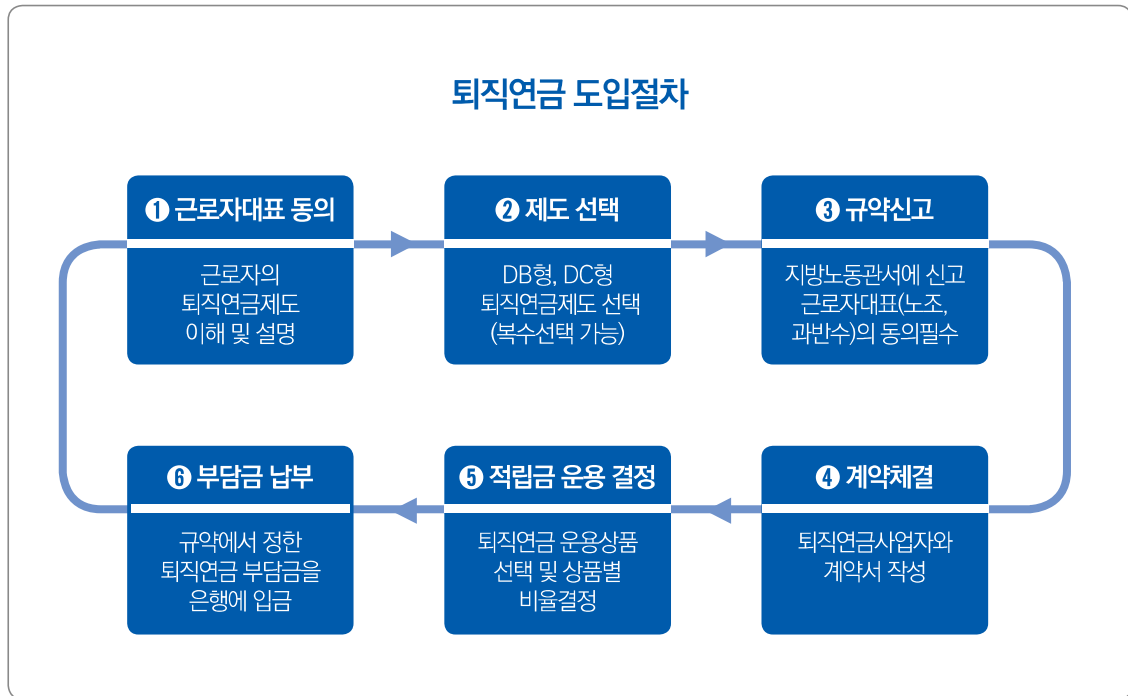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
규약작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수수료부담	해당사항 없음	회사 (운용수익 차감)	회사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	회사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	가입자
부담금납부	해당사항 없음	회사	회사(가입자 추가적립 가능)	회사(가입자 추가적립 가능)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해당사항 없음	기준책임준비금의 90% 이상 적립 (2021년 기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 한도 •퇴직급여 : 퇴직일시금 범위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 수령요건	해당사항 없음	55세 이상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연금수령 가능			
퇴직급여수준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가입자 부담금 ±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회사		가입자		
중간정산 등	'12.7.26이후 법정 사유만 가능	담보대출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제도간 전환	가능	DB→DC(O) \IRP(O)	DC→DC(O) \DB(X)	IRP→DC, IRP(O) \DB(X)	해당사항 없음

03 / 퇴직연금 도입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여부와 유형 등을 노사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 제정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동의

1. 주요내용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함(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대상인 근로자대표 개념과 동일)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특히 자신들이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에 관한 중대한 사항임.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2.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인 회의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찬반의사 결정시에는 무기명을 통한 동의도 가능

FOCUS ON!

Q1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특정 대표의 동의 서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Q2

복수노조의 경우 각 노조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방법(근퇴법 제4조제3항)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도입대상 · 집단	과반수 노조(有)	과반수 노조(無)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경우	노조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노조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경우	해당 집단의 과반수 동의 + 노조 의견청취	해당 집단의 과반수 동의
노조가입 대상이나 비노조원만을 대상으로 도입할 경우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도입	노조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Q1

퇴직연금에 꼭 가입하여야 하나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성립된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만약 사업이 시작된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Q2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규정' 등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고, 노사합의로 작성된 퇴직연금규약 가입대상에 임원을 포함하는 경우 임원(상법상 이상)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입사 후 1년 동안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예 : 매주 주말 8시간씩 2일 근무, 매주 평균 16시간 근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E9, H2 체류자격 이외의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무하는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규약 신고

신고서류 및 신고기관

- 퇴직연금규약신고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1호서식)와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

구분	신규	변경
사전 준비서류	규약설계의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설계의뢰서 •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규약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연금 규약신고서 ② 퇴직연금규약(DB형 또는 DC형) ③ 가입사실확인서 ④ 근로자대표 동의확인서 ⑤ 퇴직연금 신탁관리인선정 및 근로자동의서 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만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연금 규약(변경)신고서 ② 변경조문비교표 ③ 변경내용이 반영된 新 퇴직연금규약 ④ 근로자대표 동의확인서 ⑤ 퇴직연금 신탁관리인선정 및 근로자동의서 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만 제출)
규약제출 및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지청 : 원본(①) 사본(②③④⑤⑥) 제출(가입회사 인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가입회사 : 사본(①) 원본(②③④⑤⑥) 교부 • 퇴직연금사업자 : 사본(①②③④⑤⑥) 교부 • 상기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참조 	
퇴직연금규약 신고기관	가입 회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	

3 퇴직연금 도입시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1. 가입기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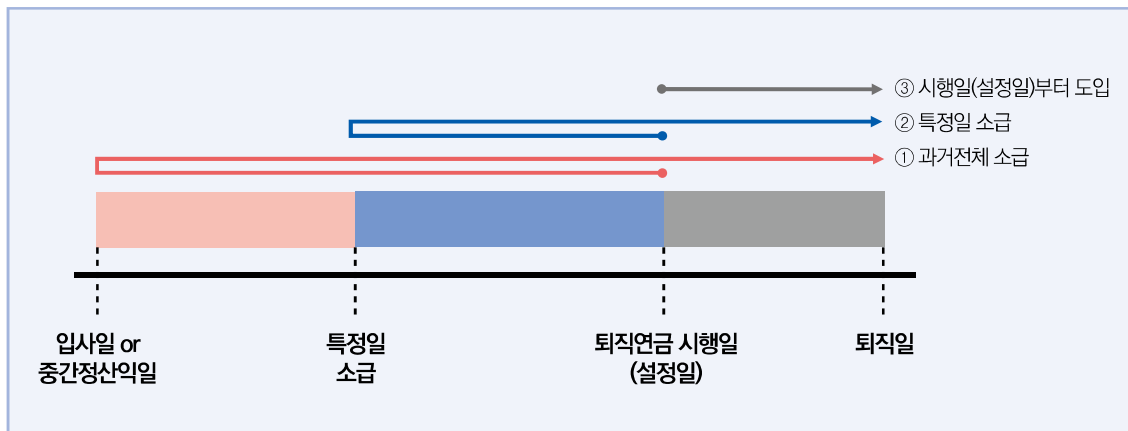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①과거 전체기간을 퇴직연금으로 소급적용 ②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 적용 ③퇴직연금 시행일(설정일) 이후부터 도입 등 퇴직연금 가입기간 결정 후 규약에 명시

2.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함

3. 가입기간에 따른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가입기간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과거 전체소급	근로자의 입사일 또는 최종 중간정산 익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DB형 :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사외적립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2017-68호)에 따라 분할하여 적립가능 (1~9년간 분할적립 가능) DC형 : 가입과 동시에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전액 사외적립
특정일 소급	과거 특정일 이전기간은 퇴직금제도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특정일 이후기간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시행일(설정일)부터 도입	퇴직연금 시행일 이후의 퇴직금여는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하고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 익일부터 시행일 이전까지는 퇴직금제도로 운영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8호)

기간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과거근로기간 가입 후 연차(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년도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년도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년도	-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9차년도	-	-	-	-	100분의 100

FOCUS ON!

퇴직연금 도입시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사례) 근로자 평균 과거 근무기간이 10년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존 퇴직금 처리 방법

① 시행일(2021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도입

- 과거 근무분(10년)은 사내적립 + 도입 이후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
- ☞ 근로자가 향후 퇴직할 때 과거 근무분(10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

② 과거 전체소급으로 퇴직연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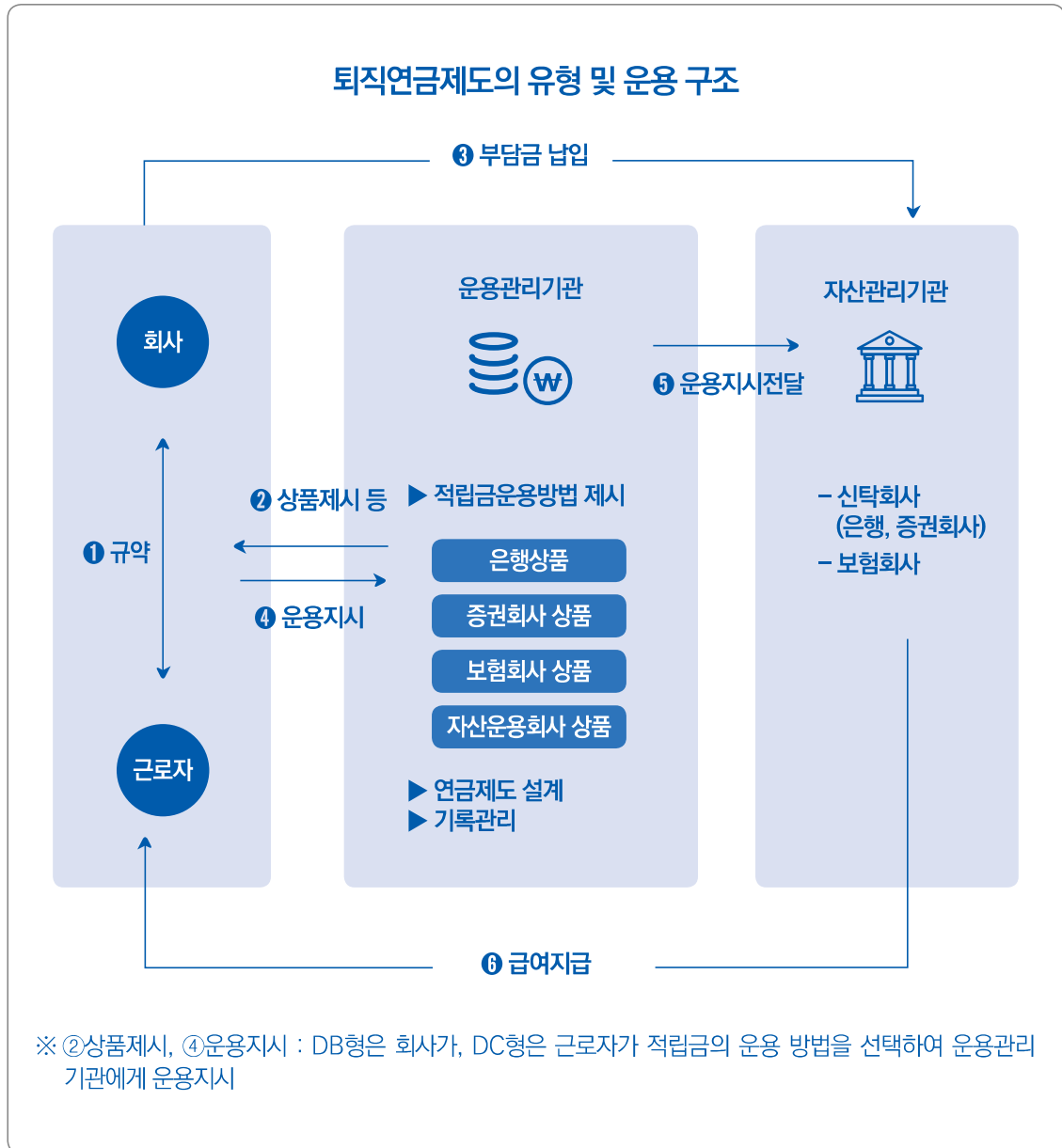
- DB형 :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사외적립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 (고용노동부고시 2017-68호)에 따라 DB형 제도 도입이전 부담금에 대해서 분할하여 적립가능 (1~9년간 분할 적립 가능)
- DC형 : 퇴직연금 가입과 동시에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전액을 사외적립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

MAX	(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 (총 근무일수/365일)
	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총 근무일수/365일)

04 / 퇴직연금 운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담금 납입, 수수료 부담주체, 중도인출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점과 퇴직연금 운영상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1. 기본구조

-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며,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임

2. 부담금

• 부담금 수준

DB형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향후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함
적정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수리적 가정(퇴직율, 임금상승율, 할인율 등)을 사용함

※ 부담금 종류

표준부담금	부담금 계산기준일 이후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총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
보충부담금	부담금 계산기준일 이전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총당하기 위한 부담금
특별부담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총당하기 위한 부담금

• 최소적립금 수준

DB형을 도입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책임준비금에 아래 연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최소적립금 수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4조의2)

※ 최소적립금 수준 단계적 상향

연도	'14~'15년	'16~'18년	'19~'21년	'22년 이후
비율(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70%	80%	90%	100%

• 재정검증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재정검증)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함

※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함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
- 회사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
-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많은 경우

-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음
-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반환 가능

3. 수수료

-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되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모두 회사가 부담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4항)

4. 담보제공

-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 가능(가입자별 적립금의 50%, 최대 5,000만원 한도)

※ DB형 담보대출 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증빙 서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등기 전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주택구입여부 사후확인 서류) - 등기 후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잔금 전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후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영수증 첨부(잔금지급 후 1개월 이내)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명, 6개월 이상 요양기간 확인)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고지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사실확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에 따른 임금감소,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증빙자료		
	구분	확인사항	
	임금감소	휴업 실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휴업 확인서 등 사용자의 확인서
		임금감소	- 임금대장, 임금 내역 등 증빙 대상 기간의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증빙자료			
구분	확인사항	증빙자료	
재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물적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건축물대장등본 (임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연재난) 피해상황확인서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인적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입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령 개정(2018.6.19.)

■ 개정 배경

-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감축(68시간▶52시간)되고 특례업종이 감소되어
실 근로시간이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
- 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확대하고 퇴직급여 감소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부여

■ 현행 규정

- 중간정산·중도인출
 -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 DC형 제도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DB형 제도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불가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로만 인정
 - DC형제도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퇴직급여액에 불이익이 없어 중도인출 사유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 시간 변경은 제외
- 퇴직급여 감소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퇴직금제도 또는 DB형 운용 사업장)
 -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통지
 - DC형제도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

■ 시행령 개정내용

-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사유 확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추가
- 근로자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부여
 - 퇴직금제도 또는 DB형제도 운용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통지
 - 근로자대표와 DC형제도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 협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1. 기본구조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운용한 상품 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2. 부담금

• 부담금 수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8.34%) 이상 납부

※ 납입주기에 따른 DC형 회사 부담금

납입주기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회사 부담금	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분기 임금총액의 1/12 이상	반기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연간임금총액의 범위

퇴직급여 산정대상 임금은 근로기준법제2조5호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의미함

※ 연간임금총액 해당 여부

▶ 연간임금총액에 해당하는 임금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위험수당 등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그 외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항목

▶ 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

- 인센티브, 경영성과급, 격려금 등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으로 부여하는 금품
- 출장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참고,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3. 수수료

- 회사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함
- 노사합의로 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4.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가입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또는 중도인출(적립금의 100% 이내) 가능

※ DC형 담보대출 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증빙 서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등기 전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주택구입여부 사후확인 서류) - 등기 후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잔금 전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후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영수증 첨부(잔금지급 후 1개월 이내)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명, 6개월 이상 요양기간 확인)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고지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사실확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에 따른 임금감소,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증빙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확인사항</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증빙자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임금감소</td> <td>휴업 실시</td> <td>-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휴업 확인서 등 사용자의 확인서</td> </tr> <tr> <td>임금감소</td> <td>- 임금대장, 임금 내역 등 증빙 대상 기간의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 </tr> </tbody> </table>	구분	확인사항	증빙자료	임금감소	휴업 실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휴업 확인서 등 사용자의 확인서	임금감소	- 임금대장, 임금 내역 등 증빙 대상 기간의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분	확인사항	증빙자료							
임금감소	휴업 실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휴업 확인서 등 사용자의 확인서								
	임금감소	- 임금대장, 임금 내역 등 증빙 대상 기간의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증빙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확인사항</th> <th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증빙자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재난</td> <td>공통</td> <td>-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td> </tr> <tr> <td>물적피해</td> <td>- (공통) 건축물대장등본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연재난) 피해상황확인서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td> </tr> <tr> <td>인적피해</td> <td>- (실종)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입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td> </tr> </tbody> </table>	구분	확인사항	증빙자료	재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물적피해	- (공통) 건축물대장등본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연재난) 피해상황확인서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인적피해	- (실종)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입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구분	확인사항	증빙자료								
재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물적피해	- (공통) 건축물대장등본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연재난) 피해상황확인서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인적피해	- (실종)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입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 DC형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증빙 서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등기 전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주택구입여부 사후확인 서류) - 등기 후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잔금 전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후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영수증 첨부(잔금지급 후 1개월 이내)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명, 6개월 이상 요양기간 확인)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임금총액 확인서류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1년미만 근로자 또는 직전 1년간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수준보다 낮음을 증빙하는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구분	확인사항	증빙자료
	재난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물적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연재난) 피해상황확인서 -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인적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입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휴업에 따른 임금감소,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상환을 연체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대출사유 확인서류, 회수조회표(연체내역 확인), 대출금상환내역서 		

1. 원칙

- 해당 근로자(가입자)에게 1년간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금사업자에게 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간 임금총액의 정의

• 정의

- 연간 임금총액이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1년간 지급한 일체금품의 합”을 말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금 등 과세 전 임금총액을 의미함

• 연간 임금총액 해당여부

- 개별적인 임금·수당 등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임금) 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판례 및 회사 급여규정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함
- 임금총액은 반드시 근로소득세 계산을 위한 총급여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금품 (ex. 경영성과금) 등에도 근로소득세 부과]
- 따라서 법률·판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급여규정 등에 따라 산정

※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

판단기준	예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벽지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무수당, 승무수당, 개근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전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식비·가족수당 등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위험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항목

※ 연간 임금총액에 제외되는 금품

판단기준	예시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경영성과급, 격려금 등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으로 부여 하는 금품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기숙사·주택제공 등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차량유지비·식비·가족수당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출장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각종수당의 노동관계법령상 임금해당성 여부는 개별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비교

구분	연간 임금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1년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산출방식	1년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1/12로 나눈 금액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활용범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각종 재해보상 등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임금항목	기업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한 일체의 금품	

4. 연간 임금총액 산정예시

※ 연간 임금총액 및 DC형 납입 부담금 계산

[단위 : 만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금액	200	150	200	300	200	200	200	100	250	200	200	200

- 연간 임금총액 : 1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합계 (2,400만원)
- 연간 DC형 부담금 : 2,400만원 * 1/12 = 200만원
- 납입주기에 따른 부담금액

납입주기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부담금액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16.66만원

5.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휴가·휴직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식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 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참조)으로 납부해야 함

$$\frac{\text{휴직(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text{개월} - \text{휴직(휴업)기간}}$$

※ 부담금 산정 방식(예시)

[단위 : 만원, ■ 휴직기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금액	200	150	200	300	200	200	200	100	250	200	200	200

- 임금총액 : 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의 임금총액 (1월~4월 월급) + (8월~12월) = 1,800만원
- 휴직기간 : 3개월(5월부터 7월말)
- DC형 납입 부담금 : 1,800만원 / 9개월(12개월-3개월) = 200만원

$$\frac{850\text{만원}(1\text{월부터 } 4\text{월 월급}) + 950\text{만원}(8\text{월부터 } 12\text{월 월급})}{12\text{개월} - 3\text{개월}(\text{휴업기간})} = \frac{1,800\text{만원}}{9\text{개월}} = 200\text{만원}$$

납입주기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부담금액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16.66만원

• 휴가·휴직기간 퇴직연금 부담금의 특징

- 휴가·휴직 등 비정상적 근로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됨
- 따라서 휴가·휴직 등 비정상적 근로기간에도 정기 부담금 납입일에 퇴직급여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 (미납 시 지연이자 등 문제발생)
-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가능

6. DC형 제도전환(퇴직금제도·DB형에서 DC형 전환) 시 부담금 산정방법

• 제도전환 사유

퇴직금제도·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일반적 사유는 ①임금피크제 도입 ②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③가입자 직접운용 수요확대 등이 있음

※ DC형 전환 시 제도전환 부담금 계산방식

Max	(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
	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임금피크제 도입직전일 계산된 법정퇴직금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직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 중 큰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제도전환 시 DB형 적립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DC형으로 제도전환 하는 근로자의 DB형 적립금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만큼을 DC형 계정으로 이전하고, 차액은 사용자가 직접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임

• 제도전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관리

제도전환 시 퇴직연금 제도전환금(상기 산식참조)을 DC형 가입자 계정으로 납입하고 향후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발생 손익을 합산하여 가입자 퇴직 시 개인형IRP로 퇴직급여 이전

7. 회사(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원칙

각 회사마다 임금체계·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급여항목이 상이한바 임금에 관한 법령·판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회사(사용자)가 DC가입자의 임금총액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 및 납입하여야 함

Q1

DC형 가입 근로자가 정기부담금 납입(연납) 후 3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로자 퇴직 시 회사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전 근로기간에 대한 회사부담금을 근로자 DC형 계정에 납입 후 근로자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정기부담금 납입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정기납 이후 발생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계산사례
 세전 월 임금 400만원인 근로자 甲씨는 2018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무 (3년 3개월) 후 퇴직. 이 경우 회사부담금 및 납부방법은?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부담금 납입(정기납, 연납)
 - 2021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甲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1,200만원

☞ 회사부담금 : 1,200만원 × 1/12 = 100만원
 △
 정기납 이후
 퇴직 시까지 근로자 임금총액

☞ 납부방법 : 4월 14일까지 3개월분(2021.1.1. ~ 3.31.) 부담금(100만원)을 甲의 DC형 계정에 납입 후 퇴직근로자 甲의 IRP계좌로 이전

【참고. DC형 회사부담금 납입 관련 행정해석】

- 계속근로연수가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노동부 예규 제328호, 1997.05.13.)
- 사용자 정기부담금 납입 후 가입자 퇴직 시, 사용자는 근무일 수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국민신문고2AA-1801-203622)

Q2

매월 지급액이 변동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회사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되나요?

A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회사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임금복지과-505, 2010.08.05.)

Q3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근로기간까지 포함한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회사부담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3

DC형 퇴직연금제도 과거부담금 분할납부는 불가합니다. 가입과 동시에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회사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합니다.

○ 다만,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8호)에 따라 분할(1년~9년) 적립이 가능합니다.

Q4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포함한 경우, 회사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4

MAX [①(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 or ②(제도전환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값을 회사부담금으로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합니다.

○ 계산사례

- DC형 퇴직연금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소급 적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3년)
- 도입 이전 1년간의 가입자 연간임금총액 : 2,400만원(매월 200만원)
- 2018년(1,200만원) · 2019년(1,800만원) · 2020년(2,400만원) 임금변동

☞ ① 부담금 : $(2,400\text{만원} \times 1/12) \times 3\text{년} = 600\text{만원}$

$\begin{array}{ccc} \uparrow & & \uparrow \\ \text{도입 이전} & & \text{근속연수} \\ \text{1년간(2020년)의} & & \\ \text{연간 임금총액} & & \end{array}$

☞ ② 부담금 : $600\text{만원} / 92\text{일} \times 30\text{일} \times 3\text{년} = 5,869,530\text{원}$

$\begin{array}{ccc} \uparrow & & \uparrow \\ \text{평균임금} & & \text{근속연수} \end{array}$

○ 회사부담금
MAX(① or ②) = (600만원 or 5,869,530원) = 600만원

【DC형 회사부담금 산정 관련 행정해석】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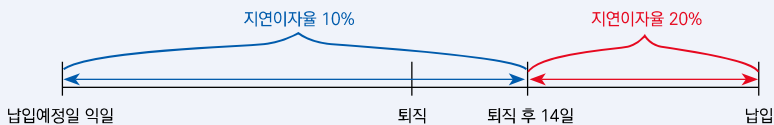
Q5

회사가 정기부담금 납입일에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A5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된 부담금 납입예정일에 회사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비율



- 회사가 납입예정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예정일 익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10%, 퇴직 후 15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 적용 사례

- 재직 중인 근로자 회사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 지연이자율 연10%
- 미납 부담금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10%, 퇴직 후 15일 이후에는 연20%의 지연이자 발생
-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퇴직 후 14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퇴직 후 15일 이후부터 지연이자율 연20% 적용

-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또는 미납 부담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 ⑤항, 제44조 ②항)
- 퇴직연금을 제외한 임금(급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도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①항)
-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 기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함.

Q6

DC형 사용자부담금 납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6

DC형 제도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주기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 법령·판례 및 회사사규·근로계약서 등으로 인정된 모든 임금항목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과거 연봉자료·매월 동일금액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액과 실제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재 정산하여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이 납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Q7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가입자 퇴직 시 DC형 적립금 귀속주체는?

A7

DC형 가입자가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 적립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사 사규·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DC형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퇴직 시 DC적립금의 귀속주체 관련】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법-646 2005.11.09)

Q8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는?

A8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여부

포함 기간	제외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개인사유로 사업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휴업 기간(사전에 사규로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습사용기간, 노조전임 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원이 된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 영업 양·수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중간정산 기간)•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이전 근로기간• 정년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Q9

근로자가 DC형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

A9

【사실관계】

-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을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지 못하고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좌개설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계좌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04.05.)

Q10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DC형 회사부담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A10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회사부담금에 포함하여 가입자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회사부담금 관련 행정해석】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 2013.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 **표준형DC 정의**

표준형DC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함.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과 표준계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규약에 적용을 받는 복수 사용자 DC형 제도임

■ **표준형DC 가입대상**

표준형DC는 하나의 퇴직연금규약으로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이므로 동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성격이 유사해야 함

따라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각종 협회, 단체, 지역연합회 등 회원사가 공동으로 가입하는 제도임 특히, 협회 및 단체가 소속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협회 및 단체의 소속 회원사간 결속도가 높고 근로조건, 인사관리형태가 유사한 경우 적합한 제도임

■ **표준형DC 도입절차**

복수의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표준형DC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을 협회 및 단체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표준형DC형 규약과 표준계약을 검토 후 승인

■ **표준형DC 도입효과**

● **개별 사업(장)의 가입절차 간소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받은 통일된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을 적용받으므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

● **퇴직연금수수료 절감효과**

표준형DC를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합산된 모든 적립금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절감효과가 극대화 됨

● **적립금 운용 수익률 향상**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DC 가입자에게 공통된 수익률 증대를 위한 상품컨설팅이 가능하므로 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

4 기업형IRP

1. 기본원칙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IRP 특례 인정
-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적용
-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의무 면제

2. 운영

- 회사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부
- 부담금 산정 및 운용 등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함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함

구분	기업형IRP	개인형IRP
가입 요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등
부담금 납입 주체 및 목적	사용자 부담 퇴직급여 재원	가입자 부담 노후자금 확보
수수료 부담 주체	사용자	가입자

FOCUS ON!

Q1

기업형IRP를 설정한 근로자도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기업형IRP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로써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만으로 제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산정 및 운용 등 제도의 운영은 DC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업형IRP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제도변경

1. 기본원칙

- 제도의 변경 :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변경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전환)은 불가함. 다만 기간을 달리하여 제도설정 및 운영할 수 있음
- 내용의 변경 : 설정되어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회사명·가입기간·가입대상 등 법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운영중인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신규도입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의 동의(불이의 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청취)와 퇴직연금규약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불이의 여부 판단 사례

불이의 변경 사례	① DB형 제도의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DC형 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것 ②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 ③ DC형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불이의 변경이 아닌 사례	①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간사기관의 변경 ② 사업합병·영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변경 ③ DB형 제도 적립금 운용 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이전

※ 퇴직연금규약 변경서류 및 절차

- ① 퇴직연금(변경) 신고서 ② 변경조문비교표 ③ 변경내용이 반영된 '신규약' 및 동의서류
 ④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①②③제출 ⑤ 고용노동부에서 규약심사 후 회사에 변경규약 수리문서 통보

2. 퇴직연금제도 변경 및 적립금 처리 방안

종전	변경	적립금 처리방안
DB형	DC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방법 : DC형 제도설정, 신규계약 체결 및 부담금 입금 • DB형 적립금은 DC형 부담금으로 일시 납부. DC형 기산일은 DB형 기산일과 동일(합산)
DC형	D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은 회사가 가입자별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금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개인별 운용수익률에 차이가 있어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함 • 따라서, DC형에서 DB형으로 적립금을 이전(통산)할 수 없음. 다만, DC형(과거분)을 유지하면서, DB형(미래분)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3.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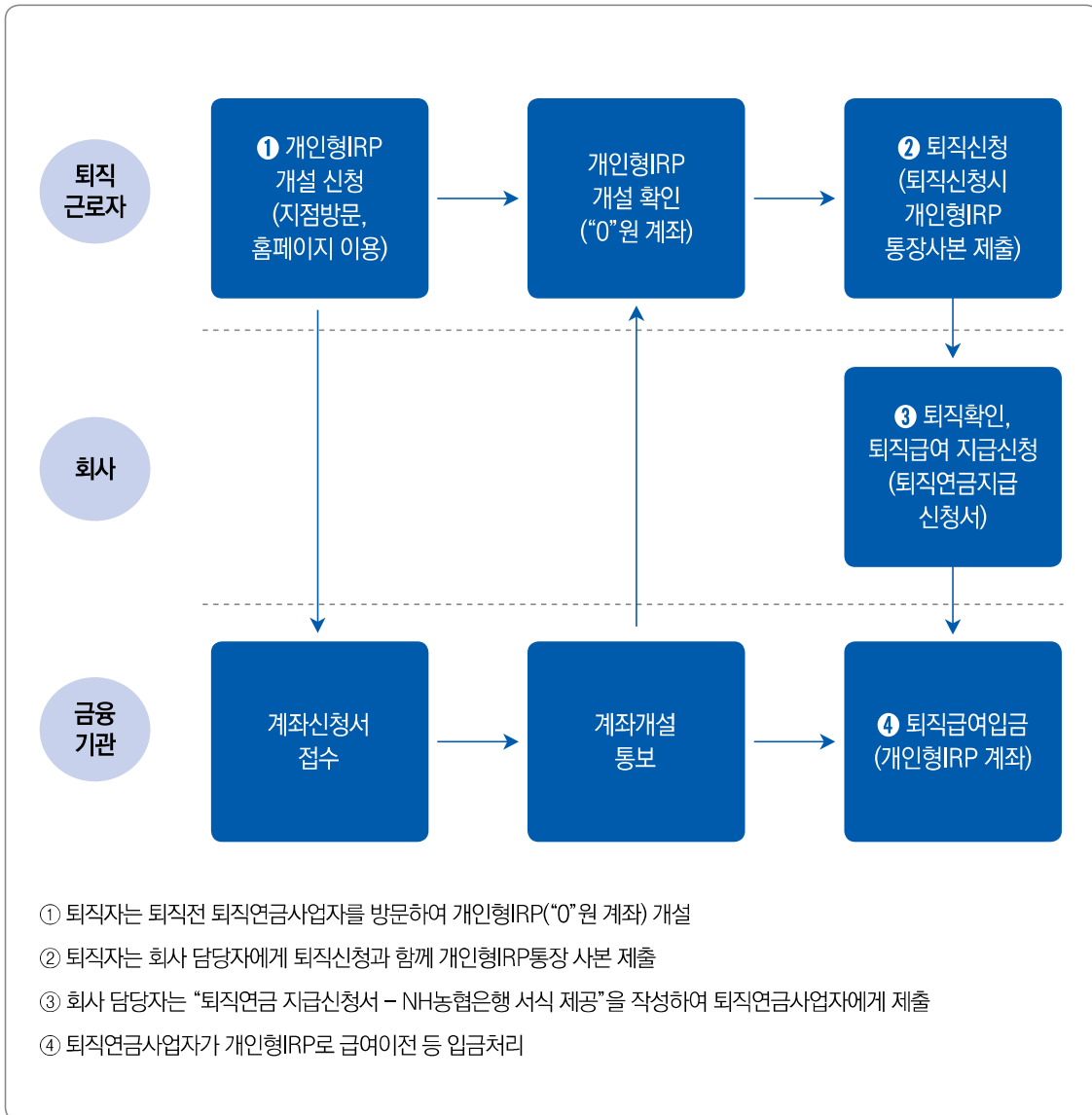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된 경우)	가능	특이사항			
DB형 → DC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전환금 계산방법 <table border="1" data-bbox="662 375 1267 555"> <tr> <td data-bbox="662 375 777 464" rowspan="2">MAX</td> <td data-bbox="777 375 1267 464">(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td> </tr> <tr> <td data-bbox="777 464 1267 555">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td> </tr> </table>	MAX	(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MAX	(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DB형 → 퇴직금	X				
DB형·퇴직금 → 혼합형	○				
DC형 → DB형	X	단, 전환시점 이후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 (DC형 적립금 이전 불가)			
DC형 → 퇴직금	X				
DC형 → 혼합형	X				
퇴직금 → DB형	○				
퇴직금 → DC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전환금 계산방법 <table border="1" data-bbox="662 1249 1267 1429"> <tr> <td data-bbox="662 1249 777 1338" rowspan="2">MAX</td> <td data-bbox="777 1249 1267 1338">(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td> </tr> <tr> <td data-bbox="777 1338 1267 1429">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td> </tr> </table>	MAX	(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MAX	(제도전환 직전 연간 임금총액 * 1/12)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제도전환 직전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총근무일수/365일)				
혼합형 → DB형	X				
혼합형 → DC형	○				

6 퇴직연금 지급

1. 개인형IRP 계정으로 이전

- 퇴직급여의 지급은 급여지급계좌(요구불예금)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급여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IRP로 이전하여야 함
(DB형, DC형 공통사항)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IRP로 이전하여 지급함
- 개인형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제혜택 효과가 있음 (퇴직연금 세무 참고)

2. 퇴직급여 지급 절차



※ 개인형IRP가 아닌 급여지급계좌(요구불예금)로 지급하는 경우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상환 후 잔액은 개인형IRP 강제이전 대상임)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FOCUS ON!

Q1

퇴직연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개인형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0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연장 가능)
-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IRP에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된 퇴직급여가 법정퇴직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IRP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DC형의 경우 정기부담금 납입 후 가입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정기납 이후 발생한 사용자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연납으로 부담금 납입주기를 정하고 정기납입일이 12월 31일인 회사에서, 6월 30일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7월 14일까지 납부합니다.

Q2

퇴직급여를 이전 받을 개인형IRP는 2계좌 이상 설정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 통산장치로서의 역할, 일부해지 불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IRP는 하나의 계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Q3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전액 압류 금지됩니다.

7 퇴직연금 적립금 압류가능 여부

1. 퇴직급여 제도별 압류가능 여부

퇴직급여 제도	압류가능 여부	관련근거
퇴직연금(DB·DC 및 IRP)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 대법원 판결문(2013다71180) • 고용노동부지침(퇴직연금복지과. 15.4.30.)
퇴직금	가능(1/2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2. 퇴직연금 적립금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과 특별법관계로 피압류적격이 없음
-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됨

3. 퇴직연금 상황별 압류금지 여부

• 퇴직연금 제도별 압류금지 여부

-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및 급여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금지
- 퇴직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 및 운용 수익 전액 압류금지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 급여는 IRP계정으로 반드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함
 - 운용수익은 IRP 적립자산을 구성하며, DC형 및 기업형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압류금지 대상인 점에 비추어, IRP의 해당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금지 대상이 됨
- 2012.7.26.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전 개설된 개인퇴직계좌(IRA)도 전액 압류금지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며, 종전에 설정된 개인퇴직계좌(IRA)는 현행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간주되고 실무 운용상 동일하게 취급됨. 따라서 종전에 설정된 개인퇴직계좌(IRA)도 양도금지 적용을 받아 전액 압류 금지됨

• IRP 인출금원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 IRP를 해지하여 그 적립금이 일반 입출금계좌(요구불)로 이전된 경우 그 이전된 금원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은“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일반 예금채권 계좌로 이전된 금원은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

• 추가입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특례(기업형IRP) 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금지
 -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RP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하며, 퇴직연금 급여는 부담금 납입 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므로 근로자 추가 납입 부담금 역시 전액 압류 금지됨
- 명예퇴직금 등 약정한 추가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적립하기로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한 경우 추가퇴직금은 전액 압류 금지됨
 - 법정퇴직급여 이외의 추가퇴직금을 납입하는 경우, 즉 DB형은 사내규정으로 지급조건을 미리 정하여 사전에 예측하여 적립하고, DC형은 가입자의 퇴직 시 DC계정으로 납입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추가퇴직금도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를 구성하므로, 추가퇴직금은 전액 압류 금지 효력이 적용됨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 규약의 기재 사항이므로 반드시 산정방법·납입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납입해야 함
- 경영성과급을 가입자 DC형 계정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경영성과급 및 그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 금지됨
 - DC형에 납입되는 경영성과급 등도 법정 정기부담금과 같이 퇴직연금 규약에 의해 납입되는 사용자 부담금으로 급여지급을 위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해당
 - 규약으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경영성과급과 운용수익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정기부담금과 세제상 차이도 없는 바, 해당 경영성과급과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 금지 대상임

• 미납적립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 퇴직연금 미적립 부담금(DB형 적립비율 100%미만, DC형 정기부담금 미납분)은 전액 압류 금지됨
 - 확정기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적립 부담금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금지

• 대법원 판결의 효력 소급효 여부

- 대법원 판결(대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이전 또는 판결 이후 근로자 퇴직연금에 압류가 걸려도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 급여는 IRP계정으로 전액 이전해야 함
 - '퇴직연금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금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초 시행 당시(2005.12.1.)부터 규정되어 있었음
 -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에 따라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법률에 의해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양도금지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 금지 압류채권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무효 항변과 함께 퇴직연금 규약 및 운용관리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IRP계정으로 퇴직연금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함

• 압류명령과 퇴직연금 제도전환 가능여부

- 회사(제3채무자)에 압류명령 송달 시에는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으로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전액 압류 금지됨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 적용한 경우 그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급여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됨
 -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여 과거 근로기간부터 퇴직 시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채권 압류가 전액 금지됨
 - 다만, 이미 유효하게 퇴직금의 압류가 성립한 점, 채권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8 퇴직연금 폐지·중단

1.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유

• 폐지사유

사업장 폐업, 노사합의에 의한 폐지 결정,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등

• 중단사유

회사의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제도운영 중단통보를 받은 경우 등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2.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시 적립금 처리방법

• 폐지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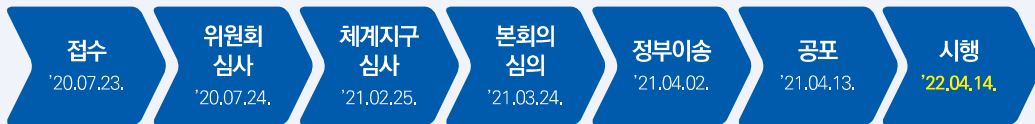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지급하며, 중간정산된 것으로 봄

• 중단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도가 중단된 것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님
퇴직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 및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됨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2022.4.14. 시행)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법현황



■ 주요 개정사항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도 개인형IRP로 퇴직금 의무이전(개정법 제9조)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 시 요구불계좌로 퇴직금 수령
 - 개정법에서는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도 개인형IRP로 의무이전
- DB형 가입기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개정법 제18조의 2)
 - DB형 가입기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사업장)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의무
 -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및 운용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수행기관 확대(개정법 제32조제2항)
 - 현행 :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 향후 :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사용자가 위탁하는 경우)
- DB형 최소적립금 부족분 미 해소 기업 과태료 부과(개정법 제48조제1항)
 -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함
 - 최소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연도	'14~'15년	'16~'18년	'19~'21년	'22년 이후
비율	70%	80%	90%	100%

3

퇴직연금 회계 / 세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제도별 회계 또는 세무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하에서는 회계기준 또는 세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별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01. 퇴직연금 제도별 회계처리
0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03. 퇴직연금 세무관련 주요내용
04.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체계
05. 과세이연시 과세체계
06. 연금수령시 과세체계
07. 임원퇴직급여

01 / 퇴직연금 제도별 회계처리

회사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제도별로 어떠한 회계처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1. 주요내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며 그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공시
-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전 퇴직금제도와 같이 매월 또는 매분기 추정하여 설정한 후, 결산일에 전 직원이 퇴직 할 경우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당기에 추가 설정함

2. 상황별 회계처리

• 부담금 납부

제도 도입일 및 규약의 부담금 납입일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연금계리방식에 의한 추계액 중 큰 금액의 90% 이상(2022년 이후 100%)이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이 되도록 적립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 × 대) 현금 등(보통예금) × × ×

• 수수료 지급

- DB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차감되므로 별도 회계처리 불필요

• 회계 결산시 :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수익(손실) 인식

▶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제도와 동일)

차) 퇴직급여^{차)} × ×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

주) 결산일 현재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총액과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의 차액

▶ 수익 발생시^{차)}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 ×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 × ×

▶ 손실 발생시^{차)}

차) 퇴직연금운용손실 × ×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 ×

주) 매 회계연도 말 이익계산서상의 원가이익(운용수익 - 수수료)에 대하여 운용수익관련 회계처리 (이익계산서는 연도말 NH농협은행 영업점 출력가능)

예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익계산서(상세)

귀중

귀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의 2020년도 원가이익 계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090-

☐ 원가일 : 2020-12-31

☐ 계산기간 : 2020-01-01 ~ 2020-12-31

(단위:원)

구분	내용	
1. 적립금 평가금액		29,641,397,592
2. 미수수료 (결산보정)		10,841,080
순자산 평가액 (1-2)		29,630,556,512
3. 전년도 원가 후 잔액		20,423,493,005
4. 부담금 납입액		8,816,947,480
5. 퇴직급여 지급액		0
6. 원가 이익	운용수익	480,307,612
	수수료	90,191,585
	원가이익 (운용수익-수수료)	390,116,027
최종잔액 (3+4-5+6)		29,630,556,512

• 퇴직시

[퇴직IRP로 과세이연 되는 경우]

(사례1) 퇴직급여가 DB형에서 전액(100%) 지급되는 경우

차) 퇴직급여총당금 × ×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 ×

(사례2) 퇴직급여 중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우 (적립비율 90% 미만 or 회사 추가 지급분 있는 경우)

차) 퇴직급여총당금 × ×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 ×

현금 등(보통예금) × × ×

☞ 개인형IRP로 과세이연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일시금 지급 되는 경우]

(사례) 개인형IRP 과세이연 예외 사유(만55세 이상, 담보대출 채무상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로 일시금 지급되는 경우

차) 퇴직급여총당금 × ×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 ×

현금 × × × 수입제세 × × ×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1. 주요내용

- DC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식하지 않음
- DC형은 부담금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당해 기간의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 근로자 퇴직시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사외예치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통지(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이므로 퇴직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음)

2. 상황별 회계처리

• 부담금 납부

- ▶ 제도 도입 시 종전 퇴직금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확정기여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현금 등(보통예금) × × ×

- ▶ 당기부담금 납부시

차) 퇴직급여 × × × 대) 현금 등(보통예금) × × ×

• 수수료 지급

차) 퇴직연금수수료비용 × × × 대) 현금 등(보통예금) × × ×

• 부담금

- ▶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거나 중간정산 후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회계처리 없음

- ▶ 종전 근무기간이 퇴직금제도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회계처리 필요

차) 퇴직급여 × × × 대) 퇴직급여충당금^{주)} × × ×

주)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결산일 현재 평균임금 X 종전근무기간(퇴직연금 미가입 기간)

- 직전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잔액가능)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코스닥 포함),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외감법상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 ▶ 퇴직급여제도 : 종업원이 퇴직할 때 또는 그 이후 기업이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DB형, 퇴직금	• 종업원과의 합의 또는 규약에 따라 퇴직급여 확정
	•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
	• DC형 이외의 퇴직급여는 모두 해당
급여수준	• 사전 확정된 기여금으로 퇴직 후 급여원가 결정
	• 부담금 납부로 회계처리 종료

※ 현행 퇴직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제도와 유사함

2. 일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구분	K-GAAP(일반회계기준)	K-IFRS(국제회계기준)
퇴직급여채무 측정방법	청산가치가정 :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계속기업가정 :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측정하며 미래의 퇴직급여 추정 시 임금 인상률, 퇴직률 등을 고려하고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채무 인식여부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않음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무 인식
용어개념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근무원가라는 개념정의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당기에 일괄 반영 • 청산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보험 수리적 손익과 같은 개념정의 존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근무원가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퇴직급여 채무 변동액 • 보험수리적 손익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한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
사외적립자산 측정기준	규정없음	공정가치로 측정
사외적립자산 수익 회계처리	영업외수익	퇴직급여(비용)에서 차감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II. 주식공시사항

1. 재무상태표 인식금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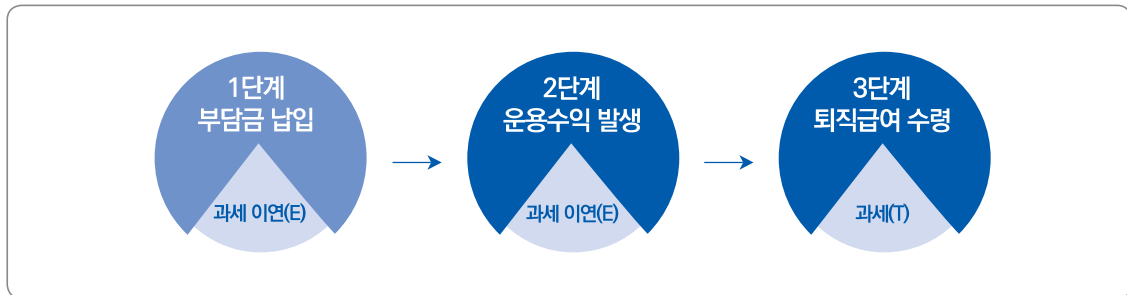
	2020-12-31	2019-12-31
사외적립자산	(2,137,568,275)	(2,177,475,033)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380,467,642	2,436,477,591
자산인식상한효과	0	0
국민연금전환금	0	0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42,899,367	259,002,558

2. 손익계산서 인식금액

(단위 : 원)

	2020-12-31	2019-12-31
당기근무원가	591,174,190	481,989,215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0	0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61,839,444)	(41,415,276)
확정급여부채 이자비용	69,480,019	55,657,117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확정급여원가	598,814,765	496,231,056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흔히 『E-E-T형』 과세체계라고 부르며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1. 퇴직연금 과세체계(E-E-T형)

개념	주체		과세내용
부담금납입 (과세이연)	사용자	법인	사용자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개인사업자	사용자를 제외한 부담금 전액 필요경비 인정
	근로자	가입자 부담금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50세 이상인 자는 연 900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운용 (과세이연)	확정급여형	운용손익은 귀속사업연도에 인식 및 과세	
	확정기여형	운용기간 수익에 대해 비과세	
급여수령 (과세)	근로자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2. 연금 수령 • 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분리과세, 10년 초과수령시 60%) • 운용수익 : 5.5~3.3% 차등적용

2. 퇴직연금 제도별 과세체계(E-E-T형)

- DB형 : DB형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금 납부시 손금산입
- DC형 :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부시 전액 손금인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시 먼저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세무조정 하는 순서로 진행

1. 퇴직급여총당금 세무조정

퇴직급여총당금 한도액과 당기 설정분을 비교하여 세무조정

• 퇴직급여총당금 한도액 : MIN(①, ②)

- ① 총급여액 × 5%
- ② 퇴직급여추계액 × 손비율^{주1)} + 퇴직금전환금^{주2)} - 세무상 총당금잔액^{주3)}

주1) 퇴직급여추계액 손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한도율	10%	5%	0%

주2) B/S상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1993. 1. 1. ~ 1999. 3. 31 발생한 금액)

주3) 전기이월 B/S상 퇴직급여총당금 - 당기 장부상 총당금 감소액 - 총당금 부인누계액

※ 부인누계액이란?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누계액

• 주요용어 정의

- **총급여액** : 당기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DC형, 기업형RP 설정자 제외) 중 퇴직급여지급대상자에 대한 총 급여액.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설정대상포함
- **퇴직급여추계액** : MAX(①, ②)
 - ① 일시퇴직기준 : 당기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DC형, 기업형RP 설정자 제외)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상 지급규정,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함
 - ② 보험수리적기준 : ㉠ + ㉡
 - ㉠ 당기말 현재 기준 산정한 DB형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근무기간분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금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
 - ㉡ DB형 미가입한 근로자의 일시퇴직기준 금액과 DB형 가입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시퇴직기준 금액

2. 퇴직연금부담금 세무조정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액과 당기 사외예치한 부담금을 비교하여 세무조정

•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액 : MIN(①, ②) - 기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

①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세무상 퇴직급여총당금 잔액^{주1)}

주1) 기말 B/S상 퇴직급여총당금 - 총당금 부인누계액^{주2)}

주2) 총당금 부인누계액 : 기초 부인누계액 + STEP 1 부인액

② 기말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1. 부담금 납부

법인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부담금 납부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모든 의무 종료

2. 손비효과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손금 인정
- DC형 수수료 비용 역시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손금 인정

3. 법인 VS 개인사업자 절세사례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제상 차이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손금 인정	필요경비 불인정
대표자 퇴직급여총당금	퇴직급여 설정대상	퇴직급여 설정불가능

4. DB형 퇴직연금

(사례1) 법인 DB형 도입시 절세액

- 당기순이익 : 3억원
- 퇴직급여총당금 및 당기설정 퇴직급여총당금 : 1억원
-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 : 1억원

구분		법인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미가입
당기순이익(①)		3억원	3억원
세무조정(②)	손금불산입(*1)	1억원	1억원
	손금산입(*2)	△1억원	-
과세표준(①+②+③)		3억원	4억원
산출세액		(주1)0.4억원	(주2)0.6억원
절세액(주3)		0.2억원	

(*1) 1억원×(1-0%)=1억원

(*2) 퇴직연금부담금 한도내에서 사외예치시 손금인정

(주1) 2억원×10%+(3억원-2억원)×20%=0.4억원

(주2) 2억원×10%+(4억원-2억원)×20%=0.6억원

(주3) 0.6억원-0.4억원=0.2억원(법인지방소득세 제외)

(사례2) 개인사업자 DB형 도입시 절세액

- 당기순이익 : 3억원
- 퇴직급여충당금 및 당기설정 퇴직급여충당금 : 1억원(대표자 제외)
-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 : 1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미가입
당기순이익(①)		300,000,000	300,000,000
세무조정(②)	손금불산입(*1)	100,000,000	100,000,000
	손금산입(*2)	△100,000,000	-
과세표준(①+②+③)		300,000,000	400,000,000
산출세액		(주1)94,600,000	(주2)134,600,000
절세액(주3)		40,000,000	

(*1) 1억원×(1-0%)=1억원

(*2) 퇴직연금부담금 한도내에서 사외예치시 손금인정

(주1) (300,000,000-150,000,000)×38%+37,600,000=94,600,000

(주2) (400,000,000-300,000,000)×40%+94,600,000=134,600,000

(주3) 134,600,000-94,600,000=40,000,000(지방소득세 제외)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5. DC형 퇴직연금

- 당기순이익 : 3억원(가정 : 퇴직급여 비용처리 전 당기순이익)
- DC형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 : 1억원
-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다고 가정

(사례1) 법인 DC형 도입시 절세액

구분	법인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미가입
당기순이익(①)	300,000,000	300,000,000
퇴직급여(②) ^(*1)	100,000,000	-
과세표준(①-②=③)	200,000,000	300,000,000
산출세액	^(주1) 20,000,000	^(주2) 40,000,000
절세액^(주3)	20,000,000	

(*1) DC형 부담금 납부로 회계상 비용처리

(주1) 2억원×10%=0.2억원

(주2) 2억원×10%+(3억원-2억원)×20%=0.4억원

(주3) 0.4억원-0.2억원=0.2억원(법인지방소득세 제외)

(사례2) 개인사업자 DC형 도입시 절세액

구분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미가입
당기순이익(①)	300,000,000	300,000,000
퇴직급여(②) ^(*1)	100,000,000	-
과세표준(①-②=③)	200,000,000	300,000,000
산출세액	^(주1) 56,600,000	^(주2) 94,600,000
절세액^(주3)	38,000,000	

(*1) DC형 부담금 납부로 회계상 비용처리

(주1) (200,000,000-150,000,000)×38%+37,600,000=56,6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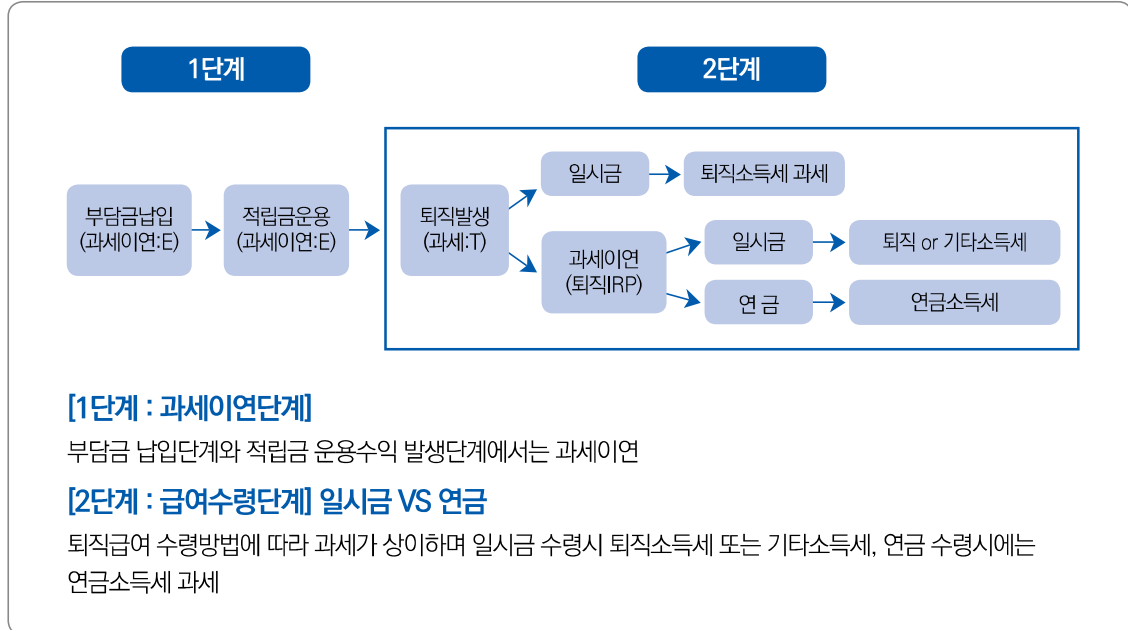
(주2) (300,000,000-150,000,000)×38%+37,600,000=94,600,000

(주3) 94,600,000-56,600,000=38,000,000(지방소득세 제외)

04 /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체계

가입자 퇴직 후 퇴직급여 수령방식에 따른 세금처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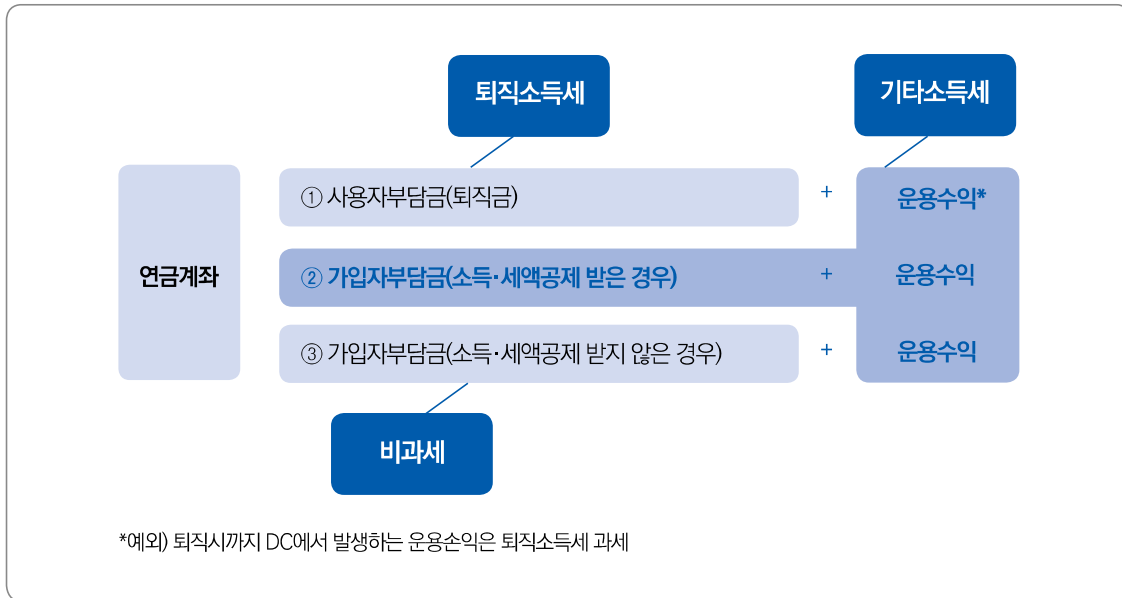
1 급여수령 형태에 따른 과세

연금계좌라 함은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말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 상이

- 연금수령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외수령 :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가입자부담금, 운용수익 등) : 기타소득 과세

2 연금계좌 연금외수령시(일시금) 과세체계

- 연금외수령시 원천별 과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퇴직외소득은 기타소득세)
-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은 과세제외
- 일시금 수령시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3 가입자부담금 등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특례(소령 118조의 3)

- 가입자부담금 등 납부시 세액공제 가능
- 과거 가입자부담금 납입금 중 세액(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 과거 세액(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가입자부담금이 대상임

4 세액(소득)공제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 홈택스(Hometax)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 발급 절차: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Home 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재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검색 전체메뉴

민원증명

민원증명

서우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한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 국세 증명신청 · 사실 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증명발급 상세안내 >

- 사업자등록증면, 효배면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신청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0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신청 후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복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환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통원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 근로(재내)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성년후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 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별지 제 26 호의 2 서식] (2014. 3. 14. 개정)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

④ 확인 기간	2016. 1. 1. ~		
과세연도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2016			
2017			
2018			
2019			

5 소득원천 및 인출사유에 따른 연금외수령시 과세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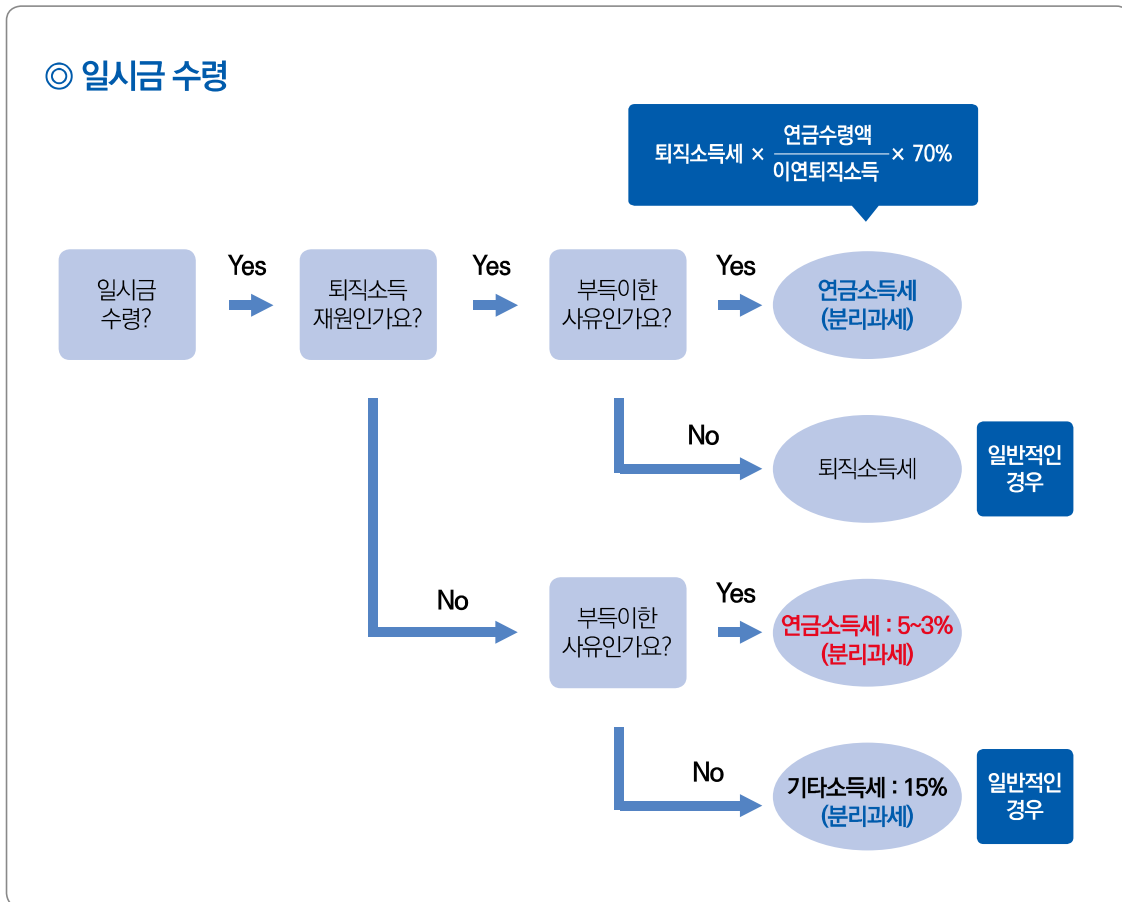
소득원천	소득구분	연금외수령	
		일반적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주1)}
회사부담금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주2)}
가입자부담금 운용수익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주2)}
	추가 신고절차	없음(분리과세로 종결)	

(주1)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연금소득세 과세(저율과세)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소령 20조의 2)

(주2) 부득이한 사유중 “3개월 이상 요양”은 연금소득세 과세시 “금액제한이 있으며”, 그 외 사망 등 사유는 전액 연금소득세 과세됩니다.

• 일시금 수령시 과세 flow



6 부득이한 사유 등 인출(소령 20조의2)

1.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 해외이주(단,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등

2. 인출 절차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

3. 요양 등의 인출시 금액 제한(소칙 11조의 2)

- 인출시 다음의 합계액은 저율과세(연금소득세)
 - 200만원
 - 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50만원

7 의료목적 인출(소령 20조의2)

-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연금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
 - 증명서류 :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의료비영수증
-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여 인출가능(연금사업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

▣ 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1 퇴직소득 귀속시기

1. 총 수입금액(소법§24)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2. 퇴직소득 수입시기(소령§50)

퇴직한 날

2 퇴직소득의 범위

1. 정의(소법§22)

-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2002. 1. 1.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회사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
 - 회사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 퇴직판정의 특례(소령§43)

- 퇴직급여를 아래의 사유로 **수령한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보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2020.2.11. 시행)
- 퇴직소득중간지급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 포함)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며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주1))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주1)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⑥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⑦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되는 경우

3.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사유

-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하며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퇴법상 중간정산 사유로 지급한 때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범위(법칙§22)**

- 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단,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② 임원(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시
- ③ 천재지변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되어 지급한 때
-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되어 지급한 때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어 지급한 때

※ 제도별 인출사유 및 지급에 따른 과세^{주1)}

구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연금외수령		
		DB	DC	
		담보대출	담보대출	중도인출
근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구입 전세금부담 6개월이상 요양 (임금의 125/1,000) 5년내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구입 전세금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내파산, 개인회생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사업주 휴업,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구입 전세금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내파산, 개인회생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사업주 휴업,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구입 전세금부담 6개월이상 요양 (임금의 125/1,000) 5년내파산, 개인회생 재난
소득세	퇴직소득세	N/A	N/A	중도인출

주1) 제도별 사유가 다음에 주의

FOCUS ON! ▼

○ 퇴직판정 특례와 같은 현실적인 퇴직사유 등 이외에 중간지급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 되며, 개인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있음

구분	내용
법인	업무무관 가지금금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설정대상채권 제외
개인	임원과 근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4.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소득세법 집행기준 22-43-1)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5. 퇴직급여로 보는 적립방법(소칙 15조의4)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립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봄

• 납입요건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DC 등 규약에 적립방식이 명시되어 있을 것.
- DC 등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사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법인의 인센티브 등

※ 퇴직연금 경영성과급 납입관련 고용노동부 지침(15.4.30)

- DC형에 납입되는 경영성과급 등도 법정 정기부담금과 같이 퇴직연금 규약에 의해 납입되는 사용자 부담금으로 급여지급을 위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해당

<행정해석>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근로복지과-2990, 2013.8.29.)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 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함**
- *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정년연장,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부담금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됨

6. 근속기간 통산가능여부

-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①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 ②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③ 특수관계 법인 간의 진출입
→ 특수관계(주주, 친족, 직·간접 출자관계 등)
(※ 특수관계자 여부는 법령 87조에 따라 회사 판단)

• 개인사업자인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29-57-5)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총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총당금으로 보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전출하는 경우(소령 43조)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외국인근로자 퇴직소득 과세

최근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교사의 근로제공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없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됨

1.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및 절차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외국인교사(교수)

- 근로소득
비거주자가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한국에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 그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비거주자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 개별적 검토 요망)
※ 단, 퇴직소득에 대한 면제조항은 없으므로 과세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소법 1조의2)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짐(소법 119조)

4 퇴직소득세 계산 Flow

1. 퇴직소득 세액 계산

• 개정규정 산출방법

◦ 퇴직소득 과세표준 : (① - ②) × 12 ÷ 근속연수 - ③

① 퇴직소득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1 ~ 5년	3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1년 이상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정률공제(40%) 폐지

③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 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 (① - ②) × 12 ÷ 정산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 ~ 42%) × 정산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적용방법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 × 80% + 개정규정 × 20%
2017년	종전 규정 × 60% + 개정규정 × 40%
2018년	종전 규정 × 40% + 개정규정 × 60%
2019년	종전 규정 × 20% + 개정규정 × 80%
2020년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 종전규정 산출방법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	-------	----------------------------

(-)

퇴직소득 공제	→	① 정률공제	퇴직급여액의 40%								
	→	②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따른 구간별 계산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근속연수^{주)}</th> <th>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1 ~ 5년</td> <td>30만원 × 근속연수</td> </tr> <tr> <td>6 ~ 10년</td> <td>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td> </tr> <tr> <td>11 ~ 20년</td> <td>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td> </tr> <tr> <td>21년 이상</td> <td>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td> </tr> </tbody> </table>	근속연수 ^{주)}	공제액	1 ~ 5년	3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근속연수 ^{주)}	공제액										
1 ~ 5년	3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1년 이상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	------

(=)

연평균 과세표준 ×5	×	종합소득세율	기본 종합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

연평균 산출세액 ÷5	×	근속연수
----------------	---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2013년 이후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5배수 연분연승법 적용

2.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함

• 근속연수 계산(소령§105)

-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함
- 근속연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봄
- 2013년부터 퇴직발생시 수령하는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퇴직소득에 대해 근속연수를 적용함
-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함

5 퇴직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동안 발생한 소득이 퇴직 시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기본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이라고 함. 세법이 개정(정률공제 삭제, 환산급여별공제 신설 등)되어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거보다 산출세액 부담이 증가하였음

6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소법§148, 소령§203)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주1)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선택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주1)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해당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소령43조, 1항)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20.2.11 시행)
- (*) 근로제공을 위하여 체결하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함.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함.

- 정산퇴직소득세 = ① - ②
 - ① 전체 퇴직소득^{*1}에 대한 산출세액
 - *1) 최종퇴직소득 + 중간정산 퇴직소득
 - ②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중간정산 등)에 대한 산출세액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사례

2001.3.1. 입사하여 2021.12.31. 퇴사하면서 명예퇴직금 포함 1.5억원 수령. 근속기간 중 중간정산 실시함
(중간정산기간 : 2001.3.1. ~ 2010.9.30. 퇴직소득금액 : 5천만원, 산출세액 : 140만원)

○ 중간정산 **특례 적용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근속기간 : 2001.3.1. ~ 2021.12.31.(21년)

- 퇴직소득금액 : 최종퇴직소득 + 중간정산금액

= 1.5억원 + 5천만원 = 2억원

- 산출세액계산

전체 퇴직소득금액 2억원에 대한 산출세액 930만원

중간정산시 산출세액 (-)140만원

정산세액 790만원

○ 중간정산 **특례 미적용시**

- 근속기간 : 2010.10.1. ~ 2021.12.31.(12년)

- 퇴직소득금액 : 최종퇴직소득 = 1.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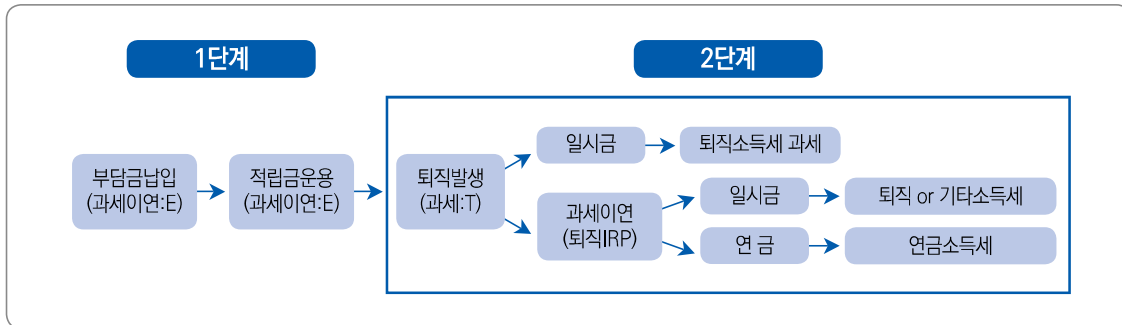
- 산출세액 계산

: 최종퇴직소득 1.5억원에 대한 산출세액 = 1,030만원

05 / 과세이연시 과세체계

가입자 퇴직 후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시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이연시 과세체계



1 과세이연

1. 과세이연 요건(소법 146)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퇴직연금제도에서 IRP로 과세이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로 강제이전되어 과세이연 됨.
따라서 IRP에서 급여를 수령하기전까지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됨
 - 퇴직금제도에서 IRP로 과세이연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단,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2. 이연퇴직소득세액(소령§202조의 2)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과세이연계좌 입금액}}{\text{이연퇴직소득}}$$

2 과세이연 환급절차

1. 퇴직소득세 환급절차(소령§202조의 3)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

2. 이연퇴직소득세액(소령§202조의 2)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작성

②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1) 과세이연계좌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2) 입금내역			
	일 자	금 액	
① 퇴 사 일		④세 후 퇴직급여액	
② 과세이연계좌 입금일		⑤입 금 액	
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		⑥입금비율 (④ ÷ ⑤)	

-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 농협은행(퇴직연금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농협은행(본점) 104-86-39742
 - 계좌번호 : IRP 계좌번호
 - 세후 퇴직급여액
: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감 후** 급여액
 - 입금액 : IRP로 입금된 금액(세후 금액)
 - 입금비율 : 입금액 ÷ 세후 퇴직급여액
- ※ 해당정보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가능

[사례]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사례

퇴직후 퇴직급여 1억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00만원 제외하고 9천 5백만원 일시금 수령한 근로자가 60일 이내에 6천만원을 과세이연 하고자 함. 이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작성방법은?

(1) 과세이연계좌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농협은행	사업자등록번호	104-86-39742
계좌번호 (예금주)	111111111		
(2) 입금내역			
일 지		금 액	
① 퇴 사 일	2020.06.30.	④세후 퇴직급여액	95,000,000
② 과세이연계좌 입금일	2020.07.31.	⑤입 금 액	60,000,000
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경과일수	31	⑥입금비율 (④÷⑤)	63.16%

- ④ 세후 퇴직급여액 : 1억원 - 5백만원 = 9천 5백만원
- ⑤ 입금액(세후금액) : 6천만원
- ⑥ 입금비율 기재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자로부터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수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고,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정하여 이연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계좌(IRP)로 환급함

-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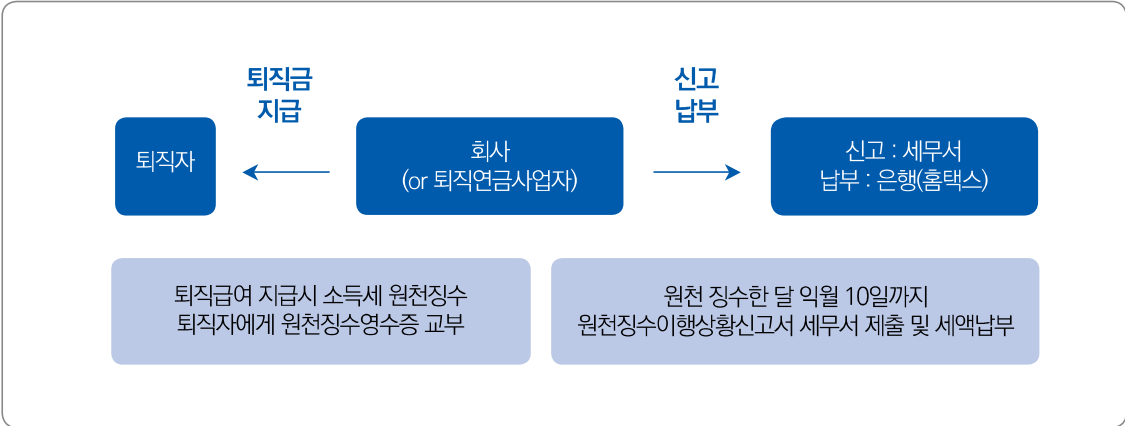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의 적정성과 신뢰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

가산세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분의 지급금액 × 1%

3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신고절차

1. 퇴직소득 원천징수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퇴직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2. 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 세무신고절차

- DB형 퇴직연금

- 퇴직자 발생시 지급주체인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를 하고 익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DB형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예외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IRP를 통해서 과세이연 되므로 신고절차만 있고 세금납부는 없음. 하지만 IRP를 통해서 과세이연되지 않고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원천징수 납부 절차가 있음

(*) 예외사유 : 만 55세 이상 근로자, 퇴직금 담보대출 받은 금액 상환하기 위한 경우, 300만원 이하 퇴직소득

• DC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를 하고 익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DB형과 동일하게 세무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단, 직전 과세기간 상시근로자수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 후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음)

- IRP로 과세이연되는 경우
 - 퇴직소득 연금계좌의 퇴직자 수와 총지급액에 퇴직소득금액 기재 및 소득세 등은 과세이연이므로 '0' 기재
- 퇴직소득금액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
 - 퇴직소득 연금계좌의 퇴직자 수와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소득세 모두 기재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채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담, 일부비과세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납부금액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내·외국인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일월 여부 []여 []부
	⑧ 주 소	⑨ 2011.12.31.퇴직금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귀속 연도	부 터 까 지	⑪ 퇴직사유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정리해고 <input type="checkbox"/> 자발적 퇴직 <input type="checkbox"/> 임원퇴직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 <input type="checkbox"/> 기 타
퇴 직 여 현 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근 속 연 수	구 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중간지급 근속연수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최종 근속연수	㉔ 기산월수	㉕ 종복월수
	정산 근속연수	㉖ 근속연수	
과 세 표 준 계 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⑰)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㉗-㉘) × 12배 / 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퇴 직 소 득 세 액 계 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㉜ 환산산출세액(㉛ × 세율)		
	㉝ 퇴직소득 산출세액(㉛ × 정산근속연수/12배)		
	㉞ 세액공제		
	㉟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㊱ 신고대상세액(㉝-㉞-㉟)	
이 연 퇴 직 소 득 세 액 계 산	연금계좌 입금명세		
	㊲ 신고대상세액(㊱)	연금계좌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㊳계좌입금금액	㊴ 퇴직급여(⑰)
	㊵ 합 계		㊶ 이연 퇴직소득세 (㊴ × ㉞/㉟)

• 연금계좌의 이체(소령 40조의 4 ②, ④)

-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IRP)로 또는 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으로 봄

(*) 연금수령 요건

- 연령요건 : 만 55세 이상
- 납입요건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단,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제외)

※ 2016.6.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함
-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 이체되는 경우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06 / 연금수령시 과세체계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소득의 종류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등)
사적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2 연금소득의 종류

- ① 연령요건 : 만 55세 이상
- ② 납입요건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단,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제외)
- ③ 수령요건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times 120\%}{(11 - \text{연금수령연차}^{(*1)})}$$

(*1) 55세는 "1년" 적용

- '13. 3. 1. 이전 가입한 계좌는 "6"년차

다만, DB형은 '13. 3. 1. 전 가입한 계좌로서 "전액이" IRP로 과세이연한 계좌만 "6"년차 적용

[연금개시 연령별 연금수령연차 예시]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1)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5세	1	11 - 1 = 10년간 한도 적용
60세	6	11 - 6 = 5년간 한도 적용
65세	11	11 - 11 = 0, 한도 미적용*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가 미적용 되더라도 연금은 최소 5년이상 수령하여야 함(근퇴법상 연금수령기간 5년)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됨.

따라서 무조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 한도 내 금액 : 연금소득
- 한도 초과 금액 : 퇴직·기타소득(소득 원천별 과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하며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연금 외 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봄

FOCUS ON!

제도별 연금수령요건

구분	IRP(퇴직금 수령용)	IRP(개인부담금 납입용)
연령요건	○	○
납입요건	×	○*
인출요건	○	○

(*) 다만, 퇴직금을 IRP로 수령시 개인부담금 IRP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있는 계좌로 보아 개인부담금채원도 납입요건(5년)을 충족하지 않고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즉시 연금수령 가능함.

3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사례

1. 퇴직급여 재원

(사례1) 55세 이전 개인IRP 가입, 55세 이전 퇴직시

Q. 55세 이전 퇴직한 근로자가 IRP로 과세이연후 연금수령을 57세에 개시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은?

• 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1) 연금계좌 가입일 : 2013. 3. 1.이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7세	3년차 ^(*)	11 - 3 = 8년

(*) 55세가 1년차이므로 57세는 3년차임.

(2) 연금계좌 가입일 : 2013. 3. 1.이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7세	6 ^(*) + 2 = 8년차	11 - 8 = 3년

(*) 2013.3.1.이전 가입한 연금계좌(DB포함)는 55세가 6년차이므로 57세는 8년차임.

☞ 연금계좌 가입일과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상이

☞ 연금수령한도가 3년을 적용받더라도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수령하여야 함.(근퇴법상 연금수령기간 5년)

(사례2) 55세 이전 개인IRP 가입, 55세 이후 퇴직시

Q. 58세 퇴직한 근로자가 IRP로 과세이연후 연금수령을 58세부터 개시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은?

• 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1) 연금계좌 가입일 : 2013. 3. 1.이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8세	1년차 ^(*)	11 - 1 = 10년

(*) 58세가 연금 받을 수 있는 1년차임.

(2) 연금계좌 가입일 : 2013. 3. 1.이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8세	6 ^(*) 년차	11 - 6 = 5년

(*) 2013.3.1.이전 가입한 연금계좌(DB포함)는 연금 받을 수 있는 최초 연차 계산시 6년차를 적용하므로 58세가 6년차임.

☞ 연금계좌 가입일과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상이

☞ 개인형IRP를 55세 이전에 가입했다라도 퇴직을 55세 이후인 58세에 했기 때문에 "연금수령연차 카운트되는 1년차는 퇴직한 시점인 58세"임.

2. 개인부담금 재원

2012.7.26. 근퇴법 개정 시행후 개인부담금을 IRP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IRP를 통해서 개인부담금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납입요건 충족) 가능함

(사례)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Q. "55세 이전에 연금수령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 "개인부담금 재원"을 연금개시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은?

• 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1) 연금계좌 가입일 : 2013. 3. 1.이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7세	3년차 ^(*)	11 - 3 = 8년

(*) 55세가 1년차이므로 57세는 3년차임.

(2) 연금계좌 가입일 : 2013. 3. 1.이전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57세	6 ^(*) + 2 = 8년차	11 - 8 = 3년

(*) 2013.3.1.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55세가 6년차이므로 57세는 8년차임.

☞ 연금계좌 가입일과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연금수령한도 적용기간 상이

☞ 연금수령한도가 3년을 적용받더라도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수령하여야 함.(근퇴법상 연금수령기간 5년)

3.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납입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퇴직연금 납부 시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함
- 2020년부터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 퇴직연금 납입지원을 확대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or 총급여액 1.2억원 or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함.(2020.1.1.이후 납입 분부터 2022.12.31. 까지 한시적용)
- ISA계좌를 노후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만기일로부터 60일내에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시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추가 제공함.(2020.1.1.이후 연금계좌 납입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1+2)

	구분	금액
1	연금계좌	연 1,800만원
2	ISA 만기시 전환 추가납입액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공제율(소법 59조의 3, 조특법 86조의 4)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주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4,000만원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16.5%
1.2억원 이하(1억원 이하)			13.2%
1.2억원 초과(1억원 초과)	7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주1)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IRP 가입대상

2017.7.26.부터 근퇴법 개정시행으로 IRP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하여 가능”함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가능)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조특법 91조의 18)

- 저금리시대에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함.
- 세제지원: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 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연 2천만원 납입한도)

4. 사망시 연금계좌 승계(소령100조의 2)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 가능함

- 배우자 연금계좌 가입시점
 -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한 날에 연금계좌를 가입한 것으로 보며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 부터 가능함
 - 단, 최소납입요건과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는 피상속인(사망인) 기준으로 적용
- 승계 신청절차
 -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사업자에게 승계신청을 함

[근로복지과-1679 2013.5.13.]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 지급처리 가능

4 연금소득 과세체계

연금소득 지급자는 소득자에게 연금 지급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함.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자는 익년 1월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함

1. 원천징수(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공적연금 지급자는 연금지급시 과세대상연금액에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사적연금(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상이함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소법 129조)

연령 및 유형 ^(*)	70세 미만	중신형, 80세 미만	80세 이상
세율	5.5%	4.4%	3.3%

(*)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세율 적용

2. 연금계좌 인출순서(소령40조의3)

- [1순위 : 과세제외금액] 인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가입자 부담금
- [2순위 : 과세제외금액]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3순위 :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 [4순위 : 그 외 소득] 가입자부담금 중 세액(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금계좌에서는 인출될 때 순서가 있음. IRP에서 연금수령시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이연퇴직소득금액이 인출됨.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이 인출되는 기간에는 분리과세로 과세종료되며 향후 그 외 소득(기타소득 재원)이 인출되는 시점에 타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됨

3. 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 적용대상 :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단, 퇴직소득 재원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되어 대상제외
- 한도금액 :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적용가능(즉, 연금수령시 예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종합소득 합산과세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함(퇴직소득재원을 연금수령시 해당 금액은 제외). 연금지급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며, 익년 5월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 정산함(단, 타 소득이 없는 공적연금 소득자는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종료)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연금지급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연금지급자(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간이세액표	3 ~ 5%(연령 및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	익년 1월 공적연금연말정산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 합산신고 -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 퇴직소득재원은 제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 ~ 38%	

4. 소득원천에 따른 연금소득세

소득원천	연금소득세		추가신고절차
퇴직소득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로 종결 (분리과세)
	10년 이하	$\text{이연퇴직 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text{이연퇴직소득}} \times 70\%$	
	10년 초과	$\text{이연퇴직 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text{이연퇴직소득}} \times 60\%$	
운용수익 등	연금소득세 (5 ~ 3%)		종합소득 합산신고 ^(**)

(*1) 타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2) 2020.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사적연금 수령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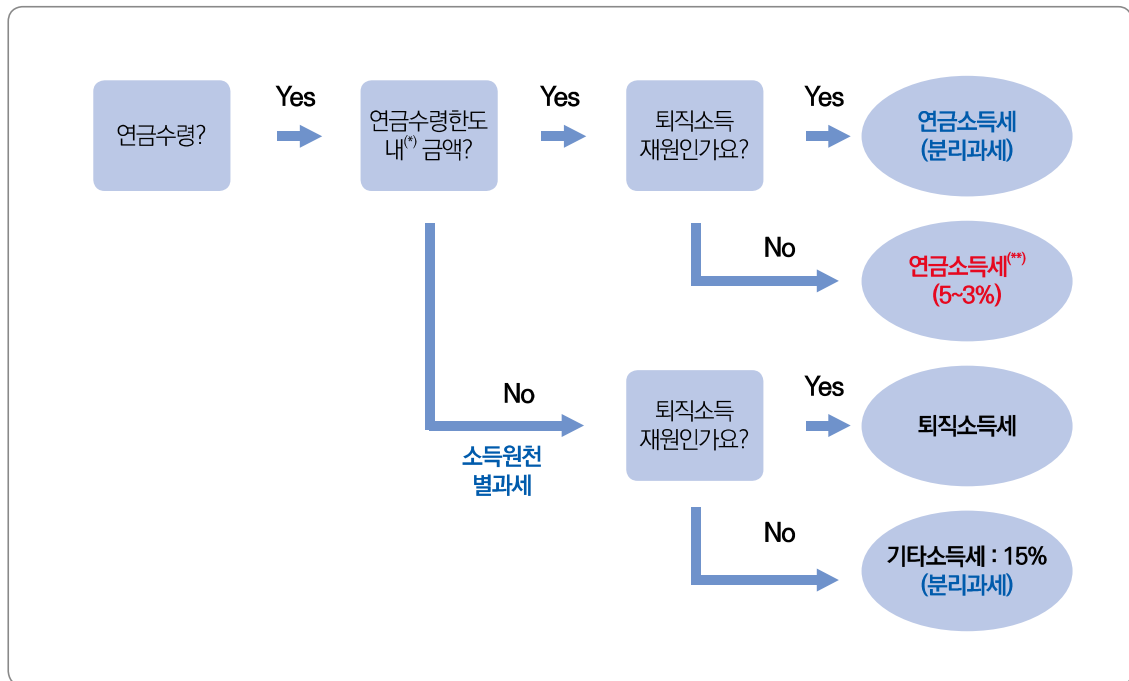
○ 퇴직연금 수령시

사적연금 중 퇴직소득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분리과세)

○ 사적연금 수령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함
다만, 퇴직소득 재원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하므로 해당재원은 제외함

(※ 사적연금 대상 :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연금계좌 중 세액·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소득재원은 제외)



IRP 연금수령시 특징점

구분	내용
연금수령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소득 자원 : 연금소득세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10년 이하→30%감면, 10년초과→40%감면) 운용수익 등(연령차등 : 3.3 ~ 5.5%) 운용수익 등 연금수령시 타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해지시(일시금 수령시) 원천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약 4 ~ 7%) → 분류과세 종결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 분리과세 종결
특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되어 재투자 운용기간 운용수익 비과세 재투자 운용상품, 연금지급방식 선택가능 사망시 상속가능 퇴직연금계좌 압류불가 중도해지 가능

07 / 임원퇴직급여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경우 대상·적립방법·지급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VS 소득세

1. 임원과 사용인의 구분

-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2.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법령§44)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관의 금액을 인정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야 함.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되지 않음

구분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정관에 정한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
그 이외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관련예규

• 서면1팀 - 666, 2005.06.15.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40, 2003.08.25.

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세과 - 461, 2010.05.19.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 - 250, 2011.04.05.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DC형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이 동일원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의 임원퇴직금 계산적용**

3.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급여 규정(소법22조 3항)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와 임원퇴직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

$$=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1/10 \times \text{근속연수}(12\text{년}\sim 19\text{년까지 근속연수}) \times 3 + \text{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1/10 \times \text{근속연수}(2020\text{년 이후 근속연수}) \times 2$$

• 임원퇴직소득금액(소령42조의 2, 6항)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

(*)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

정관 임원규정 ○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정관 임원규정 ×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사례1-1, 규정있는 경우) 임원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액

2011.1.1. 입사하여 2021.12.31. 퇴사한 임원 A가 퇴직금으로 9억원을 지급받았을 때 2011년말 현재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한도 적용 대상 퇴직급여는?

- 임원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액
- = 총퇴직금-2011년말 퇴직가정시 퇴직소득금액^(주1)
- = 9억원-2억원^(주1)=7억원
- (주1) 퇴직급여규정상 퇴직급여가 2억원이라 가정

(사례1-2, 규정없는 경우) 임원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액

2011.1.1. 입사하여 2021.12.31. 퇴사한 임원 A가 퇴직금으로 9억원을 지급받았을 때 2011년말 현재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는?

- 임원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
- = 총퇴직급여-2011년말 퇴직가정시 퇴직소득금액^(주1)
- = 9억원-0.9억원^(주1)=8.1억원
- (주1) 퇴직소득에 2011.12.31.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 9억 × 1년 / 10년 = 0.9억

(사례2)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

2011.1.1 입사하여 2021.12.31. 퇴사한 임원 A가 퇴직금으로 9억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 되는 금액은?

- ① 2011.12.31. 퇴직가정시 퇴직소득금액 : 2억원
- ②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 : 3억원
- ③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 : 2억원

-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퇴직급여액
- = 총퇴직금-2011.12.31. 중간정산 가정금액
- = 9억원-2억원=7억원
- 퇴직소득금액 한도
- = 연평균급여^(주1) × 1/10 × 근속연수^(주2) × 2배수 + 연평균급여^(주3) × 1/10 × 근속연수^(주4) × 3배수
- = 3억원 × 1/10 × 2년 × 2 + 2억원 × 1/10 × 8년 × 3 = 6억원
- (주1)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액
- (주2) 2020.1.1.이후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
- (주3)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액
- (주4) 2012.1.1.이후 ~2019.12.31.까지의 근속연수
-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퇴직급여-한도액=7억-6억=1억원
- ☞ 임원 A는 퇴직소득으로 8억원(=2억원+6억원), 근로소득으로 1억원 과세.
- (임원퇴직금 한도는 2012년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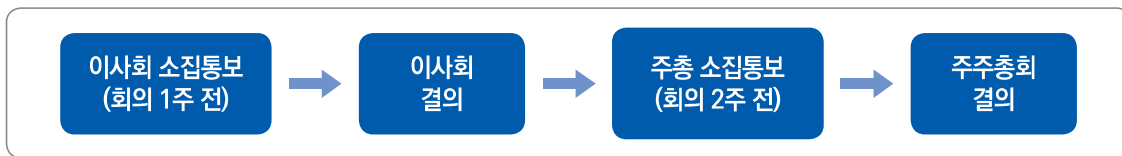
구분	내용
법인세법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 → 정관상 금액 인정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퇴직전 1년간 지급받는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소득세법	정관상 금액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한도금액 → 퇴직소득 과세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 임원배수 변경시 소득세법상 한도까지 임원퇴직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 소득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관에 규정시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 인정되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

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하여야 함

정관변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결의 후(이사회회사록 작성)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결의(주주총회회사록 작성) 절차를 수행하여 진행함



정관변경의 효력여부에 공증이 필수사항은 아님. 다만, 실무적으로 정관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함

※ 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관 규정(Sample)

- 제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규정 외의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급여는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 가능

2 CEO플랜 VS 임원퇴직연금

1. CEO플랜(저축성보험)

보험사에서 회사 CEO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CEO플랜(저축성 보험계약)은 “정관변경”을 통해 CEO 퇴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저축보험의 만기환급액을 향후 임원퇴직금 지급 또는 회사의 긴급운영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법인	임원(CEO)	법인

퇴직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금 지급시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보험 납입단계에서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손비처리가 안됨”

2. 임원퇴직연금

임원퇴직연금 가입시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 퇴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퇴직연금 납부시 세법상 비용인정도 가능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 DB는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DC는 바로 비용처리되며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DB도 세무조정을 통해 세법상 손비인정 가능함

제도	회계처리	세무처리
DB형	회사의 자산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인정
DC형	회사의 비용	손비인정

P A R T

02

퇴직연금 실무

퇴직연금 실무

1. 부담금 입금	106
2. 적립금 운용	116
3. 퇴직연금 지급	130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154
5. 가입자 교육	170
6. 수수료	178
7. 알림서비스	184
8. 인터넷뱅킹	188

1

부담금 입금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①퇴직연금제도별 ②과거 퇴직급여총당금 납입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처리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부담금 산정
02. 부담금 시산(계산)
03. 재정검증

01 / 부담금 산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회사는 근로자의 장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매 사업 연도 말 법에서 정하는 수준[기준책임준비금^{주1)} 대비 **최소적립비율^{주2)}에 해당하는 금액(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최소적립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주1) 기준책임준비금 : Max(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출한 퇴직부채, 회사 제공 퇴직금추계액)

주2) 최소적립비율

연도	'14 ~ '15년	'16 ~ '18년	'19 ~ '21년	'22년 이후
비율	70%	80%	90%	100%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사례
임금총액 포함	고정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생산장려수당, 위험수당 등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변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임금총액 제외	경영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성과급, 격려금 등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으로 부여하는 금품
	실비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수당 외의 것으로 임시로 지급된 금품

02 / 부담금 시산(계산)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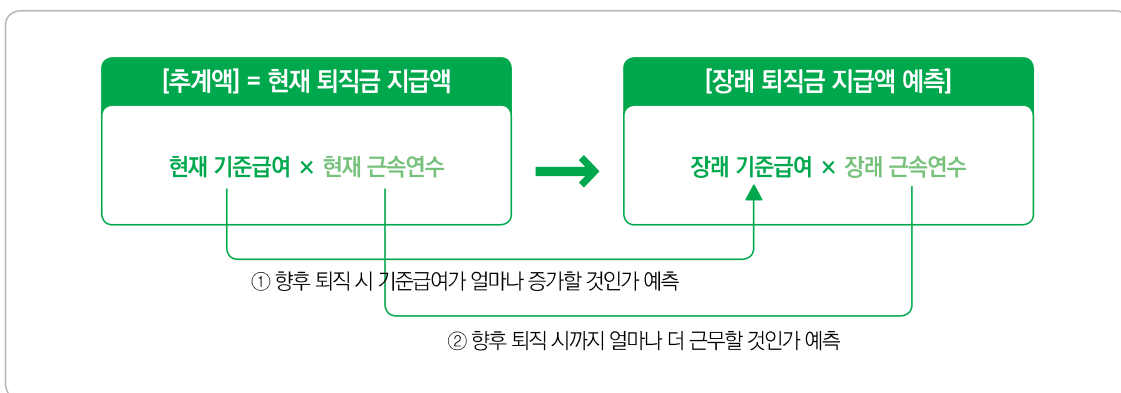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이란 근로자들이 장래 특정시점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하는 예상금액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신규가입 시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예상이율, 예상퇴직률, 예상임금상승률, 예상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계산방식과 유사합니다.

2. 업무처리절차

단계	주체	세부절차
1단계	회사	부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서류(시산의뢰서, 가입자명부)를 NH농협은행에 제출
2단계	은행	확정급여형 부담금 산정 및 시산결과를 회사에 통보
3단계	회사	은행이 산출한 시산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부담금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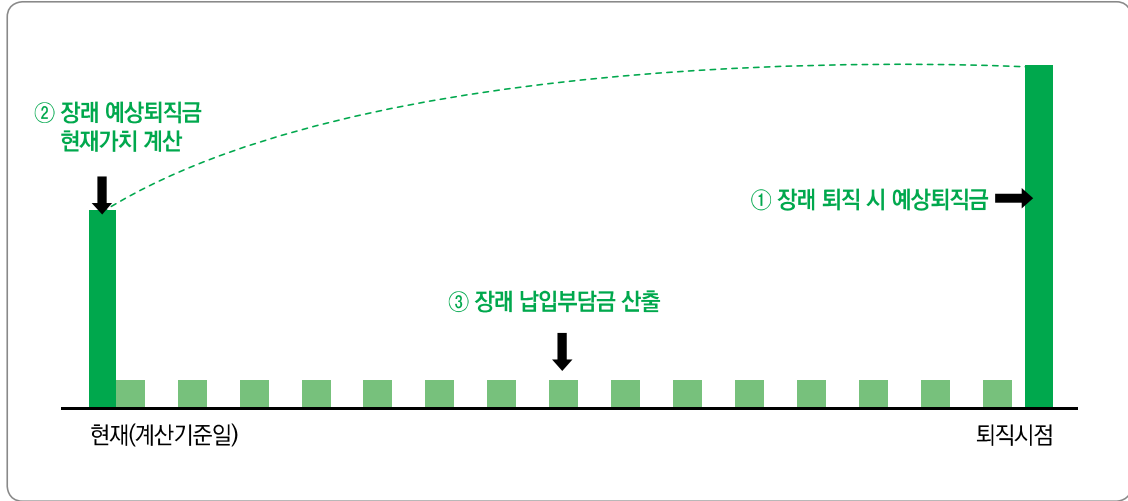
• 장래의 퇴직금 예측

가입자 명부상의 근로자 입사일, 기산일(=입사일 또는 중간정산 익일), 기준급여(=추계액 계산에 사용된 30일치 평균임금), 추계액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장래의 퇴직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부담금 산출

장래 퇴직 시 예상 퇴직금을 현재시점으로 할인한 후 그 금액을 현재부터 장래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동일하게 나누어 연 평균 납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3. 부담금 종류

시산결과 부담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표준부담금** : 부담금 계산기준일 이후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
- ▶ **보충부담금** : 부담금 계산기준일 이전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 **특별부담금** :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03 / 재정검증

1 재정검증이란?

1. 의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에 의해 확정급여(DB)형 제도에 가입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NH농협은행)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법정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주1)} × 법정 최저적립수준^{주2)}**

주1) 기준책임준비금 : [금융기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방식(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한 퇴직부채와
[회사가 제공한 퇴직금추계액] 중 큰 값

주2) 법정 최소적립비율 : 80%(16년 ~ 18년), 90%(19년 ~ 21년), 100%(22년 이후)

2. 통보시기

NH농협은행은 재정검증을 완료한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만약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부족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적립부족 시 후속조치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와 NH농협은행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필요서류	내용	기타
추계액 변경양식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임금, 추계액 정보 등	기존 가입자 대상
가입자추가 양식	추가가입자의 생년월일, 입사일, 기산일, 평균임금, 추계액 정보 등	신규 가입자 대상

3 처리절차

단계	주체	세부절차	시기
1단계	은행	사업연도 말 기준 적립부족이 예상되는 회사 대상 추가 납입 예상액 안내	결산월 - 2개월
2단계	회사	재정검증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입자정보(평균임금, 추계액)를 은행에 제출	결산월 + 4개월
3단계	은행	회사가 제공한 가입자명부 및 타사적립금(농협은행이 간사일 경우)를 기초로 재정검증 산출 및 결과보고서 등 회사에 서면 발송 ※ 재정검증 결과가 부족한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발송 (단, 회사가 사내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린 후 그 증빙을 제출한 경우 제외)	결산월 + 6개월
4단계	회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결산월 + 8개월
5단계	은행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제출법인 관련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통보	결산월 + 9개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서

계좌번호	수신처	통보일자
------	-----	------

1 일반 현황

제도설정일	납입주기	법정 최소적립비율			결산연월	가입자수	평균임금 합계
		설정 전 ¹⁾	설정 후 ²⁾	전체 ³⁾			
		%	%	%	년 월		원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 제16조제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연차)에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 3)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과 설정 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예상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text{산출식} = \frac{[(\text{평균 과거근로기간} \times \text{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text{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2020년 : 90\%))]}{\text{전체 가입기간}}$$

2 납입 현황

(해당 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부담금 산정액	부담금 납입액	차액 ⁴⁾
원	원	원

- 4) 해당 기간에 적용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액과 해당 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또는 초과액을 차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기초율⁵⁾ 현황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			

- 5) 기초율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및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4 검증 결과

(산출 기준일 : 2020년 2월 29일)

최소적립금 산출		적립금 평가액 산출		
계속기준 금액 ⁶⁾ (A)	원	원리금보장 ⁶⁾ 평가액 (F)	농협은행	원
			타사	원
비계속기준 금액 ⁶⁾ (B)	원	상적배당 ⁶⁾ 평가액 (G)	농협은행	원
			타사	원
기준책임준비금 (C = Max(A, B))	원	평가적립금 합계 ⁶⁾ (H = F + G)		원
법정 최소적립비율 (D)	%			
최소적립금 ⁶⁾ (E = C × D)	원	회사 적립비율 (I = H/C)		%
검증결과 ⁶⁾				

▶ 뒷면 계속

- 6)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산정).
- 7)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최소적립비율(일반연환의 전체 법정 최소적립비율 값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9)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입니다.
- 10)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평균¹⁾에 따른 평가 금액입니다. 다만, 평가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²⁾한 금액입니다.

①12개월간의 시가 평균	②사업연도 말 시가	③최종 평가금액
원	원	원

- 1)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의 평가액과 실적배당 운용방식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2) 최소적립금과 평가적립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

5 조치 사항

[검증결과 6] 평가적립금 (최소적립금¹⁾ × 95%

검증결과	부족금액	조치사항	참고
부족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계획서는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납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동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와 당 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하여야 함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 되어,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 다음 재정검증 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② 아래 산출식에 따른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에 기준책임준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산출식} = \frac{[(\text{평균 과거근로기간} \times \text{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text{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2020년 : 90\%))}{\text{전체 가입기간}}$$

③ 부족금액은 최소적립금의 95% 금액에서 평가적립금을 뺀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19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NH농협은행

귀하

- ※ 위 결과는 귀사가 제공한 직전 결산일 기준 가입자정보를 기초로 계산 되었습니다. 만약, 귀사가 직전 결산일 기준 가입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신 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위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부족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장 및 용어 설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검증결과 통보서 용어 설명

1 법정 최소적립비율

1-1. 설정 전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 도입 전 과거근무기간에 적용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뜻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연차 및 제도도입일 기준 전 가입자들의 평균 과거근무기간(중간정산 이후)에 따라 아래표에 대응하는 비율이 적용됨

가입 후 연차 (연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 년도		-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9차 년도		-	-	-	-	100분의 100

1-2. 설정 후 :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근무기간에 적용하는 최소적립비율 (2019년 ~ 2021년 : 90%, 2022년 이후 : 100%)

1-3. 전체 : 과거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도입한 경우 과거근무기간, 정래근무기간(제도 도입 후 근무기간) 각각의 최소적립비율을 가입기간별률 가중평균하여 적용

※ 재정검증 법정 최소적립비율 산출 예시
 Q. 2015.3.1.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입자 2명(각각의 과거근무기간 : 7년, 4년) 일 경우?
 A1) 2020.2.29 기준 가입 후 연차 ⇒ 5차년도
 A2) 평균 과거근로기간 연수 ⇒ 5.5년 [(7년+4년)/2=5.5년]
 A3) 설정 전 법정 최소적립비율 ⇒ 80%, 설정 후 법정 최소적립비율 ⇒ 90%
 A4) 전체 법정 최소적립비율 ⇒ (5.5년 × 80%) + (5년 × 90%) / (5.5년 + 5년) = 0.8475 → 84.75%
 ⇒ 취직비율은 회사가 실제 적립한 비율이 아닌 적립 과부족을 판단하는 법정 최소적립비율임을 유의

2 부담금 산정액

퇴직연금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래 퇴직금이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산정한 예상 입금액 (100% 납입 가정)

3 부담금 납입액

직전 사업연도(2019년)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4 기준책임준비금

회사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중 큰 값]

- * 계속기준책임준비금 : 퇴직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금계리방식으로 산출한 퇴직부채를 뜻함. 이때 금융기관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열거한 기초율(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의 퇴직과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한 후, 근무제공기간으로 인분 및 예상이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 (계속기업 개념 적용)
- **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퇴직금 제도가 종료된다는 가정 하에 사업연도 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퇴직금추계액을 합산한 금액(회사 재권, 즉, 직전 사업연도 말 전 가입자가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총액)을 뜻함. (청산기업 개념 적용)

5 최소적립금

사업연도 말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 최소금액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법정 최소적립비율(위 1-3, 전체에 해당)

※ 가입기업은 확정급여형(DH)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능력을 확보 하기 위해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해야 하며, 만약 최소적립금 미만 적립 시 재정검증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외의 근로자대표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6 평가적립금 합계

원리금보장 평가액*과 실적배당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사업연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총액을 뜻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타 금융기관과 복수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간사기관의 적립금을 포함한 금액)

- * 원리금보장 평가액 :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상품(정기예금, 원리금보장 예금, 채권 등)을 사업연도 말 시가로 평가한 금액
- ** 실적배당 평가액 : 실적배당형 상품(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형 펀드 등)을 사업연도 말로부터 직전 12개월간의 일별 시가로 평균한 금액 (단, 사업연도 말 실적배당형 시가금액의 최대 110% 또는 최소 90%를 한도로 함)

7 회사 적립비율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한 비율을 뜻하며, 퇴직연금 적립총액을 기준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값

3 재정안정화계획서(예시)

NH Bank pension.nhanhyup.com

퇴직연금 재정안정화계획서

NH농협은행(주) 및 근로자대표* 앞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3항(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으로 판단받아 적립금 부족액에 대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1 기본정보

기업명		퇴직연금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연금제도 개시일자		재정검증 기준일자	

2 재정검증 결과

법정 최소적립금 계산결과 (기준일: 2020.2.29.)		적립금 평가액 (기준일: 2020.2.29.)	
①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⑥ 원리금보장형 평가액	
②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⑦ 실적배당형 평가액	
③ 기준 책임준비금 [③=MAX(①,②)]		⑧ 평가적립금 합계 [⑧=⑥+⑦]	
④ 법정 최소적립비율		⑨ 재정검증 적립비율(회사) [⑨=⑧÷③]	
⑤ 법정 최소적립금 [⑤=③×④]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조치사항	● 부족금액() 원 ●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필요 (주) 부족금액 = 법정 최소적립금(⑤) × 95% - 평가적립금 합계(⑧) ※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NH농협은행과 근로자 과반수 가입한 노동조합(있는 경우 전체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3년 이내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해야 함		

3 재정안정화 계획 (회사 작성)

	1차연도 (2020. 3. 1. ~ 2021. 2.28.)	2차연도 (2021. 3. 1. ~ 2022. 2.28.)	3차연도 (2022. 3. 1. ~ 2023. 2.28.)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납입일자또는 납입예정일자포함)	2020년 월	2021년 월	2022년 월
납입예정금액 (납입금액)	년간 총 원	년간 총 원	년간 총 원

※ 작성 시 유의사항
 1차연도부터 순차적으로 3년 이내 부족금액 균등 해소할 수 있는 납입금액, 자금조달방안, 제출일자 기재 후 사용자 명판, 직인날인하여 제출하십시오. 직전 사업연도 말(20.02.29.) 기준 재정검증결과 통보서 상 부족금액을 '20.03.01. 이후 전액 납입한 경우' 1차연도, 란에 부담금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자금조달방안 제외)만 기재 후 농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년 월 일

명판	거래인감
----	------

NH농협은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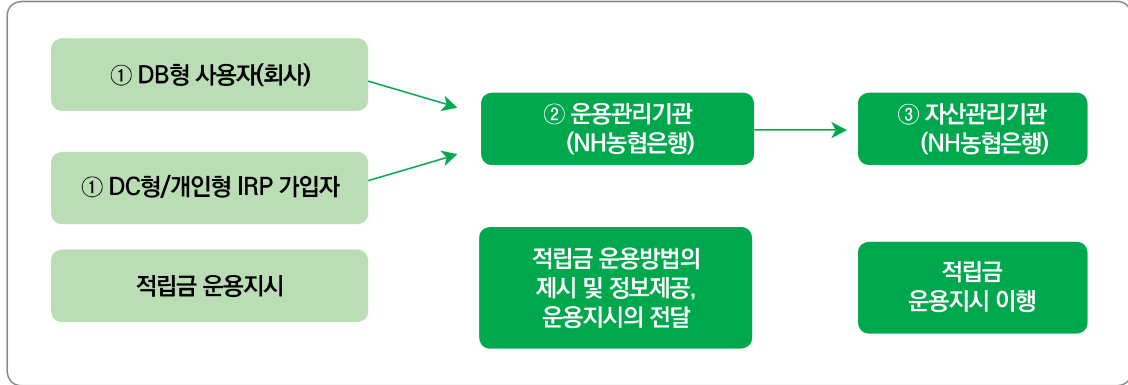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부채 절감 (DB형), 퇴직소득 극대화(DC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자산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퇴직연금 자산 운용
02.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법 변경
03. 포괄적 운용지시

01 / 퇴직연금 자산 운용



1. 퇴직연금 투자가능 자산별 주요 특징

자산 유형		주요 특징	
원리금 보장형	정기예금	• 만기시 : 약정된 원리금 지급 보장	DC/IRP에 한하여 예금자보호 대상
	보험사 이율보증형 보험(GIC)	• 재예치 :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특약에 따라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증권사 파생결합 사채(ELB)	• 만기시 : 만기상환 손익구조에 따른 원금 및 수익 지급 ※자동 재예치 처리되지 않음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실적 배당형	주식형 펀드	•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주식관련 자산에 투자 -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개별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	
	주식혼합형 펀드	• 채권형, 주식형 이외의 펀드로 50% 이상을 주식·주식관련 자산에 투자 - 주식·주식관련 자산에 60% 이상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개별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ETF/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	
	채권혼합형 펀드	• 채권형, 주식형 이외의 펀드로 50% 이상을 채권·채권관련 자산에 투자 - 채권·채권관련 자산에 60% 이상, 주식·주식관련 자산에 40% 미만 투자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채권형펀드에 60% 이상, 주식형펀드에 40% 이내로 투자하는 모자형 펀드구조로 운용됨	
	채권형 펀드	• 채권·채권관련 자산에 60% 이상을 투자 - 실질적으로는 채권/채권관련 자산 및 일부 유동성에만 투자 - 개별 채권(국공채, 회사채, CP 등)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하며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	
	부동산 펀드	•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	

2.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

구분		국내	해외	계
원리금보장형		134	·	134
집합투자증권	채권형	42	27	69
	채권혼합형	73	49	122
	주식혼합형	7	100	107
	주식형	52	84	136
	부동산형	·	2	2
합계		308	262	570

☞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는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nonghyup.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 현행 규정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으로 구분하고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 한도를 70%로 제한

위험자산이란?

☞ 위험자산의 정의 <근퇴법시행령 제26조 및 감독규정 제11, 12조>

- 주식편입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BBB-) 미만 채권의 투자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 위험자산 투자한도 <근퇴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DB/DC/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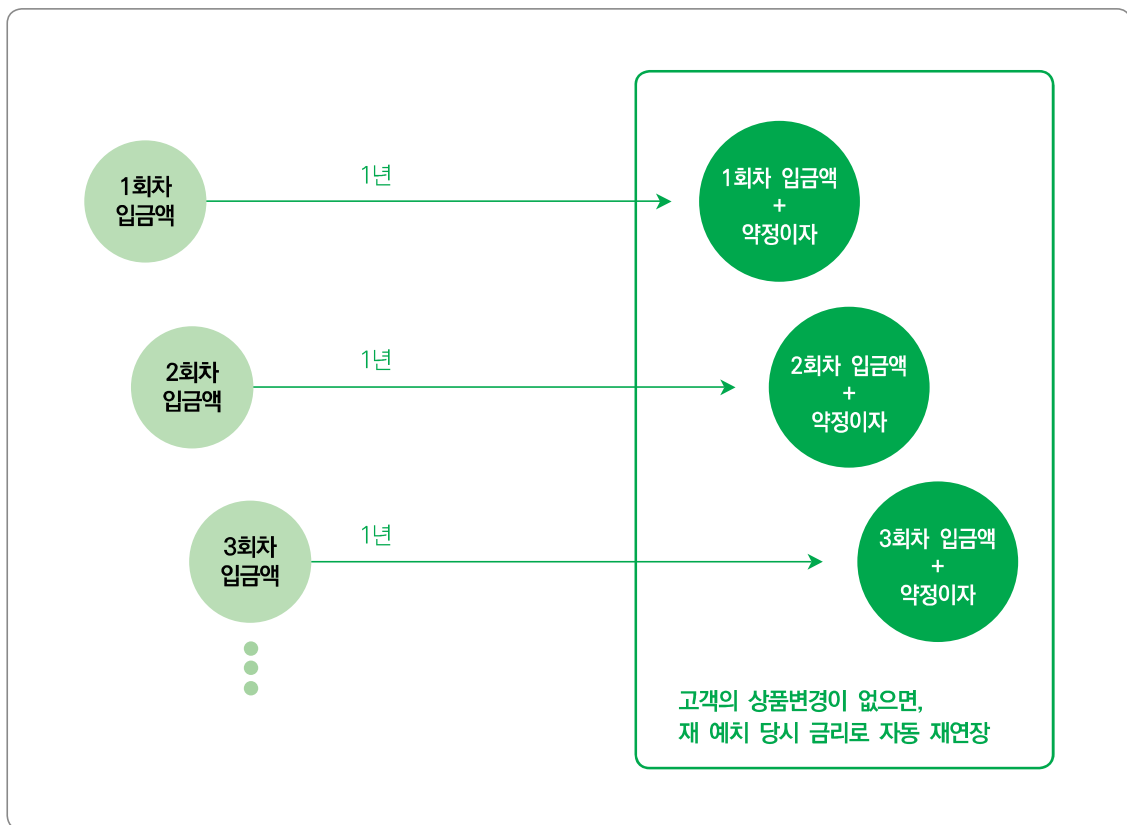
- 당행 판매상품 유형별 위험자산 구분 및 투자한도

구분		상품예시	투자한도	
			DB	DC/IRP
비위험자산	원리금보장	(저축)은행 정기예금	100%	100%
		보험사 GIC		
증권사 ELB				
	낮은투자위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	주식편입비 40% 이하 펀드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 투자적격(BBB-)미만 채권 30% 이내인 펀드에 한함		
위험자산	집합투자증권	주식편입비 40% 초과 펀드 (주식형, 주식혼합형 등)	70%	70%

4. 운용상품별 주요 특징(정기예금)

- **정기예금** : 은행법에 따른 시중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원금 및 확정이율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2015.7. 이후 자사상품 제공 금지)
- DC/IRP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DB는 예금자보호법 미 적용
- 상품매수일이 속한 달의 금리 적용(금리는 월별로 공시되며, 매달 말일 기준 4영업일 전에 익월 금리 공시)
- 만기에정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운용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단, 포괄적운용지시를 한 경우에는 포괄적운용지시 방법에 따라 최적상품으로 운용됨)
-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율 적용(중도해지 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이율 등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nonghyup.com>)에 공시된 상품제공기관별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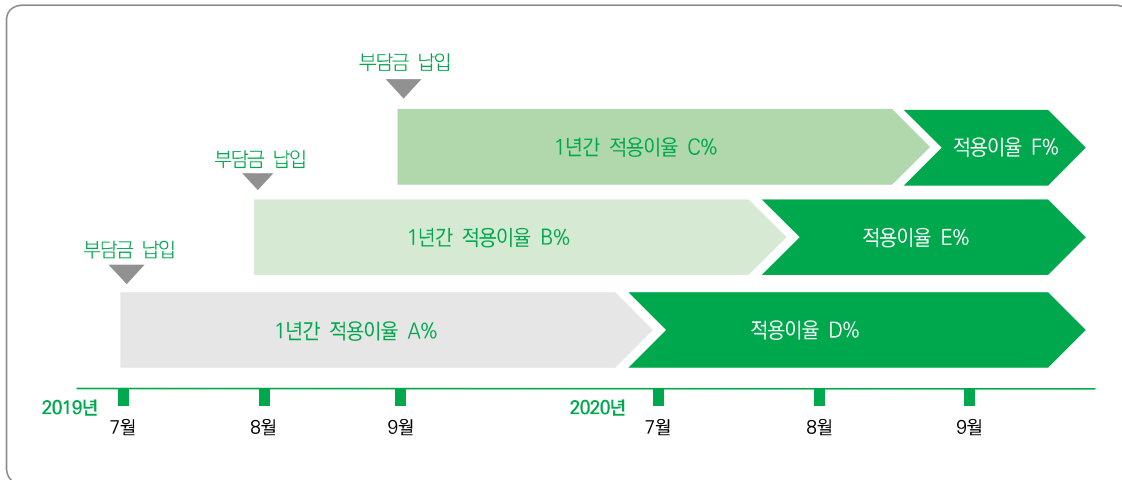
📍 정기예금(1년) 예시



5. 운용상품별 주요 특징(GIC)

- **이율보증형보험계약(GIC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 적립금의 확정이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현재 DB에만 GIC가 제공가능하며, DB는 예금자보호법 미 적용
- 상품매수일이 속한 달의 금리 적용(금리는 월별로 공시되며, 매달 말일 기준 4영업일 전에 익월 금리 공시)
- 만기에정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운용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이율 등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nonghyup.com>)에 공시된 상품제공기관별 약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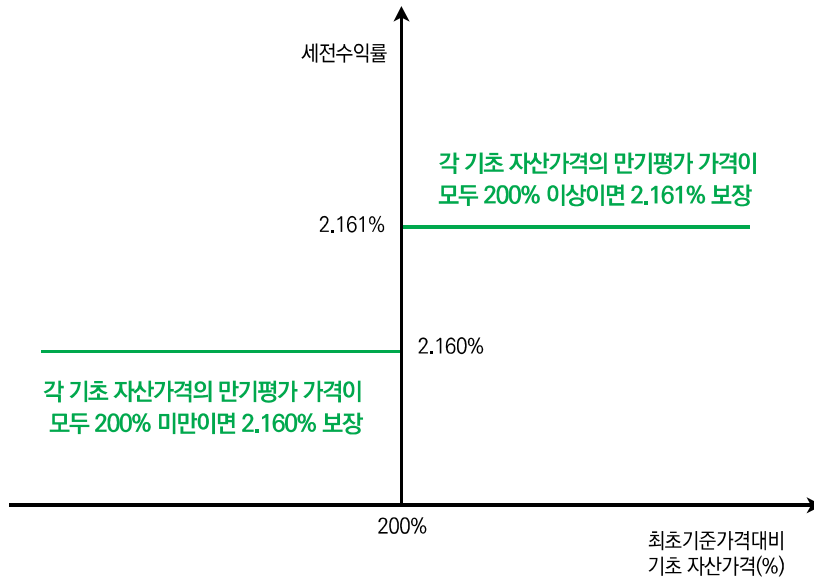
📍 GIC(1년) 예시



6. 운용상품별 주요 특징(ELB)

- **주기연계파생결합사채(ELB : Equity Linked Bonds)**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의 사채로 만기상환 손익구조에 따른 원금 및 확정수익 지급
 - 가. 상환금액이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할 것
 - 나.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다. 수취자금의 운용 시 파생결합증권과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출 것
-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상품이 아님
- 상품매수일이 속한 달의 금리 적용(금리는 월별로 공시되며, 매달 말일 기준 4영업일 전에 익월 금리 공시)
- 만기 시 원금 및 수익이 상환처리 됨 (자동 재예치 안됨)
-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율 적용(중도해지 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이율 등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참고)

📍 ELB 수익구조 예시



ELB는 주식, 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놓은 손익조건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결정

최초기준가격

- 투자시점(최초기준가격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100(%)의 값
- 예를 들어 최초기준가격결정일(상품설정)에 기초자산 삼성전자 주가가 100이라면 100을 기준으로 최초기준 가격이 설정되며, 만기시점에 기초자산(가로축)이 100보다 기초자산 하락, 100보다 크면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판단

기초자산

- 기초자산으로 설정되는 주식은 대형주(삼성전자,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며 주가지수는 국내 종합주가지수 (KOSPI)나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KOSPI200 등으로 구성

7. 운용상품별 주요 특징(FUND)

-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펀드)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 원금 손실 가능성과 위험자산 해당여부는 별개의 내용으로, 위험자산 해당여부는 위험자산의 정의 <근퇴법시행령 제 26조 및 감독규정 제11, 12조> 참고
- 퇴직연금 사업자는 상품 제공 기관(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
-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펀드) 매수시 별도의 보수 발생
 ※ 단,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 만기가 있는 사모펀드, 단위형펀드 등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있음
- 퇴직연금 전용 펀드 대부분은 별도의 만기가 없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교체 가능(단, 펀드 매수/매도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8. 상품 유형별 운용상품 매수/매도시 평균 소요시간

구분		매수	매도
정기예금		D + 1(2영업일)	D + 2(3영업일)
국내	채권혼합형	D + 2(3영업일)	D + 4(5영업일)
	주식혼합형	D + 2(3영업일)	D + 4(5영업일)
	주식형	D + 2(3영업일)	D + 4(5영업일)
	채권형	D + 2(3영업일)	D + 3(4영업일)
해외	채권혼합형	D + 3(4영업일)	D + 8(9영업일)
	주식혼합형	D + 3(4영업일)	D + 8(9영업일)
	주식형	D + 3(4영업일)	D + 8(9영업일)
	채권형	D + 2(3영업일)	D + 7(8영업일)

☞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 간의 운용지시 전달에 따라 매입/환매신청일로부터 기준가격 적용 및 지급이 1영업일 이상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경우 상품별로 매입·환매 소요기간은 기재된 사항과 다를 수 있으며, 매입·환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입·환매절차는 기재된 사항과 다를 수 있으며, 매입·환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요일자는 약관 및 상품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nonghyup.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금융감독원 집중투자 한도관련 감독규정 개정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한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에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함으로써 금융기관 리스크를 분산하여 가입자 퇴직연금 보호 및 수급권 강화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금지(시행일 : 2015.7.1.) <small>※ 퇴직연금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입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 거래 불가</small>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모든 가입 기업 가입자 - 내용 : 적립금 운용 시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투자 불가
적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 상 농협정기예금에 대한 운용지시 불가 기존에 운용 중인 NH농협은행 정기예금 만기 재투자 시에도 타행정기예금 자동 매수를 위한 자산운용감독규정 동의 필요 운용지시 거절 조항 : 신규·추가적립 및 재예치 시 농협정기예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요청하는 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운용지시 거절

FOCUS ON!

■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제도란?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정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

■ 디폴트옵션 제도의 효과

-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 구조를 합리화하고 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으므로,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주고 가입자의 정보 부족과 무관심을 일부 완화

■ 국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동향

-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발의 등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논의·진행 중에 있음

02 /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법 변경

1. 운용비율 변경과 교체매매 등록 비교

구분	운용비율 변경	교체매매
의미	향후 입금하는 부담금의 운용방법(상품,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기존 운용중인 적립금의 운용방법(상품, 비율) 변경
대상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	기존 보유·운용 중인 적립금
효과	운용지시 변경 전까지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계속 적용	일회적 성격을 띄며, 교체매매한 적립금에 대해서만 적용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퇴직연금)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퇴직연금)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 • 현재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하여 입금하고자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이 만기가 되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운용중인 상품을 환매 후 다른 상품으로 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p>향후 입금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A예금 50%, B펀드 50%로 운용지시</p> <p>▶ 부담금 100만원 입금 시 A예금 50만원, B펀드 50만원으로 계속 매수 운용</p>	<p>적립금 100만원에 대하여 A예금 50만원, B펀드 50만원으로 운용 중</p> <p>▶ 교체매매 신청 A예금 20만원 일부매도 B펀드 30만원 일부매도 C펀드 50만원 매입</p> <p>☞ 결과(교체매매 후 자산현황) A예금 30만원, B펀드 20만원, C펀드 50만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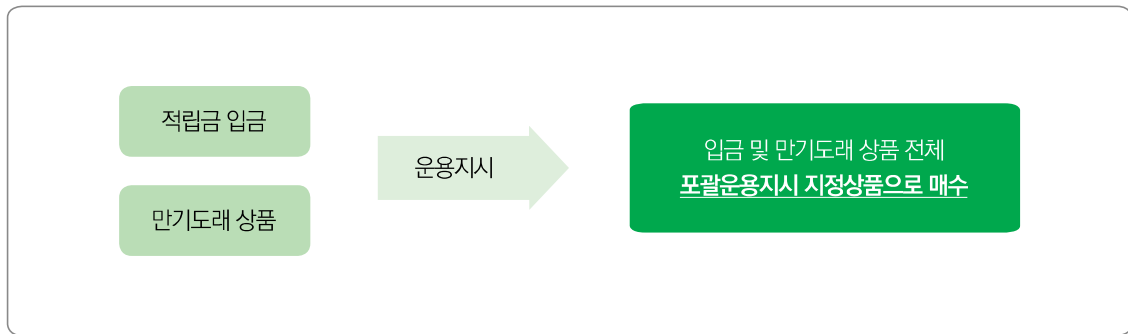
2. 운용현황 조회 및 교체매매 채널

<p>NH농협은행 퇴직연금 인터넷 홈페이지</p>  <p>pension.nonghyup.com</p>	<p>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p>  <p>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NH농협은행' 검색 후 앱다운</p>	<p>전국 점포수 1,122개</p>  <p>수도권 및 지방의 균형있는 국내최대점포망! (금감원금융통계 2020년 12월 말 기준)</p>	<p>퇴직연금 전용콜센터</p>  <p>1588-5995 상품내용·가입방법·수익률안내 이용가능시간 평일 09시~18시</p>
--	--	---	--

03 / 포괄적 운용지시

1. '포괄적 운용지시'란?

-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 만기, 비중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
- 고객의 선택범위에 따라 적립금 입금, 상품만기 시점마다 당행에서 제공 가능한 한도 내 최적상품으로 운용상품이 변경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공기관 여건, 당행 상품매수한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지정하여 운용



2. 대상 제도 : DC/IRP (DB제도는 해당없음)

3. 포괄적 운용지시 종류

- 개인형IRP : 은행정기예금(1년·2년·3년·5년), 저축은행정기예금(1년·2년·3년)
- DC/기업형IRP : 은행정기예금(1년·2년·3년·5년)

4. 포괄적 운용지시 방법

포괄적운용지시로만 운용	포괄적운용지시와 실적배당상품 함께 운용
포괄적 운용지시 100%	포괄적 운용지시 〇〇% + 실적배당상품 〇〇%

5. 기타 안내사항

■ 포괄적 운용지시 선택 시 만기상품이 포괄적 운용지시에 따른 상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품 매수일이 전산 처리일 만큼 늦춰집니다.

- 상품매수 완료일 : 기존상품 만기 처리일* + 2 영업일

* 만기 처리일 : 전산적으로 상품의 만기를 반영하여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처리하는 날

【참고】 포괄적 운용지시 적용 시 운용 상품 및 금리 기준

구분	상품 적용 기준	금리 적용 기준
입금 시	상품 매수일 (입금일 익영업일)	상품 매수일 (입금일 익영업일)
재예치 시	기존 상품 만기 처리일	교체 상품 매수일 (기존상품 만기 처리일 + 2영업일)

FOCUS ON!

■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금융관련 법령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구분	개념	대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신탁 등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 신용카드 등

-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있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확대 적용

구분		개념
준수	① 적합성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 적용 대상이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 → 대출성 상품 등으로 확대
	② 적정성원칙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고지·확인 - 적용 대상이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 대출성, 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 -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 유지·관리
금지	④ 불공정영업행위	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⑥ 허위·과장광고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규정

■ 금융소비자 구제 제도 다수 도입 및 법 위반시 금융회사 제재 강화

구분	개념(내용)	제정 전	제정 후	
신설	청약철회권	계약 철회시 금전 반환	보장성,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포함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원칙 위반시 계약해지 요구 가능	-	모든 상품 유형에 적용
사후구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조정 신청 사건이 소송중일 경우 소송 중지	-	소비자 신속 구제 수단
	분쟁조정이탈금지	소액분쟁(2천만원 이내) 사건 제소금지	-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시 까지 제소 금지
	입증책임 전환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판매금융회사로 전환	-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적용
처분	판매제한명령권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제한·금지	-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시 판매제한 가능
	금전적 제재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부과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금융상품 판매업 미등록 및 부정등록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	일부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로 규율	법률로 직접 규제 및 판매 금융사도 관리책임 부여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 통제	법률상 규율 없음	관리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Q1 퇴직연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원칙이 적용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1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행위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부담금 운용지시, 보유상품 교체매매** 등 '운용상품 선택'을 수반하는 모든 업무^(주1)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원칙^(주2)이 적용 됩니다.

(주1) 신규 및 가입자 추가시에도 부담금 운용지시 절차가 포함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원칙 적용
 (주2)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계약서류 제공 의무 등

Q2 여러 상품 운용시 전 상품에 대해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을 적용하나요?

A2

-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상품을 운용지시 할 수 있으며, 운용지시하는 전 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주요 원칙이 적용됩니다.

Q3 퇴직연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원칙이 적용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3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주요 원칙 적용의 주체는 상품운용을 지시하는 당사자이며 제도마다 상이합니다.
- DB : 기업(사용자)
- DC / 기업형IRP / 개인형IRP : 개인(가입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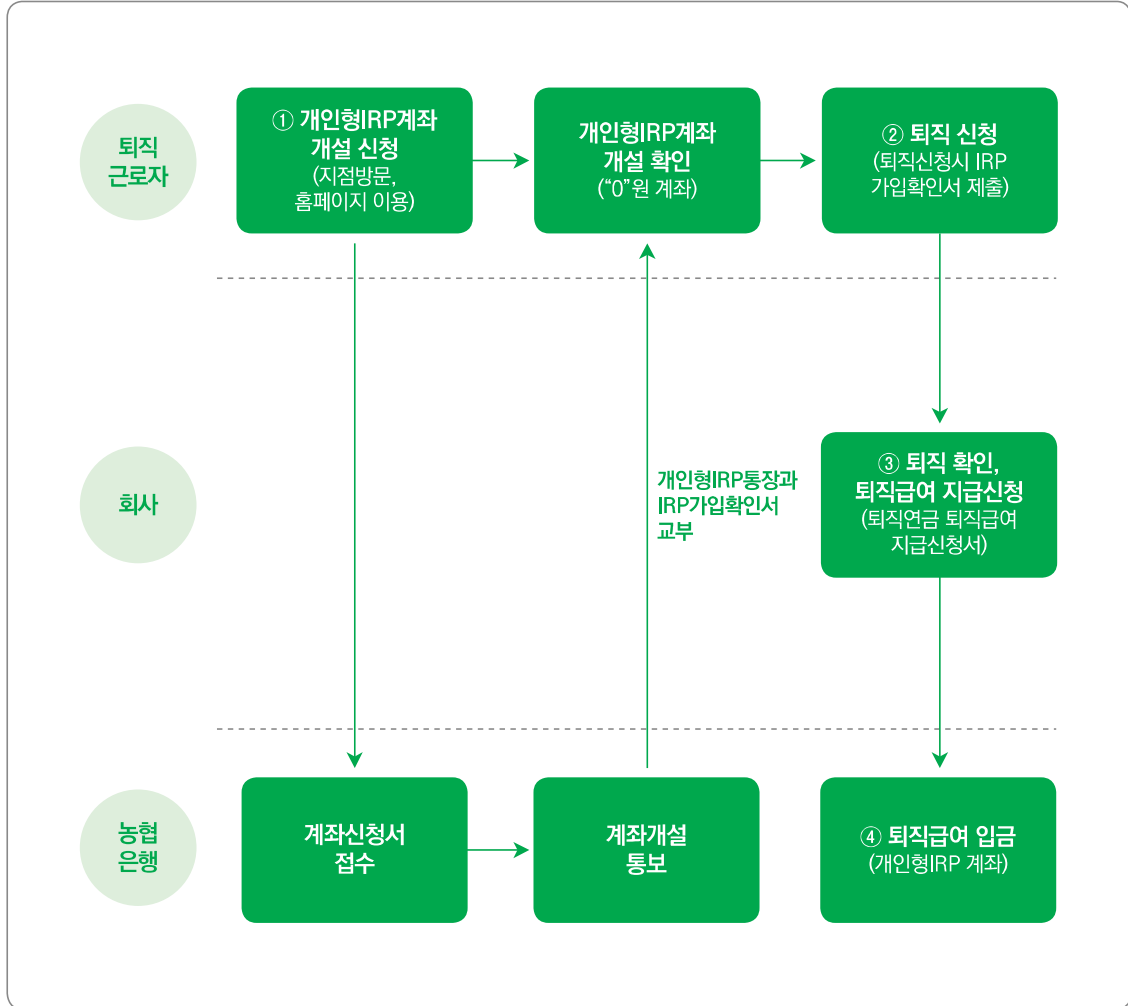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 시
제도별 지급절차·필요서류 그리고
중도인출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퇴직연금 지급절차
02. DB형 가입자 퇴직연금 지급
03. DC형 가입자 퇴직연금 지급
04. 중도인출(DC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

01 / 퇴직연금 지급절차



- ① 퇴직자는 퇴직전 퇴직연금사업자를 방문하여 개인형IRP("0"원 계좌) 개설
- ② 퇴직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신청과 함께 "IRP 가입확인서" 제출
- ③ 회사담당자는 "퇴직연금 퇴직급여지급신청서주1) (NH농협은행 서식)"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
주1) 서식다운로드 경로 : 농협은행 퇴직연금 웹사이트 - 퇴직연금상담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IRP로 급여이전 등 입금처리

02 / DB형 가입자 퇴직연금 지급

-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재원을 사외예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외예치된 퇴직연금은 퇴직 등 법적인 사유 발생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 장에서는 퇴직자 발생시 필요서류 등 업무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지급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IRP로 강제 이전이 원칙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 퇴직연금담보대출 받은 근로자(잔여금액은 개인형IRP로 이전해야 함)
- 퇴직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사망자, 즉시 출국예정 외국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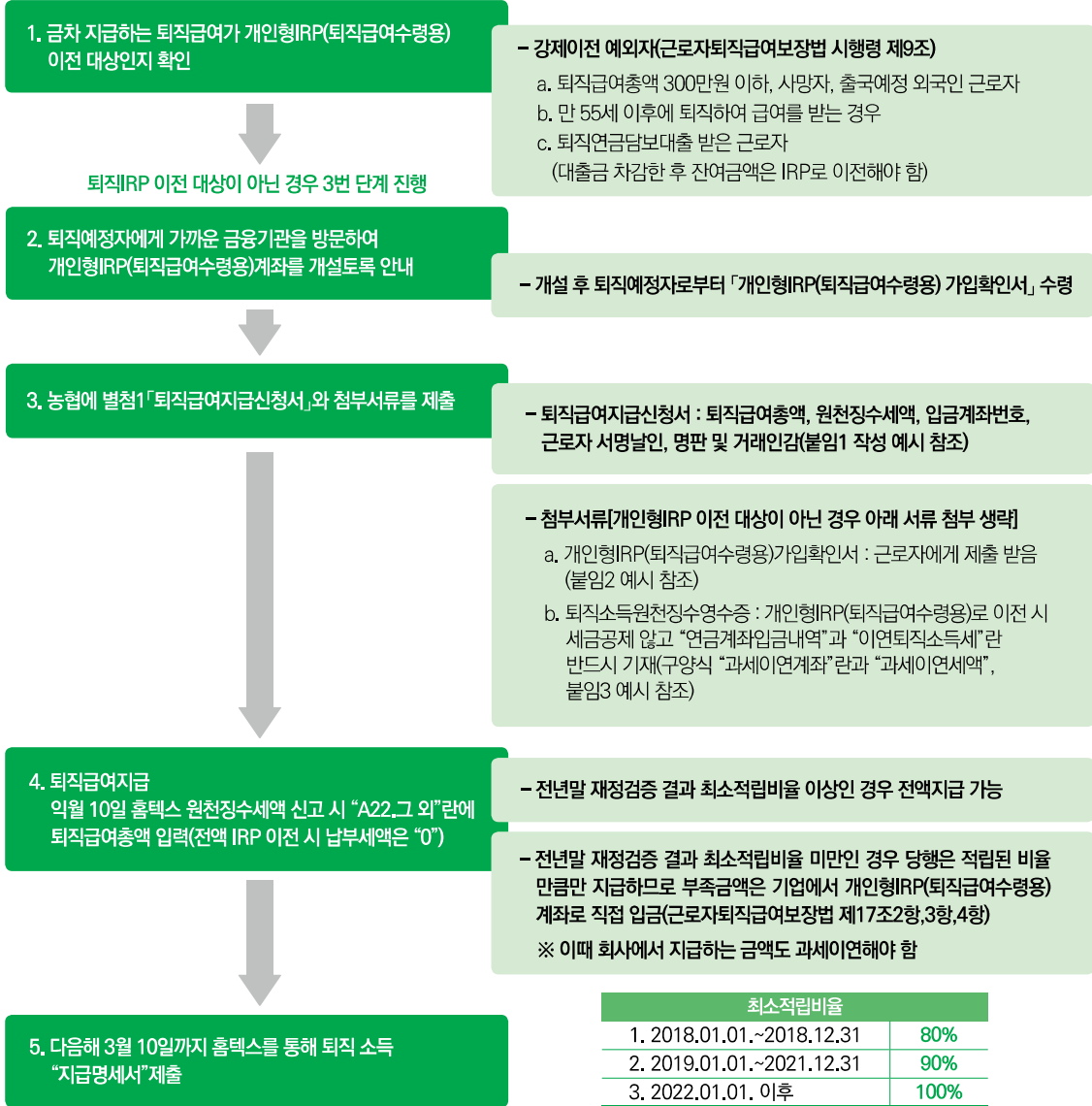
※ 규약에 수급자격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 가능

2 필요서류

서식명	비고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B] -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IRP 가입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식 통장사본	개인형IRP 강제이전 예외(일시금 지급)인 경우

3 처리절차

DB형 급여지급 절차



※ DB형 원천징수의무는 기업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란을 모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퇴직소득"으로 검색)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농협에 알려주셔야 재정검증 및 퇴직금 지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1조)

[DB형 별첨]

※ 지급형태, 수급자격, 퇴직금총액(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입금계좌정보(개인형IRP 또는 본인입출식 계좌 (일시금인 경우)) 등을 기재바랍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DB)

팀원	팀장

전산인자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아래의 사유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기업명	㈜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계좌번호	090-0000-0000-**	자산기관	농협	담당자 연락처	02-1234-5678

* 자산기관은 연번들계약에서 매도 자산기관이 농협은행이 아닐 경우 자산기관을 기재

2. 지급정보

급여	가입자(근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01.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퇴직일자	2020.06.30		가입자연락처	010-1234-5678	
	지급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사망		수급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1년미만, 미지급)	
	일시금지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만5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36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비출국예정 외국인				
	일시금 수령 시 (입출식 계좌번호)	입금은행() / 예금주() ※ 가입자 본인 입출식 계좌번호 (가입자 사망 시에는 대표수익자 계좌)				
	사망 시	대표수익자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사망 시	가입자와의 관계	연락처			
급여이전 시 (개인IRP계좌번호)	금융기관(농협) / 계좌번호(090-1234-5678-01) / 예금주(홍길동)	기업의 폐업/도산 연락두절로 인한 농협은행 개인IRP로의 급여이전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 지급형태가 (일부)급여이전인 경우 개인IRP 가입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첨부(IRP계좌번호 및 금융기관 연락처 등 확인)
 *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시 수급자격[부]에 표시

* 기업의 폐업/도산 연락두절로 지급신청 및 퇴직소득원천징수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약관에 의해 근로자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지급은 **농협은행 개인IRP로의 급여이전 처리만 가능**하며, 농협은행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로 원천징수하여 **농협은행 개인IRP로 과세이연** 처리하며, 이에 따른 향후 원천징수 및 세금납부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치사항 발생 시 가입자는 이에 응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가입자 (인)**

퇴직급여정보	DB전액지급예외	<input type="checkbox"/> 사업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input type="checkbox"/> 기업도산·폐업 <input type="checkbox"/> 최소적립비율이하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지급누계액 과다 <input type="checkbox"/> 전액지급 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 제한 ※회생 및 파산, 기업도산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						
	전액지급요청	원 (대표지급으로 인함, 간사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 징구)						
	퇴직급여총액 ①	추계액 ②	적립비율 (%)③	DB지급액 ④	퇴직급여 담보대출상환액	국민연금전환금	원천징수세액⑤	
	50,000,000						1,104,000	110,400

① 근로자의 금차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DB를 통해 지급 신청하는 퇴직급여액을 기재합니다.
 ② 추계액과 ③적립비율은 지급신청 시 거래명업정보에서 확인(#4671화면, 기업담당자 재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④ DB지급액은 지급방식이 전액지급방식인 경우 퇴직급여총액①, 적립비율방식인 경우 min(추계액②, 추계액② x적립비율③) 금액이 됩니다.
 ⑤ 원천징수세액은 일시금지급 시 사용자의 원천징수를 위해 회사에 반환되는 퇴직소득세(산출세액)를 기재합니다.

* 일시금지급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신고 된 기업반환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1050261 (2020.01.13.개정)



3. 매도상품 지정(일회성)

지급 시 운용상품 중 매도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매도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 지정된 매도순서 또는 약관에 의해 은행이 지정한 매도순서에 의합니다.

	상품명	매입원금	매입일자	만기일자	금리/ 총수익률	매도주문금액/ 매도주문수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성예시

※ 약관(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탁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신탁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 월 14 일

신청인 (근로/가입자)	홍길동	홍길동 (인)	기업명	(주) **기업	거래인감 기업
-----------------	-----	-------------------	-----	----------	-------------------

1050262 (2020.01.13.개정)



[DB형 별첨2]

※ 아래 예시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5천만원이 모두 개인형IR로 과세이연된 경우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20. . . >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2
					중고관련종사자 여부	예 / 아니오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구분	사업장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②법인명(상호)	㈜**기업	③대표자(성명)	이○○
	④법인(주인)등록번호	111011-1111111	⑤소재지(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⑥성명	홍길동	⑦주민등록번호	800101-1000000		
소득자	⑧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로 59			⑨영월여부	부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11) 2011.12.31.퇴직금	

귀속연도	2020-01-01	부터	(12) 퇴직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년퇴직 []정리해고 []자발적 퇴직 <input type="checkbox"/> 임원퇴직 []중간정산 []기타
	2020-06-30	까지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등		최종	정산
	(13) 근무처명			㈜**기업	
	(14)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15) 퇴직급여	-		50,000,000	50,0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	-		50,000,000	50,000,000

근속연수	구분	(18)입사일	(19)기산일	(20)퇴사일	(21)지급일	(22)근속월수	(23)재외월수	(24)가산월수	(25)중복월수	(26)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	-	-	-	-
	최종 근속연수	2005-07-01	2009-04-01	2020-06-30		135	-	-	-	12
	정산 근속연수		2009-04-01	2020-06-30		135	-	-	-	12

과세표준계산	계산내용		금액
	(27)퇴직소득(17)		50,000,000
	(28)근속연수공제		5,600,000
	(29) 환산급여 [(27-28) × 12배 / 정산근속연수]		44,40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29,840,000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14,560,000	

퇴직소득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32) 환산산출세액(31 × 세율)		1,104,000
	(33) 퇴직소득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 / 12배)		1,104,000
	(34)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35) 신고대상세액(33 - 34)		1,104,000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36) 신고대상세액(35)	연금계좌 입금명세				(38) 퇴직급여(17)	(39) 이연 퇴직소득세 (36 × 37 / 38)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1,104,000	농협은행	108-86-39742	990-1234-5678-01	2020-07-02	50,000,000	50,000,000	1,104,000
		(40) 합계				50,000,000		

납부명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41) 신고대상세액(35)	1,104,000	110,400		1,214,400
	(42) 이연퇴직소득세(39)	1,104,000	110,400		1,214,400
	(43) 차감원천징수세액(41-42)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징수(보고)의무자 ㈜**기업

세무서장 귀하 (서명) **기업**

[DB형 별첨3]

※ 개인형IRP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퇴직예정 근로자가 기업에 제출하는 가입확인서의 예시이며,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가입확인서

1. 가입자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800101-*****
----	-----	------	--------------

2. 퇴직연금 가입정보

용도	퇴직급여수령	계좌번호	090-1234-5678-01
----	--------	------	------------------

* 퇴직급여 입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이연정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3. 과세이연정보 등록요청

구분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FAX
받는기관	농협은행 퇴직연금BPR	02-2080-4226-7	02-2080-4209
보내는기관	(기관명)/(담당자)		

*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원권정수영수증과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탁기관 정보

수탁영업점명	000지점	사업자등록번호	104-86-39742
수탁기관연락처	02-000-0000	수탁기관FAX	02-0000-0000

* 퇴직급여의 입금확인 및 계좌관련 문의는 수탁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은 농협은행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05월14일

농협은행장



03 / DC형 가입자 퇴직연금 지급

1 퇴직연금 지급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IRP로 강제이전이 원칙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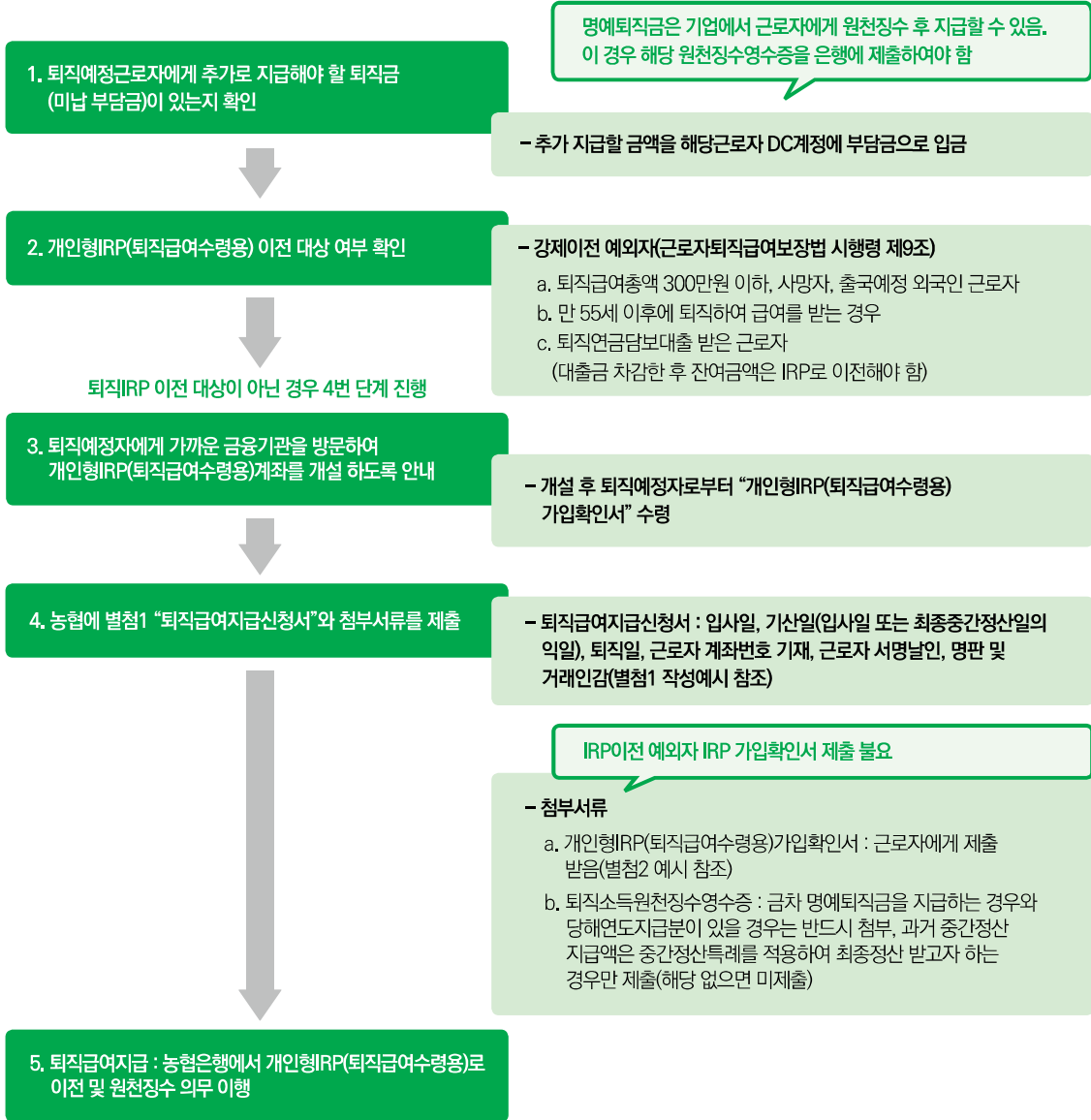
-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 퇴직연금담보대출 받은 근로자(잔여금액은 개인형IRP로 이전해야 함)
- 퇴직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사망자, 즉시 출국예정 외국인 근로자

2 필요서류

서식명	비고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DC/기업형IRP] - NH농협은행 서식제공	
IRP 가입확인서	
입출식 통장사본	일시금 지급인 경우

3 처리절차

DC형 급여지급 절차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3에 의거 DC형과 기업형IRP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당행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합니다. 미납부담금은 반드시 DC(기업형IRP)에 입금하시고 퇴직소득세 계산 납부를 위해 가입자의 입사일, 기산일 및 퇴사일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DC형 별첨1]

※ 지급형태, 수급자격, 입사일, 기산일, 퇴직일, 임금계좌정보(개인형IRP 또는 본인 입출식 계좌 (일시금인 경우)) 등을 기재

- 퇴직연금 지급액 외에 회사지급 퇴직금이 있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사일, 기산일, 퇴직일, 미납부담금 유무, 기업 별도지급 퇴직금 유무, 임원 퇴직소득 한도 등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팀원	팀장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DC/기업형IRP)

친신인자란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에서 아래의 사유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기업명	(주)**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계좌번호	090-4321-4321-**	자산기관	농협
		담당자 연락처	02-123-4567

※ 자산기관은 인번등록계약에서 매도 자산기관이 농협은행이 아닐 경우 자산기관을 기재

2. 지급정보

공통	가입자(근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8.01.01.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주택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00로 120		가입자연락처	010-4321-0000	
	퇴직일자	2020.06.30	수급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1년미만, 미지급)		
	지급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사망		지급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급여이전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input type="checkbox"/> 현물이전	
	일시금지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만55세이상 <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내국외출국예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일시금 수령 시 (입출식계좌번호)	입금은행() / 예금주() <small>※ 가입자 본인 인출계좌번호 (가입자 사망시에는 대표수익자 계좌)</small>				
	사망시	대표수익자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급여이전 시 (개인IRP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 지급형태가 급여이전인 경우 개인IRP 가입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첨부(IRP계좌번호 및 금융기관 연락처 등 확인)
※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시 수급자격[무]에 표시

DC · 기업형 IRP

1. 퇴직연금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미납부담금이 있습니까? 예(입금 후 지급 필수) 아니오

2. 퇴직연도에 퇴직연금 이외에 명예퇴직금 등 기업지급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퇴직년도 지급분은 필수, (퇴직년도 이전 신고된 중간정산특례적용은 선택사항임)

3. 임원퇴직금한도액 (원)의 초과액(원)은 기 신고된 기업계좌로 반환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한도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2011.12.31.이전 근무기간 한도 + (퇴직직전3년간 연평균급여환산액 × 10% × 2012.1.1.이후 근무연수 × 3)

4. 퇴직연금 선납입금분(원)은 기업계좌로 반환 (반환신청서에 의해 근로자 동의 필수)

중간정산 특례* 및 당해연도 지급분	기업지급 퇴직금(퇴직연금 입금분 제외)			정산(합산) 근무연수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45)퇴직소득세 산출세액	(19)기산일	(20)퇴사일 (중간지급일)	제외월수
최종 근무연수	입사일	기산일	퇴직일(인출신청일)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입부일시금정보	퇴직급여담보대출상환액		국민연금전환금		합계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원 (가입자부담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리금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1050255 (2020.09.04.개정) 

- ※ 중간정산특례는 과거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하나, 퇴직연금 이외에 명예퇴직금 등 기업지급 퇴직금이 중도인출년도에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 약관(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청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 신탁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 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신청인 (근로/가입자)	홍길동		기업명	㈜**기업	
-----------------	-----	--	-----	-------	--



[DC형 별첨2]

※ 개인형IRP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퇴직예정 근로자가 기업에 제출하는 가입확인서의 예시이며,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확인서

1. 가입자정보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800101-*****
----	-----	------	--------------

2. 퇴직연금 가입정보

용도	퇴직급여수령	계좌번호	090-1234-5678-01
----	--------	------	------------------

* 퇴직급여 입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이연정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3. 과세이연정보 등록요청

구분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FAX
받는기관	농협은행 퇴직연금BPR	02-2080-4226~7	02-2080-4209
보내는기관	(기관명) / (담당자)		

*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원청징수영수증과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탁기관 정보

수탁영업점명	000지점	사업자등록번호	104-86-39742
수탁기관연락처	02-000-0000	수탁기관FAX	02-0000-0000

* 퇴직급여의 입금확인 및 계좌관련 문의는 수탁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은 농협은행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05월14일

농협은행장



04 / 중도인출(DC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

- DC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 근로자인 경우 중도인출 사유발생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장에서는 중도인출 사유와 필요서류 등 업무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중도인출 사유

- DC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립된 퇴직급여의 전액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
- ③ 가입자(배우자포함)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2)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3)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⑥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받은 퇴직연금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2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서류 및 신청가능 시기

•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 ②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용
- ③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무주택자 확인용
- ④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무주택자 확인용
※ 과세기관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과세연도 : 전년도 ~ 당년도
- ⑤ 주택구입 확인용
 1. 일반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분양권 전매의 경우 공급사가 확인한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사본 첨부
※ 공인중개사가 배제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 입금 영수증" 사본 첨부
※ 기존 보유 주택매도 후 또는 매수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할 경우 매도·매수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2. 주택신축 : 건축허가서, 건축실계서, 공사계약서 사본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기관 이체 영수증
 3. 경매낙찰 : 낙찰허가서,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사본, 경매보증금 영수증
- ⑥ 기타 서류 : 위 서류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신청일 당시 위 서류 등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일(계약금 지급 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잔금지급 후 신청 시 잔금지체 영수증 및 매매대상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 이전 완료 시) 추가 제출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임대차계약 보증금 부담

-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 ②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용
- ③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무주택자 확인용
- ④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무주택자 확인용
- 과세기관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과세연도 : 전년도 ~ 당년도
- ⑤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 확인용
- ⑥ 기타 서류 : 위 서류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신청일 당시 위 서류 등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일(계약금 지급 후)로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미용 목적의 치료는 불가)

-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확인용
- ③ 진단서 또는 소견서 :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④ 원천징수영수증 : 직전 임금총액 확인용
- ⑤ 신청시점 직전 1년간의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 의료비 증빙용
- ⑥ 기타 서류 : 위 서류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 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됨
 - ※ 요양 종료 시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가능(기간 내 회사 승인 필)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 ② 법원의 결정문 :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법원 파산 선고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 ② 물적 피해여부 확인
 1. (공통) 건축물대장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2.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3. (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내역
- ③ 인적 피해여부 확인
 1.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2. (실종)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3. (입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의 경우 입원·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 ④ 부양가족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가능 시기
 - 물적피해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인적피해 : (입원) 의료행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종) 생존·사망 확인 등 실종신고의 효력 종료일(단, 실종일로부터 최대 1년)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천재지변)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참고〉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기준

물적피해 : 재난으로 주거시설(소유 또는 임차)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인적피해 : 1)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2) 가입자,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받은 퇴직연금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NH농협은행 서식 제공
 - ② 대출사유 확인 서류
 - ③ 회수조회표 : 3개월 이상 연체 여부 확인, NH농협은행에서 제공
- ※ 신청가능 시기 :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시점 이후

3 처리절차

- 1) 사유에 따른 서류 구비 후 NH농협은행 내점(또는 사전 유선 질의 가능)
- 2)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제출 및 검토 요청
 - 중도인출지급신청서에 회사 명판 및 직인 날인 후 제출
- 3) 본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당자 검토 후 가능여부 및 지급 처리 완료

★ 중도인출 신청 시 유의사항

1. 중도인출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
2.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회사에서 최종근속연수 기산일을 반드시 기재
(과거근로기간 소급여부에 따라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 익일 기재)
3. 가입자부담금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가입자가 세무서 방문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를 제출해야 과세제외로 지급 가능
4. 중도인출 수령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IRP이전 불요)
5. 중도인출 금액은 운용상품을 매도 후 퇴직소득세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신청시점의 조회금액과 다름
6. 신청서에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기명날인 필수
7. 중도인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

원장	팀장	영업점장
영업 기준	원장 1명 미만	영업점장 1명 이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DC/IRP)

확정기여형(DC) IRP 퇴직연금제에서 아래의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기업명	주**기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계좌번호	090-0000-0000	입원여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원
가입자(근로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01.01
		가입자 연락처	02-0000-0000

2. 중도인출 신청정보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 가입자의 (<input type="checkbox"/> 본인명의 주택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주거목적)) 부득이한 사유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의료비(연간인출총액의 1천분의125 초과부담) [연간인출총액*%: _____ 원, 의료비총액(실손제외) : _____ 원] * 산출기준 :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급여명세서 등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input type="checkbox"/> 자연재난(천재지변)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부득이한사유 제외)]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담보대출 상환하기 위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에 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일부 또는 대출원리금 (인출금액 : _____ 원) *일부 인출시 3. 매도상품 지정 선택가능					
입금계좌	입금은행(동행) 계좌번호(302-1234-5678-01) 예금주(홍길동)					
근속년수 정보	입사일	2010.01.01		기산일	2015.07.01	
	기업 별도지급분 (필수: 당해년도지급분이 있을 경우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간지급 동	최종	형산	(45회차소득세 인출세액	(19)기차입	(20)퇴사일 (중간지급일)
						제외 월수
						가산 월수

* 부득이한 사유와 개인IRP 또는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DC, 기업IRP는 [붙임] 별도 첨부

3. 매도상품 지정(일회성)

지급 시 운용상품 중 매도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매도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 지정된 매도순서 또는 약관에 의해 은행이 지정한 매도순서에 의합니다.

상품명	매입원금	매입일자	만기일자	금리/총수익률	매도주문금액/ 매도주문수량	합계
일부인출 시 지정매도일 경우 희망 매도상품 기재						

[본인명의 주택구입/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은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한 사업장에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의료비]
1. 본인은 중도인출 신청 시 제출한 의료비 내역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으로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해당 지출내역으로 과거에 중도인출 신청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중도인출 신청 시 제출한 의료비 내역과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내역이 없으며 중도인출 이후에도 기(既) 제출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 받지 않았습니다.)
3. (중도인출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현재 근로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항후 본인이 신청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동 계좌의 중도인출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도 귀책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신청인 : 홍길동 (인)

1050253 (2021.05.12.개정)



[붙임] 개인IRP 또는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DC,기업IRP 중도인출 신청시 추가 작성

1. 부득이한 사유 필수 필수사항

신청사유 (구비서류)	1.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			
	<input type="checkbox"/>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한도적용) : 진단서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개사)결정일 <input type="checkbox"/> 자연재난(천재지변) :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의 발생일자 2. 사유발생(확인)일자 : (년 월 일)			
※ 6개월이상 요양일 경우 적용 한도	기본한도 ①	의료비 ②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③	합 계 ①+②+③
	200만원			

주1)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시행령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 의료비영수증 및 간병인의 이력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2)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봄)
 3) 증명서류에 반드시 6개월이상의 요양이 행사가 되어 있어야 함(진단서 or 소견서)

- ▶ 적용범위 : 개인IRP인 경우 전체적립금에 적용, 확정거여형(DC) 기업형IRP인 경우 가입자부담금에 적용
- ▶ 적용조건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적용세율 :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재원(이연퇴직소득세×70%),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3~5%)
-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관련 증빙으로 사유발생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적용불가

2. 가입자 부담금 소득(세액)공제 확인사항

가입자부담금 확인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부담금 있는 경우					
	1. 소득(세액)공제내역					
	<input type="checkbox"/> 전액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전액 세액공제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일부 적용(미공제금액 : 원)					
	2. 세액공제내역 확인					
	①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통해 소득(세액)공제금액 확인 후 작성					
	납입연도	납입금액	과세제외금액	납입연도	납입금액	과세제외금액
	2018	1,500,000	0			
	2019	1,500,000	0			
	2020	1,200,000	0			
				합계금액	4,200,000	
	* 연도별 소득(세액)공제 한도(개인형IRP한도 + ISA전환금액의 10%) - 개인형IRP : ~2005년:240만원, 2006~2010년:300만원, 2011~2014년:400만원, 2015년~:700만원 * 2020년~ 만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단, 고소득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ISA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② 타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					
	NO.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누계	소득(세액)공제금액	

※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입자 부담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하며 동 계좌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귀행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신청인 : **홍길동** (인)



4 주요 질의 및 답변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Q1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Q2 매수하려는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 등에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물건 매도인이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2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로써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3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3 중도인출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간혹 종전 주택의 매도계약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계약을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권 말소일과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주택자라 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가 신청 시에는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기존주택의 등기명이가 제3자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Q4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A4

건설사와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권 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내역 사항에 가입자가 계약사항을 승계하는 계약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분양권자와 가입자의 양자 간의 매매계약서로는 분양물건에 대한 정당한 전매사항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임대차계약 보증금 부담

Q1

전세계약 등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A1

불가능합니다. DC 또는 기업형RP제도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불가피하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 엄격히 한정하여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보증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없어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2

중개인 없는 매도인, 매수인 간의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방법(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 등을 인상하는 경우 통상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하는 경우가 많음)

A2

주택매매의 경우에도 중개인 없는 계약은(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상 명의이전 등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매매 및 전세계약 시 반드시 중개인을 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잔금영수증을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전세계약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친족관계(배우자 포함)인 특수관계인간거래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3

DC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전세계약에 대해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A3

전세금(보증금)의 중도인출은 신청 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명의로 세대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종전의 전세계약갱신 및 전세이전의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이나, 세대주가 출가하는 세대원의 전세금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Q1

요양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1

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치료는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상 정확한 병명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며, 진단서 상의 병명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만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Q2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Q3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A3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만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Q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가입자는 언제든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의 사건에 대한 접수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며 개시결정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확정일 확인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Q2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후 면책, 폐지, 복권 결정이 있으면 중도인출이 불가한가요?

A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경우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파산선고의 경우 면책, 복권결정 여부 불문합니다. 즉, 가능합니다.(2013년 2월 개정)

Q3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3 불가합니다. 법원 결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는 중도인출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에 따른 결정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급여 수령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개인형IRP 개요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01. 개인형IRP 개요
 02. 개인형IRP 지급

01 / 개인형IRP 개요

1 정의

-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 또는 여유자금을 자기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2 가입대상

- IRP(퇴직금수령 목적)
 - 퇴직(예정)자
- IRP(세액공제 및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의 여유자금 적립)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
 - ①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 ② 퇴직연금제도가입자(DB,DC가입자)
 - ③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미만, 주 15시간 미만자 포함)
 - ④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⑤ 자영업자 (농·어민 포함)

3 가입대상별 증빙서류

대상	확인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직역연금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직역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연금내역서, 연금법적용확인서, 기여금납입내역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DB·DC 가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4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전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5 운용

타행정기예금, 펀드, 현금성 대기자산에 투자가능

1. 운용상품

- 원리금 보장(정기예금, GIC 등) 및 원리금 비보장(수익증권 등)으로 운용가능
- 정기예금 예금자보호 가능 : 『상품제공 금융기관별 5천만원』
 -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

※ 예금자보호한도 사례

사례1) 당행DC운용(A은행 예금-3천만원)

당(타)행IRP운용(A은행 예금-3천만원)

A은행 정기예금 1천만원

→ A은행 퇴직연금예금 5천만원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시 금액합산), A은행 정기예금 1천만원

사례2) 당행DC운용(A은행 예금-3천만원)
 당(타)행IRP운용(B은행 예금-3천만원)
 A은행 정기예금 1천만원 예치

→ A은행 퇴직연금예금 3천만원, B은행 퇴직연금예금 3천만원, A은행 정기예금 1천만원

6 세제

1. 소득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주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50세 미만	50세 이상 ^{주2)}	
5,500만원(4,000만원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16.5%
1.2억원 이하(1억원 이하)			13.2%
1.2억원 초과(1억원 초과)	7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주3)}		

주1)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주2) 만 50세이상 900만원까지 공제한도 확대는 2022년말까지 한시적 적용(단,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1억원)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주3) 고소득자(총급여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1억원초과)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IRP 400만원 추가입금으로 총 700만원 세액공제

2. 납입금액별 세액공제혜택 예시

연령	구분	IRP	연금저축	공제대상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절세금액 (지방소득세포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0세 미만	5,500만원(4,000만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6.5%	1,155,000
	1.2억원 이하(1억원 이하)	700만원	0	700만원	13.2%	924,000
50세 이상	5,500만원(4,000만원 이하)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6.5%	1,485,000
	1.2억원 이하(1억원 이하)	900만원	0	900만원	13.2%	1,188,000
	1.2억원 초과(1억원 초과)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3.2%	924,000

※ ISA만기금액내 IRP납입 시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

ISA 계약기간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적용

→ 자세한 내용은 알기쉬운 퇴직연금 회계/세무 06 연금수령 시 과세체계 94P 참고

3. 연금 수령 시 과세체계

인출 순서	소득재원	연금으로 인출 (연금수령한도내)		연금 외 인출 (한도초과, 일시금 해지)
1	세액공제 받지않은 가입자부담금	비과세		비과세
2	이연퇴직소득	10년 이하	이연퇴직소득세×70%	이연퇴직소득세
		1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세×60%	
3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적용 ^{주)}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6.5%)
		연금수령나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주)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대상, 나머지는 분리과세

4.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방법

• 개인형IRP 신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 가입경로

금융상품몰> 농협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신규가입

▶ 가능시간 : 평일 09:00~19:30

• 개인형IRP 「예약신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가능 이외 시간에는 예약신규로 가입

▶ 가입경로 : 신규가입경로와 동일(익 영업일 오전 9시에 신규 처리됨)

▶ 가능시간 : 평일 19:30~21:30, 공휴일 09:00~21:30

7 수수료

1. 수수료 요율표

[단위 : %]

구분		퇴직재원(비대면가입시)	개인부담금(비대면가입시)
운용관리 수수료	1억 미만	0.12(0.12)	0.07(0.02)
	1억 이상	0.12(0.12)	0.06(0.02)
자산관리 수수료	1억 미만	0.25(0.25)	0.20(0.20)
	1억 이상	0.23(0.23)	0.18(0.18)
수수료 합계	1억 미만	0.37(0.37)	0.27(0.22)
	1억 이상	0.35(0.35)	0.24(0.20)

2. 장기계약 할인 적용

구분	계약년차	할인율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2차년도	10% 할인
	3차년도	12% 할인
	4차년도	15% 할인
	7차년도	18% 할인
	10차년도	20% 할인

3. 수수료 추가 할인·면제 적용

할인 항목	내용
누적수익“0”이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농협은행과 계약연수 4차년 이상 & 수수료 기준일 누적수익 “0”이하 시)
펀드 가입금액	펀드 가입금액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연금신청 고객	연금신청 고객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연금신청 1년 이내 해지 시 적용 제외)
연령할인(40세 이하)	수수료 계산기준일 현재 만40세 이하인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해 20% 할인 (단, 장기할인 적용 후 연령할인 적용)

※ 2020년 7월 1일 신규, 기 계약 건은 응당일 2020년 7월 1일부터 도래된 계약 건부터 순차 적용하며, 자세한 할인 내용은 약관(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계약서)을 참조하시기 바람.

02 / 개인형IRP 지급

1 연금 지급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연금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급하게 됨. 지급요건은 만 55세이상이며 가입일(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함. (퇴직금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연금지급 신청시 해당요건이 필요하며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2 필요서류

서식명	비고
개인형IRP 연금(등록/변경)신청서 - NH농협은행 서식제공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가입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출력

※ 징구서류 생략가능한 경우

개인형IRP 납입액 중 공제한도 이내 금액까지 소득-세액공제 받았거나, 가입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개인형IRP로 받은 것으로 간주

3 처리절차

1. 금차 지급받는 개인형IRP에 가입자부담금이 있는지 확인
- 가입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필요
2.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지급(연금지급 / 해지) 상담
3. NH농협은행에 개인형IRP 연금(등록 / 변경)신청서 또는 개인형IRP 해지신청서 제출
(가입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도 함께 제출)
4. 해지 또는 연금지급 : 요구불 통장으로 입금

4 비대면 연금 신청·조회·취소 방법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1. 인터넷뱅킹

• 조회 > 신탁 > 개인형IRP > 개인형IRP 연금신청

- ① 계좌선택
- ② 유의사항 확인
- ③ 연금지급조건 선택
- ④ 연금신청완료

• 조회 > 신탁 > 개인형IRP > 개인형IRP 연금신청 조회/취소

- ① 계좌선택 (조회 또는 연금신청 취소 선택)
- ② 연금신청 조회 또는 취소 등록
- ③ 연금신청 조회 또는 취소 결과 확인

2. 스마트뱅킹

• 퇴직연금 > 개인형IRP > 연금신청

- ① 계좌선택
- ② 유의사항 확인
- ③ 계좌정보 확인 및 연금지급조건 선택
- ④ 연금신청완료

• 퇴직연금 > 개인형IRP > 연금조회/취소

- ① 계좌선택 (조회 또는 연금신청 취소 선택)
- ② 연금신청 조회 또는 취소 등록
- ③ 연금신청 조회 또는 취소 결과 확인

3. 유의사항

- 가입자부담금은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됨.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구비 후 영업점 방문필요
- 비대면(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연금신청 시 최소 연금지급 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 2013.2.28. 이전에 가입된 적립IRP는 5년 이상 연단위, 2013.2.28. 이전에 가입된 DB형(전액 과세이연), DC형, 기업형IRP에서 과세이연된 IRP는 영업점 내점 후 연금신청
- 비대면으로 신청한 건에 한해 비대면으로 취소 가능(영업점에서 신청한 경우 비대면으로 취소 불가)

5 비대면 해지 신청·조회·취소 방법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1. 인터넷뱅킹

- **조회 > 신탁 > 개인형IRP > 개인형IRP 해지**
 - ① 계좌선택
 - ② 유의사항 확인
 - ③ 계좌해지 정보 입력 / 지급예상액 조회
 - ④ 계좌해지 정보 확인
 - ⑤ 계좌해지 결과 확인
- **조회 > 신탁 > 개인형IRP > 개인형IRP 해지 조회/취소**
 - ① 계좌선택
 - ② 해지신청 조회 또는 취소 등록
 - ③ 해지신청 취소 결과 확인

2. 스마트뱅킹

- **퇴직연금 > 개인형IRP > 해지신청**
 - ① 계좌선택
 - ② 유의사항 확인
 - ③ 계좌해지 정보 확인 / 지급예상액 조회
 - ④ 계좌해지 결과 확인
- **퇴직연금 > 개인형IRP > 해지신청조회/취소**
 - ① 계좌선택
 - ② 해지신청 조회 또는 해지신청 취소 등록
 - ③ 해지신청 조회 또는 해지신청 취소 결과 확인

3. 유의사항

- 연금 개시 된 계좌 해지 불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하여 과세제외 등록 후 해지
- 0원 계좌는 해지 후 취소 불가

[개인형퇴직연금(IRP) 별첨1]

[별지 제 26호의2서식] (2014. 3. 14. 개정)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명세

④ 확인 기간	2016.1.1. ~		
과세연도	공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2016			
2017			
2018			
2019			
2020			



개인형IRP 연금(등록/변경) 신청서

담원	팀장

전산인자란

개인형IRP 연금개시 변경 중단 을 신청합니다.

1. 기본정보

가입자명(송계자)	계좌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주택주소	

2. 연금신청정보

연금지급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액연금 <input type="checkbox"/> 일부연금 + 일부일시금 일시금액(원) <small>※ 일시금액은 1회만 선택가능</small>	DB/DC 가입일자	년 월 일
연금수령희망계좌	농협 계좌번호 () / 예금주()		
일부일시금수령희망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연금수령주기	<input type="checkbox"/> 1개월지급식 (월) <input type="checkbox"/> 3개월지급식 (분기) <input type="checkbox"/> 6개월지급식 (반기) <input type="checkbox"/> 12개월지급식 (연)		
최초연금수령일자	년 월 일 ※매월 1~4일은 연금한도관리로 인해 선택이 불가합니다.		
기간지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기간 (년) ▷ 최초 연금수령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단위 (근퇴법상 최소 5년 이상), 최대 50년 ▷ '13.2.28 이전 가입 연금계좌의 경우 (DB/DC로부터 퇴직금이 급여이전 된 경우도 인정하나 DB는 퇴직소득 전액 개인형IRP로 입금되어야 함) : 5년 이상 연단위 ■ 조기집중기간 적용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조기집중기간을 선택할 경우 연금지급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집중기간은 5년이며, 조기집중기간 중 지급은 2배수로 지급이 됩니다. 		
금액지정형	<input type="checkbox"/> 정액형 <input type="checkbox"/> 체증형(5%) <input type="checkbox"/> 체감형(5%) <input type="checkbox"/> 최초연금수령금액 (원) <small>▷ 최초연금수령금액은 10,000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단, 소액설정으로 인해 연금기간이 50년 초과되는 금액은 지정 불가.</small>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지정형은 고객이 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추후 금액변경 및 연금수령기간 변경이 불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정액형은 금액변경 가능) ■ 기타소득을 원천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수령액이 타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50201 (2020.11.16.개정)



연금지급변경 (일정/금액) ※ 일정변경 시 - 수령(O) 미수령(X) ※ 금액변경 시 - 숫자로 표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액공제여부

여 (세액공제 금액 : 원) 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은 전부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원금 및 총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5.5%~3.3%)를 과세합니다.

연금수령중단 신청(주의)

여 부 ■ 연금수령중단기간 (년 월 ~ 년 월)

[주의]

- 중단기간은 2개월 이상만 가능하며, 중단 종료연월은 연금종료예정일자 기준 1년 이전일로 가능합니다.
- 중단 후 중단취소는 불가합니다. 중단종료일이 경과되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단을 신청합니다.

확인자 (인)

- ※ 연금개시이후 연금지급예정인 2개월 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 보유상품 교체매매 가능합니다.
- ※ 연금지급 시 선순위 상품의 교체매매로 인하여 고객지정순서가 아닌 차순위 상품으로 매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상품에 대해 매도순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은행 약관에 명시된 매도순서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 약관(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탁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 신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상기 본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계좌의 연금(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	-----

1050266 (2020.11.16.개정)



■ 연금(등록/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세금정보

1. 과세세의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립하신 금액 중 연도별세액(소득)공제한도 내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금액(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총수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서류발급 :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다음해 7월에 발급 가능합니다.

2. 연금수령중 해지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초과분은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신청 후 실제 연금수령 없이 해지하는 경우 원천별로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원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기타소득세원(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IRP운용수익)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매년 5월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소득 금액 (타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 금액 포함)

일반 중도해지 시	연금수령한도 ^{주1)} 내 금액 중 과세대상금액
연금 수령 시	매년 1월 ~ 12월의 연금 수령액 중 과세대상 금액

주) 연간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 : '13.2.28. 이전 가입자는 6년차부터 적용, '13.3.1. 이후 가입자는 1년차부터 적용

4.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소득원천별 원천징수 상이)

□ 부득이한 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주1)}, ③ 가입자(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주2)},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연금계좌사업자의 영업정지, 안·하가 취소, 해산, 파산

주1) 퇴직금을 인출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의 경우에 한함(개정 17.2.3 이후 입금 분)

주2) 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한도 적용

[의료비 한도 : 기본 200만원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월수×150만원) + 의료실비]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연금계좌 정보

1. 연금개시신청 후에는 더 이상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2. 연금수령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연금수령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단위** (근퇴법상 최소 5년 이상), 최대 50년
- '13.2.28 이전 가입 연금계좌의 경우 (DB/DC로부터 퇴직금이 급여이전 된 경우도 인정하나 DB는 퇴직소득 전액 개인형RP로 입금되어야 함) : **5년 이상 연단위**

3. 연금등록일 -1일(전일자) 평가액이 100만원 이상 보유해야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4. 연간 최소연금 지급액은 10만원입니다.

5. 연금계좌에서 연금지급 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과세세의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② 퇴직소득
 - ③ 기타소득세원(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총운용수익)
6. 연금개시이후, 연금지급예정인 2개월 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 보유상품 교체매매 가능합니다.
7. 연금지급 시 선순위 상품의 교체매매로 인하여 고객지정순서가 아닌 차순위 상품으로 매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상품에 대해 매도순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은행 약관에 명시된 매도 순서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문서보관소 발송금지 -



담당	담당

개인형IRP 해지 신청서

전산인자란

1. 기본정보

가입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주택주소			

2. 해지 신청정보

해지사유	<input type="checkbox"/> 일반해지	<input type="checkbox"/> 부득이한 사유 해지
세액(소득)공제금액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입금계좌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3.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확인사항

신청사유 (구비서류)	1.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한도적용)* : 진단서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일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 : 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의 발생일자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단,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생일자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사망 : 사망신고서, 기본증명서의 사망일자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 - 2. 사유발생(확인)일자 : (년 월 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한도 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비^(주1) 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 ①+②+③</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td> <td></td> <td></td> </tr> </table> <p>※3개월이상 요양일 경우 적용 한도</p> <p>주1)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시행령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 의료비영수증 및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주2)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봄) 주3)증명서류에 반드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진단서 or 소견서)</p>	기본한도 ①	의료비 ^(주1) ②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③	합 계 ①+②+③	200만원		
기본한도 ①	의료비 ^(주1) ②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③	합 계 ①+②+③					
200만원								

부득이한 사유 적용 유의사항

- 적용조건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적용세율 :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재원(이연퇴직소득세×70%),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3~5%)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관련 증빙으로 사유발생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적용불가

1050257 (2020.11.13.변경)



4. 세액(소득)공제금액 있을 경우 확인사항

1. 소득(세액)공제내역				
<input type="checkbox"/> 전액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전액 세액공제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일부 적용(미공제금액 : 원)				
2. 세액공제내역 확인				
① 국세청 발급 "연금소득자들의 소득(세액)공제명세"를 통해 소득(세액)공제금액 확인				
납입연도	납입금액	소득(세액)공제금액		
합계				
* 연도별 소득(세액)공제 한도 ~2005년:240만원, 2006~2010년:300만원, 2011~2014년:400만원, 2015년~: 700만원				
② 타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				
NO.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누계	소득(세액)공제금액
※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입자 부담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후약권(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탁금지급의 연기,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신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기준 및 내용은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서의 조항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	-----	-----

■ 가입자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금개시신청 후 해지 시 연인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초과분은 소득원천 별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제원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기타소득제원(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IRP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매년 5원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여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단 소득원천별 원천징수 상이)
 단, 부득이한 사유 중 3개월 이상 요양 시는 인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인출한도 = 200만원+(후적월당 150만원)+ 의료실비]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므로 세금부담으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 교육

본 장에서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이해확대를 위해 가입자 교육의 정의·교육방법 및 가입자 아카데미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 가입자 교육의 개요
 02. 가입자 교육 방법
 03. 가입자 교육서비스 이용방법

01 / 가입자 교육의 개요

1. 가입자 교육이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NH농협은행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NH농협은행이 전자우편(이메일),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2. 가입자 교육의 근거

• DB형, DC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기업형IRP, 개인형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3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가입자 교육 의무의 주체

DB형 / DC형	기업형IRP/개인형IRP
사용자(위탁한 경우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4. 가입자 교육의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① 제도 일반에 대한 내용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교육사항
-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교육사항

02 / 가입자 교육방법

1. 가입자 교육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제도	교육 방법
DB형·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1)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2) 직원연수·조화·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DB형	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2. 가입자 교육일정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NH농협은행(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매년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방법	가입월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	상시 수강	
이메일(전자우편) 교육	1 ~ 6월	10월 초
	7 ~ 12월	4월 초
서면 교육 / 상시 게시	1 ~ 6월	11 ~ 12월
	7 ~ 12월	5 ~ 6월
대면(집합) 교육	연중 수시 신청 가능	

3. 가입자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NH농협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서비스(<https://pension.nonghyup.com>)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 가입자 법정 필수교육과정(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을 수강하시면 교육이수 처리됩니다.
- 연중 상시 수강할 수 있으며, 무제한 재수강 가능합니다.

• 이메일 교육

- NH농협은행은 가입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교육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서면 교육

- 서면 교육신청자 또는 온라인, 이메일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서면 교육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발송 시기 : 회사의 가입월에 따라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 발송 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

• 상시 게시

- 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가입자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화·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 대면(집합) 교육

- 교육장소 및 시기를 협의하여 실시합니다.

03 / 가입자 교육서비스 이용방법

1. 가입자 교육서비스 접속하기

- 방법 1) 농협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nonghyup.com>)
- 방법 2) NH인터넷뱅킹을 접속하여 퇴직연금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방법 3)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으로 “농협퇴직연금” 검색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2. 로그인하기

- NH농협은행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 ☞ NH농협은행 외 타행/타기관에서 발급받은 “금융결제원공인인증서”도 별도의 신청·등록 없이 로그인 가능합니다.



3. 교육서비스 보기

1) MY퇴직연금 > 가입자교육 > 교육서비스 > 제도구분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NH Bank 퇴직연금' (NH Bank Retirement Savings) interface. The user is logged in as '박 고객님' (Ms. Park) with a remaining time of 09:46:30.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퇴직연금제도', 'MY퇴직연금', '퇴직연금상담', '퇴직연금 아카데미', and '사업자공시자료'. Under 'MY퇴직연금', the '가입자교육' (Member Education) sub-menu is selected, and '교육서비스' (Education Service) is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교육서비스' and shows a progress bar with '01 제도 선택' (01 System Selection) as the current step. Below the progress bar, there are dropdown menus for '제도구분' (System Category) and '가입사번호' (Registration Number). The '제도구분' dropdown is set to '퇴' (Retirement) and '가입사번호' is '100'. A red box highlights the '조회' (Search) button at the bottom.

2) 교육자료 확인 : 교육자료를 모두 확인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NH Bank 퇴직연금' (NH Bank Retirement Savings) interface. The user is logged in as '박 고객님' (Ms. Park) with a remaining time of 09:46:30. The navigation menu is the same as in the previous screenshot. The '교육서비스' (Education Service) sub-menu is selected, and the progress bar shows '02 교육자료 확인' (02 Education Material Confirmation) as the current step. Below the progress bar, there are dropdown menus for '제도구분' (System Category) and '가입사번호' (Registration Number). The '제도구분' dropdown is set to '퇴' (Retirement) and '가입사번호' is '100'.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교육서비스' and show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교육자료 확인' (Education Material Confirmation) and '확인' (Confirm). The table contains four rows of education materials, each with a '확인' button highlighted in a red box. A red box also highlights the '다음' (Next) button at the bottom.

교육자료 확인	확인
· 퇴직연금 납입현황	확인
·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현황	확인
· 표준급여액	확인
· 운용현황보고서	확인

-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필수)

NH Bank 퇴직연금

NH Bank

박: 고객님 | 남은시간: 09분 46초
시간연감
로그아웃

퇴직연금제도
MY퇴직연금
퇴직연금상단
퇴직연금 아카데미
사업자공시자료

계약정보조회/관리
IRP신규가입
투자상황분석
적립금운용
조회
보고서/증명서
가입자교육

가입자교육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03
가입자 교육 동영상
01 02 03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길잡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산관리, 은퇴설계 등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교육서비스

- 이수기간 : 1년 365일 달성 가능 합니다.
- 고객님의 교육 달성 대상 기간 : 2019/11/19~2020/11/19
-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4개 동영상과 끝까지 보시면 받게 의한 가입자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교육 수강
(총 30분 이내)
수강시 가입자교육 이수처리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필수)

알면 힘이 되는 퇴직연금(선택)

퇴직연금제도란? 1
퇴직연금 제도 특징 및 차이점, 퇴직급여 지급결과 및 이점 등 운영에 관해 알아봅니다.

미이용 동영상보기

퇴직연금제도란? 2
퇴직연금 제도 필요대상, 중도인출 등 기타운영과 노후설계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이용 동영상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1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정책 및 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이용 동영상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란? 2
부담금 운용현황의 이해와 추기납입에 대한 세제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이용 동영상보기

- 알면 힘이 되는 퇴직연금(선택)

NH Bank 퇴직연금

NH Bank

박: 고객님 | 닉네임: 09분46초
시간연장 | 로그아웃

퇴직연금제도
MY퇴직연금
퇴직연금상단
퇴직연금 아카데미
사업자공시자료

계약정보조회/관리
IRP 신규가입
투자성향분석
적립금운용
조회
보고서/증명서
가입자교육

가입자교육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03
가입자 교육 동영상

01
02
03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길잡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산관리, 은퇴설계 등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교육서비스

- 이수기간 : 1년 365일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교육 인정 대상 기간 : 2019/1/19~2020/1/18
-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4가지
- 받으실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택교육 수강
(총 35분 이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필수)

알면 힘이 되는 퇴직연금(선택)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자산 관리 가이드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세대별 이슈사항과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이름 | 동영상보기

고적성양별 포트폴리오 전략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 절차,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이름 | 동영상보기

은퇴설계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은퇴설계 필요성과 은퇴 필요 자금 계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숙연인지 알아봅니다.

미이름 | 동영상보기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세금혜택

퇴직연금 과세체계와 과세이연, 연금수급을 통한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이름 | 동영상보기

퇴직연금과 임대형 부동산, 주식, 채권과의 비교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련 세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미이름 | 동영상보기

6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된 약관에 의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01. 퇴직연금 수수료

01 / 퇴직연금 수수료

1 퇴직연금 수수료 납입근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구분	수행 업무	수수료
운용관리 신탁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8조]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를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시행령 제4조, 제10조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 신탁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시행령 제4조, 제10조	자산관리수수료

2 수수료 요율표(2021.7.1. 시행 예정)

[단위 : %]

구분	제도구분		DC형	제도구분	
	적립금 자산평가액	DB형		적립금 자산평가액	기업형IRP
운용관리 수수료	10억원 미만	0.35	0.35	1억원 미만	0.35
	30억원 미만	0.30	0.30		
	50억원 미만	0.28	0.28		
	100억원 미만	0.25	0.25		
	200억원 미만	0.22	0.22		
	500억원 미만	0.20	0.20	1억원 이상	0.32
	1,000억원 미만	0.19			
	1,000억원 이상	0.07	0.15		
자산관리 수수료	500억원 미만	0.30	0.30	1억원 미만	0.25
	5,000억원 미만	0.28		1억원 이상	0.23
	1조 미만	0.26			
	1조 이상	0.25			

* 개정 내용은 퇴직연금 사이트(pension.nonghyup.com) 공지 사항, 사업자 공시자료에 등재

3 장기계약 할인 적용(2011.12.19. 시행)

구분	계약년차	할인율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2차년도	10% 할인
	3차년도	12% 할인
	4차년도 이후	15% 할인

4

특별적용 수수료 적용(2018.12.10. 시행)

▶ 특별적용 수수료 적용 대상

- 퇴직보험(신탁)에서 계약이전 : 계약 초년도에 한하여 전환된 부담금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퇴직연금 이전(농협→농협 / 타행→농협) : 직전 계약일로부터 계약이전일까지 경과연수를 인정하여 장기할인 적용
- 복수계약체결 : 당/타행과 최초로 체결했던 계약일로부터 추가계약일까지 경과연수를 인정하여 장기할인 적용(당행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경우 포함)

5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50% 할인 적용

→ 시행일 이후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적용

▶ 수수료 할인 대상 기업 (2019.7.15. 시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시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회원시설

▶ 수수료 할인 대상 기업 확대 (2021.7.1. 예정)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세부사항은 운용관리/자산관리신탁계약서 참조

6 수수료 납부 시기

- 납부시기 : 후취 방식(매년 1회)
-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계약 응답일)에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7 수수료 부담 주체 및 납부 방법

구분	운영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납부방법
DB형	사용자	사용자	자산 차감
DC형 / 기업형IRP 기업부담금	사용자	사용자	현금 납부
DC형 / 기업형IRP 근로자부담금	가입자	가입자	자산 차감

7

알림서비스

퇴직연금 관련 각종 업무 이벤트 발생 시
기업 사무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으로
e-mail / SMS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01. 알림서비스



01 / 알림서비스

알림서비스

업무구분	전송매체	DB		DC/기업형IRP	
		사무관리자	가입자	사무관리자	가입자
운용현황보고서 발송	e-mail	-	-	-	○
보유상품교체매매 신청/취소 결과안내	e-mail	○	-	-	○
운용지시(계속성) 등록/변경 결과안내	e-mail	○	-	-	○
추천 포트폴리오 안내	e-mail / SMS	-	-	-	○
기업부담금 납입예정금액 안내	e-mail	-	-	○	-
기업부담금 자동이체 납입예정금액 안내	e-mail	○	-	○	-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안내	e-mail / 우편	-	-	-	○
적립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안내	e-mail / SMS	○	-	-	○
적립금 운용지시불가 안내	e-mail / SMS	○	-	-	○
포괄적운용지시 결과 안내	SMS	-	-	-	○
저축은행상품 재예치 한도초과 안내	SMS	-	-	-	○
정기수수료 납입안내	e-mail	-	-	○	-
사용자부담금 입금내역(DB, DC, 기업형IRP 사무관리자 통지)	SMS	○	-	○	-
사용자부담금 입금내역(DC, 기업형IRP 가입자 통지)	SMS	-	-	-	○
가입자부담금 입금내역(DC, 기업형IRP 사무관리자 통지)	SMS	-	-	○	-
가입자부담금 입금내역(DC, 기업형IRP 가입자 통지)	SMS	-	-	-	○
수익률급변동 안내	e-mail / 우편	-	-	-	○
가입자교육자료 발송	e-mail / 우편	-	○	-	○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예정 안내	e-mail / SMS	○	-	-	○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e-mail	○	-	-	○
WEB회원 가입안내	e-mail	○	○	○	○
보유상품교체매매(목표수익률도달) 신청취소내용 안내	e-mail	○	-	-	○
목표수익률 도달통지(목표수익률 등록계좌)	SMS	○	-	-	○
펀드수익률 통지(목표수익률 등록계좌)	SMS	○	-	-	○
목표수익률도달 보유상품교체매매 결과안내	SMS	○	-	-	○
DB 이익계산서 이메일발송	e-mail	○	-	-	-
재정검증결과 안내 이메일 발송	e-mail	-	○	-	-
DB 부담금 산출 결과 안내	e-mail	○	-	-	-
DB재정검증 실시 안내	e-mail	○	-	-	-
DB 예비재정검증 결과 안내	e-mail	○	-	-	-
지급접수내역 사무담당자 통지 (지급등록 시 선택 통지)	SMS	○	-	○	-
기업부담금 납입예정금액 안내 이메일 발송 안내	SMS	-	-	○	-
이익계산서 이메일 발송 안내	SMS	○	-	-	-
수익률급변동 이메일 발송 안내	SMS	-	-	-	○
가입자교육자료 이메일 발송 안내	SMS	-	○	-	○
분할매수 해지 안내	SMS	○	-	-	○

〈운용현황보고서 통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NH농협은행은 매년 실시되는 가입자 교육을 통해 가입자에게 연 1회 운용현황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가입자 중 이메일 수신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매분기말 기준 운용현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

인터넷뱅킹

NH농협은행은 NH퇴직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인터넷 Web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 <https://pension.nonghyup.com>

(또는 검색창에 '농협퇴직연금' 입력 바랍니다.)



01. 인터넷뱅킹

01 / 인터넷뱅킹

1 주요 제공서비스 현황

서비스 메뉴	내용
퇴직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제도별 안내 / NH퇴직연금 특징 안내
MY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퇴직연금 인터넷뱅킹 사이버 창구 서비스 • 가입자 교육 동영상 제공
퇴직연금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연금계리 / 세제 제공 • 서식 / 법령 등의 자료 제공
사업자공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H퇴직연금 수익률 등 사업자 공시자료



2 기업 사무담당자 퇴직연금 홈페이지 이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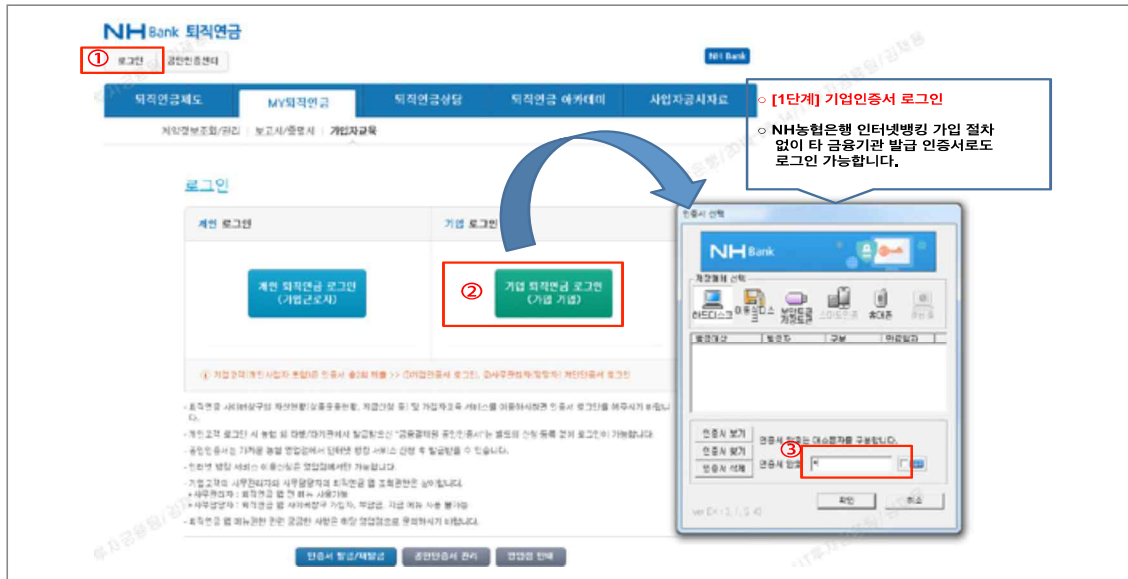
1. 퇴직연금 기업 banking서비스 이용메뉴 현황

	메뉴명	DB	DC	기업형IRP
계약정보조회/관리	퇴직연금가입현황	○	○	○
	계약정보조회	○	○	○
	가입자정보조회/수정	○	○	○
	휴복직정보조회등록	○	○	○
	수수료조회	○	○	○
투자성향분석	나의투자성향분석	○		
적립금운용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		
	보유상품 교체매매 조회	○		
	보유상품 교체매매 취소	○		
	상품군등록(DC)		○	
	목표수익률설정	○		
	자사상품규제 자동재예치 동의	○		
조회	보유상품 평가현황	○		
	부담금납입결과조회	○	○	○
	가입자별기업부담금납입현황		○	○
	계좌 입출금 내역조회	○	○	
지급	지급목록조회	○		
	지급대상자조회/등록	○		
보고서/증명서	퇴직연금제도가입확인서	○	○	○
	부담금 납입결과확인서	○	○	○
	이익계산서	○		
	운용현황보고서	○	○	
	수수료차감결과안내서	○		
가입자교육	전체이수현황	○	○	○
	개인별이수현황	○	○	○
	교육서비스	○	○	○

※ DC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지시를 가입자가 직접 하며 원천징수 신고 및 세금납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므로 기업의 사무담당자에게 해당 메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NH퇴직연금 WEB 이용 매뉴얼(기업 사무담당자용)

1)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 이용절차 : 로그인 - 기업 퇴직연금 로그인(가입 기업) - 개인인증서 로그인(퇴직연금 사무담당자)
 - ▶ 기업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은 로그인 시 기업 및 사무담당자의 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1단계 기업공인인증서로 퇴직연금 가입기업 인증
 - 2단계 사무관리자/담당자의 개인인증서로 사무담당자 인증
 - ▶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타 금융기관에서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1) DB형 퇴직연금 지급업무

NH Bank 퇴직연금
 권경선 구분매 고객님 | 남은시간: 09분 55초 | 시간연장 | 로그아웃 | NH Bank

퇴직연금제도 | ① MY퇴직연금 | 퇴직연금상담 | 퇴직연금 아카데미 | 사업자공시자료

계약정보조회/관리 | 투자성향분석 | 적립금운용 | 조회 | ② 지급 | 보고서/증명서 | 가입자교육

지급 | 지급대상자 조회/등록

지급목록조회 | ③ 지급대상자조회/등록

01 지급대상자 조회

제도구분: 권경선구분매 :: 확정급여형 :: 090 ④
 가입자번호: 090 조회 ⑤

⑤ 조회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지급 > 지급대상자조회/등록

지급 | 지급대상자 조회/등록

지급목록조회 | 지급대상자조회/등록

02 지급대상자 조회 목록

지급 퇴직 대상자 지급신청

- 퇴직금 지급 신청대상자를 등록 및 조회합니다.
 - 퇴직급여 예상액은 추정금액(퇴직금추계액-적립비율)으로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번	가입자명	가입자주민번호	계좌상대 잔액상태	접수일 지급일	지급접수일 지급예정일	퇴직금추계액 적립비율	퇴직급여예상액 지급방식	비고
1	조	780211-*****	정상			8,645,910원 123.37%	11,105,213원	지급신청
2	홍	691120-*****	정상			29,213,610원 123.37%	37,793,647원	지급신청
3	라	601108-*****	정상			3,759,930원 123.37%	4,964,221원	지급신청
4	계	620120-*****	정상			0원 123.37%	0원	지급신청

지급신청 후 조회 시 확인 가능

확인

- 메뉴 위치 : MY퇴직연금 - 지급 - 지급대상자조회/등록
- 이용 절차
 - ▶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 지급신청 후 재조회시는 접수일자 / 지급예정일 확인 가능합니다.

2-2) DB형 퇴직연금 지급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지급 > 지급대상자조회/등록

지급대상자 조회/등록

03 지급대상자 등록

01 02 **03** 04 05

① 퇴직정보 세부내용

가입자명	조	가입자주민번호	780211-*****
입사일자	2014/03/01	퇴직일자	2020년 06월 14일
지급종류	퇴직	지급사유	일반
무공부퇴직	아니오	일시금지급사유	선택
지급형태	일시금		
지급방식	적립비율	연역지급	

② 퇴직일자

③ 지급형태

④ 일시금지급사유

⑤ 급여이전정보

지급형태가 "급여이전"인 경우 IRP계좌 정보 입력

IRP 수권기관 구분: 선택

수권운동권리기관: 수권운동권코드:

IRP 계좌번호: 예금주:

※ 퇴직급여 IRP 개설시만 급여이전이 가능합니다. (회사 IRP 개설 규약 또는 연금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세부내용

NH Bank

①, ② 모두 "Y"일 경우에만 전액지급방식 적용

① 조회결과 (지급방식: 전액지급방식)

① 최소적립비율 미만여부(직접 사업년도 및 기준 재정감증결과) (단위: 원)

기준일자	기준적립준비금	연금재원적립금	적립비율	최소적립비율	전액지급여부
2020-02-28	81,413,490	52,704,951	129.03 %	90.00 %	Y

· 기준 적립준비금 > Min(계속기준 적립준비금, 비계속기준 적립준비금)

② 지급누계액 과다여부 (단위: 원)

기준일자	계초적립금	연중 입금금액	연중 지급누계액	지급비율	전액지급여부
2020-05-15	0	0	0	0.00 %	Y

· 지급비율이 25%를 초과한 경우 전액지급이 불가함

닫기

• 이용 절차

① DB형 지급방식 세부내용을 확인합니다.

- 전액지급방식 : 퇴직금 총액을 지급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 불가. 재정검증 결과 전액지급 가능한 경우에만 영업점 내점하여 처리 가능)

- 적립비율방식 : Min(퇴직금총액, (퇴직금추계액 * 적립비율)) 만큼 지급합니다.

② 퇴직일자 입력

③ 지급형태 선택 : 일시금 / 급여이전(IRP이전)

④ 일시금(세후금액을 퇴직자의 입출식계좌로 지급) 선택 시 사유 입력 필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아래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퇴직자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상환 후 차액은 개인형IRP로 이전)

-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3) DB형 퇴직연금 지급업무

• 지급금 정보(지급방식:적립비율지급, 적립비율:129.37%)

① 퇴직금 총액	4,000,000 원	추계액	3,759,930원
DB지급액 MIN[퇴직금총액, 추계액, (추계액×적립비율)]	3,759,930 원	국민연금전환금 (기업반환)	원
② 퇴직소득세(기업반환)	원	지방소득세(기업반환)	원
기업반환	지급액	은행	
		계좌번호	
근로자 수령	지급액	은행	전체
	3,759,930원	계좌번호	

최종지급 전 금액확인 필수

③

지급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

- 가입자 본인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IRP 이전인 경우 IRP 계좌로 입금)
- 퇴직소득세(일시금지급 시), 국민연금전환금을 입력해야 기업의 원천징수 업무를 위한 해당금액이 기업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적립비율이 낮아 기업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세금보다 많은 경우 기업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총액 : 기업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
- 추계액 : 각 사업년도 종료일에 당해 기업의 현 취업 규칙상에 정해진 퇴직급여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금액
- DB지급액 : 퇴직금 총액, 추계액, 추계액×적립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수익증권 지급을 신청하신 건은 동일자 매도 요청 건을 일괄 취합하여 익명업일(=수익증권 투자설명서 상의 판매청구일) 오전에 자산운용사에 매도 요청을 합니다. 이때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은 실제 운용사 환매청구일부터 계산을 하며 기준시간 이전 거래로 처리합니다. 실제 자금은 환매대금 지급일에 매도 완료되어 익명업일에 지급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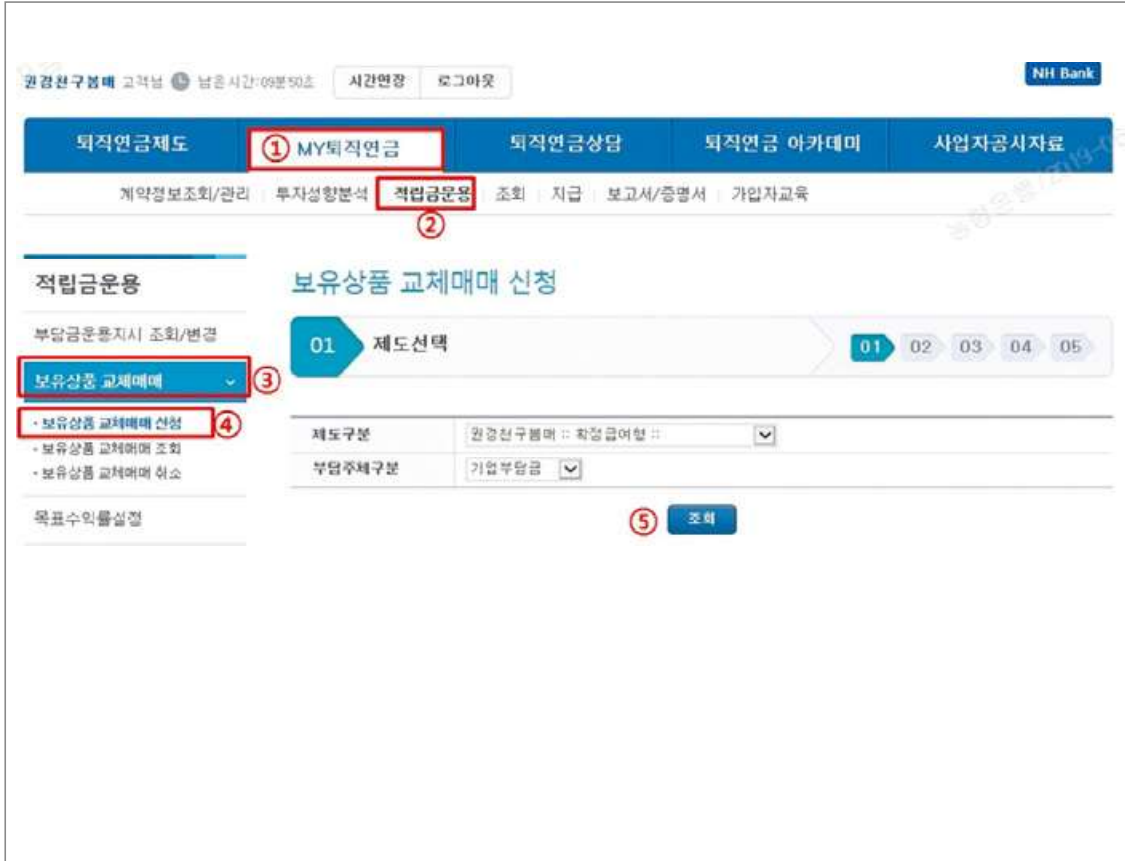
•이용 절차

- ① 근로자 퇴직금 총액을 입력합니다.(세전금액)
- ② 국민연금전환금 지급액 차감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 기업반환
- ③ 퇴직소득세 금액 입력 → 일시금 지급 시 기업의 원천징수 업무를 위해 주민세 금액과 합산하여 기업 반환 계좌로 반환됩니다. 단, 적립비율이 100%로 미만으로 기업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세금보다 많은 경우 기업반환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④ 근로자수령액 및 기업 반환금액을 최종 확인합니다.
- ⑤ 일시금 지급시 근로자 수령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전 근로자 개인형IRP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개인형IRP에 퇴직금 이체를 위해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개인형IRP 개설 영업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1)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 메뉴 위치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 교체매매 유의사항
 - ▶ 보유상품 교체매매는 현재 보유 중인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한 후 그 매도금액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거래입니다. 이 때 매도되는 정기예금 상품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미래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비율을 변경하려면 부담금 운용지시 거래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 펀드상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 분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금융감독원 온라인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12.10. 이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보유상품 교체매매 시 창구판매용펀드는 매수가 불가하며 **창구판매용펀드와 동일하게 운용되지만 판매보수가 낮은 온라인전용펀드 (P2e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DC형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전에 지정한 **운용상품(상품군)**으로만 **상품운용**이 가능하며 회사의 사무담당자가 온라인 전용펀드 등 가입자가 운용을 희망하는 상품을 상품군에 등록해주어야 상품 매수가 가능합니다.

3-2)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교체매매 신청

02 매도상품 선택

• 매도상품 선택
 - 매도를 희망하는 상품 매도선택에 체크 후 매도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전액, 일부, 지정매도 등 선택가능)
 - 전액 - 해당상품 전체 매도, 일부 - 매도수령/금액 또는 비율 지정입력, 지정 - 해당상품 상세명세에서 매도금액 지정입력
 - 정기예금은 만기전 매도시 일반중도해지비용이 적용됩니다.

① 매도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

기입은행 1년특약연금정기예금0B 보유수량 53,655,144 평가금액 53,655,144 원

매도 가능수량/금액(원) : 53,655,144

② 매도 방법 전액 일부 지정 매도방법 선택

지정매도상품상세

(1) 1년(0B) 정기특약연금정기예금	매도선택 <input type="checkbox"/>
2013년 이후 매수여부	여
최초가입일자	2020/12/09
만기일자	2021/12/09
약정금리/수익률	2.10
보유수량	50,818,024
평가금액(원)	51,102,919
매도가능수량/금액(원)	50,818,024
매도수령/금액합계	0

※ 지정매도 선택 시에는 상품명세별로 매도상품 선택 필요
 (정기예금 매도 시 만기일자 확인 필수
 ⇒ 일반중도해지비용 적용)

• 이용 절차

▶ STEP 2. 매도상품 선택

- ① 매도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② 매도방법(전액/일부/지정)을 선택합니다.

※ 상품 종류에 따라 매도 주문방법 상이함.

순번	상품종류	매도방법
1	정기예금	전액/지정
2	현금성자산	전액/일부
3	투자상품(펀드)	전액/일부/지정

※ 지정매도 선택 시에는 상품명세별로 매도상품 선택 필요

- ③ 매도 단위(금액/비율/수량)를 입력합니다.

3-3)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교체매매 신청

03 매수상품 선택

01 02 03 04 05

매도 금액 합계 53,655,144 원

① 상품추가

상품명	매수비율(%)	매수매수금액	상품약제
국민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DB(1년)	100 %	53,655,144	삭제
매수비율합계	100	53,655,144	

⑤

⑥ 다음 취소



“상품추가” 버튼 클릭 시 아래 화면으로 연결됨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운용상품 추가

* 고객님의 투자성향분석 정보 [투자성향분석 다시하기]

투자자 유형	투자분석 유효기간

* 상품유형 선택 및 검색

② 상품 유형 선택 관리금 보장상품 전체상품(면도포함)

상품명검색: 상품명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회

* 조회상품 리스트
장기예금 관리는 월 단위로 공시되며 상품매수일의 관리가 적용 됩니다.

선택	상품종류	상품유형	상품명	관리금 보장여부	투자등급	금리(%)
③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DB (3월)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DB(1년)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DB(2년)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DB(3년)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DB(5년)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우리은행3개월퇴직연금장기예금DB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우리은행1년퇴직연금장기예금DB	예	매달사할없음	0.0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우리은행2년퇴직연금장기예금DB	예	매달사할없음	0.00

다음

④ 운용상품 추가 취소

•이용 절차

▶ STEP 3. 매수상품 선택

- 절차 : ① 상품추가 → ② 상품 유형 선택 → ③ 매수상품 선택 → ④ 운용상품 추가
→ ⑤ 상품별 매수비율 입력 → ⑥ 다음
- 매수단위는 “%”로만 입력 가능하며, 매수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3-4)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운용상품 추가

• 고객님의 투자성향분석 정보 [투자성향분석 다시하기](#)

투자자 유형	투자분석 유효기간
--------	-----------

• 상품유형 선택 및 검색

상품 유형 선택	<input type="radio"/> 원리금 보장상품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상품(펀드포함)
상품명검색	상품명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운용상품 추가

• 투자성향분석 or

기존 투자성향유지 동의함

투자성향분석 다시하기

• 본인의 기존에 작성했던 투자성향 진단 설문지의 내용이 현재의 투자성향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성향분석을 새로 등록 합니다.

취소

•이용 절차

- ▶ 매수상품 선택 시 상품 유형을 전체상품(펀드포함)으로 선택하는 경우 매수상품에 펀드상품이 포함되므로 투자성향분석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일(2021.5.10.) 이전에 투자성향분석을 진행하신 경우, 해당 투자성향분석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2021.5.10. 일자 이후로 새로이 투자성향분석을 필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성향분석 다시하기를 선택하면 투자성향분석 설문지로 연결됩니다.

3-5)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03
매수상품 선택

01
02
03
04
05

문용상품 추가

· 약관 및 필수 확인 사항

경남은행 3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DB

상품약관(필수)

확인함

상품설명서(필수)

확인함

상품유용 고객확인내용

원리금보장상품가입 공통확인사항(필수)

원리금보장상품가입 공통확인사항(필수)

- 정기예금은 상품매수일(만기재결제일) 기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 DC, IRP형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가입자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의 합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티시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제공회사인 티금융회사에서 원리금지급을 보장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재매치 특약 : 원리금보장상품(비율보증형,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전까지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운용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매치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 중 보험계약을 금리연동보험, 신탁계약을 대기자금으로 운용

원리금보장상품가입 공통확인사항을 충분히 읽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다음

취소

• 이용 절차

- ▶ 선택한 매수상품의 약관 및 상품운용에 대한 고객확인사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6)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신청

교체매매 신청

04 보유상품 교체매매 등록

01
02
03
04
05

· 매도대상상품 (단위:원)

상품명	매도주문수량/금액(원)
KD저축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 1년(DD)	50,010,024
매도금액 합계	50,010,024

· 매수대상상품

상품명	매수비율(%)
공남은행 3년 퇴직연금정기예금DD	100
매수비율 합계	100

계약서 및 상품 관련 자료를 수령하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text" value=""/> @ nonhyup.com 농협 <input type="button" value="v"/>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로 계약서류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핸드폰 번호	010 - <input type="text" value=""/> - <input type="text" value=""/>
전자계약서 확인	전자계약서 내용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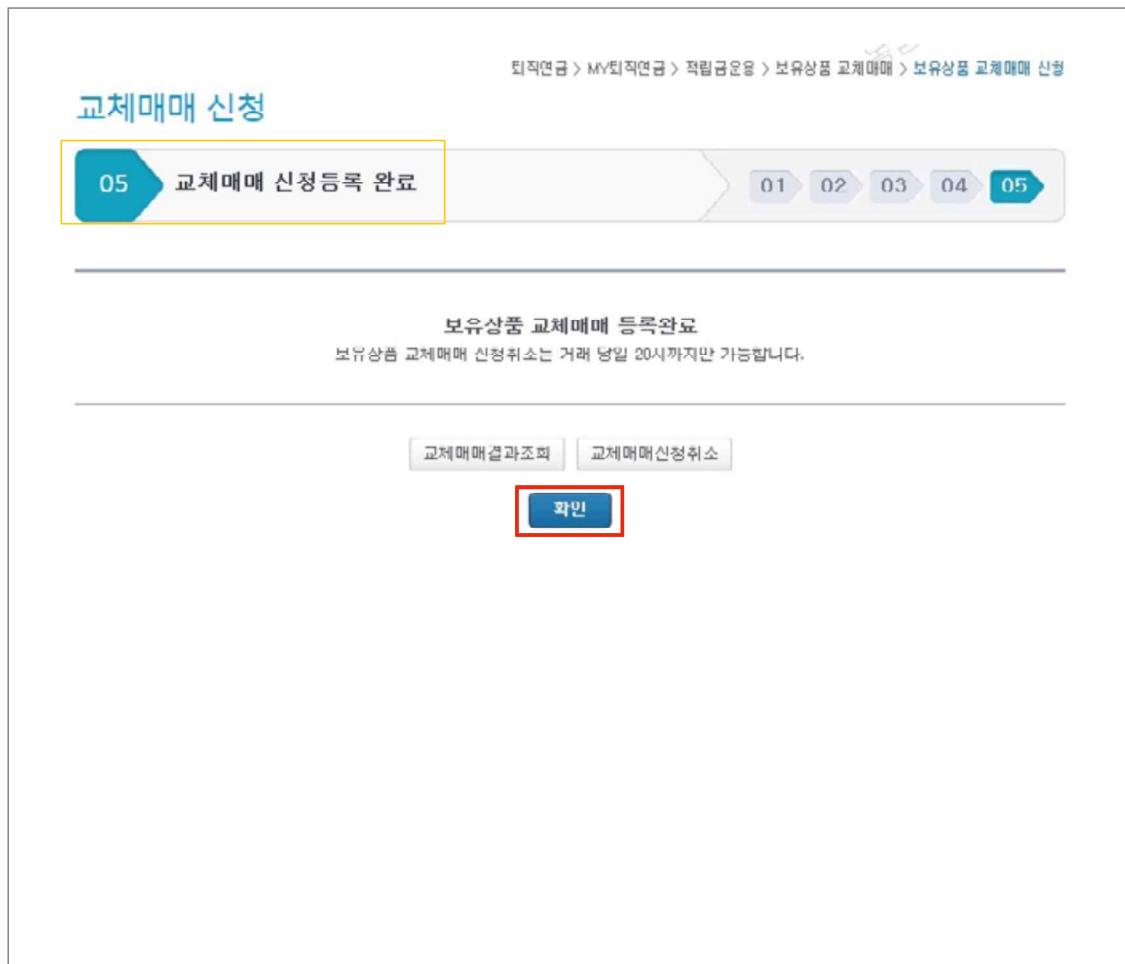
신청등록
취소

• 이용 절차

▶ STEP 4. 보유상품 교체매매 등록

- 매도대상상품과 매수대상상품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계약서 및 상품 관련 자료를 수령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계약서를 '내용보기'하여 확인 후 신청한 내용과 일치시 최종 신청등록을 하시면 퇴직연금 전자계약서가 요청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3-7)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 이용 절차

- ▶ STEP 5. 교체매매 신청등록 완료

3-8)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보유상품 교체매매 조회

제도구분	<input type="text" value=""/>
가입자번호	<input type="text" value=""/>
가입자명	<input type="text" value=""/>
조회기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2021</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년</div> <div style="margin-right: 5px;">05</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월</div> <div style="margin-right: 5px;">01</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일</div> <div style="margin-right: 5px;">부터</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2021</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년</div> <div style="margin-right: 5px;">05</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월</div> <div style="margin-right: 5px;">07</div>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margin-right: 5px;">일</div> <div style="margin-right: 5px;">까지</div> </div> <div style="margin-top: 5px;"> 당일 전일 3일 7일 </div>
적립금구분	<input type="text" value="선택하세요"/>

조회

• 조회결과
① 스위칭 매수 진행상태가 '진행중'인 경우 요청 금액은 비율(%)로 표시됩니다.
(단위: 원, %)

순번	등록일자	적립금구분	자산 기관	상품명	주문일자	매도 수량/금액	매수 방법	매수 금액/비율
	진행상태	거래구분			결제일자			
1	2021.05.01	사용자	농협	기업은행 1년 퇴직연금정기 예금DB	2021.05.04	53,655,144		0
	진행중	매도			2021.05.04			
2	2021.05.01	사용자	농협	KB은행 퇴직 연금정기(예금 DB(1년))	2021.05.05	0	비율	100
	진행중	매수						

- 메뉴 위치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조회
- 이용 절차
 - ▶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보유상품 교체매매 매도/매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3-9) DB형 보유상품 교체매매 업무

보유상품 교체매매 취소

01

조회

01

02

03

제도구분	(현)연명 :: 광성금융협 ::
가입자번호	<input type="text"/> 조회
부담주체구분	기업

- 당일자 교체매매 완료분만 취소 가능합니다. (당일자 이전 교체매매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① 조회

02

매도내상상품

01

02

03

- 보유상품 매매 신청 취소는 고객의 자산에 변동될 수 있는 거래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 상품명을 클릭하시면 매수상품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	등록일자 거래구분	자산기권	상품명	매도 수량/금액	매수 방법	매수 수량/비율
② <input style="border: 1px solid red;" type="radio"/>	2021.04.12 일부(지정매도)	농협	KB저축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 1년(DB)	50,010,024	금액	50,010,024

③ 신청취소 취소

03

교체매매 신청 취소완료

01

02

03

- 보유상품 매매 등록이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수번	등록일자 거래구분	자산기권	상품명	매도 수량/금액	매수 방법	매수 수량/비율
1	20210412 일부(지정매도)	농협	KB저축은행 퇴직연금장기예금 1년(DB)	50,818,024	금액	50,818,024

④ 확인

• 메뉴 위치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보유상품 교체매매 - 보유상품 교체매매 취소

• 이용 절차

- ▶ 보유상품 교체매매 거래 당일 20:00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 ▶ 보유상품교체매매내역을 조회 후 선택하여 신청취소합니다.

4-1) DB형 부담금운용지시 변경 업무



- 메뉴 위치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 부담금운용지시 변경 시 유의사항
 - ▶ 미래에 입금되는 부담금에 대해 매수될 상품 및 운용비율을 변경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운용비율은 변경 이후 입금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 ▶ 펀드상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 분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금융감독원 온라인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12.10. 이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보유상품 교체매매 시 창구판매용펀드는 매수가 불가하며 창구판매용펀드와 동일하게 운용되지만 판매보수가 낮은 온라인전용펀드(P2e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참고 : DC 상품군 등록
 - DC 가입자가 운용가능한 상품을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전체상품 적용'으로 등록된 경우,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상품'을 지정한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을 운용하려면 회사의 사무담당자가 해당 상품을 DC 상품군에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홈페이지 메뉴 위치 : MY퇴직연금 > 적립금 운용 > 상품군등록(DC)

4-2) DB형 부담금운용지시 변경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02
상품별 매수비용 입력

01
02
03
04

>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지시 내역입니다.
 > 운용비용 변경시 상품별 운용비용 합계는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 특정상품 추가란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운용지시'를 의미합니다.
 > 포괄적 운용지시 추가란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만기·비용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를 의미합니다.
 > 포괄적 운용지시 운용비를 선택 시 차리금보장상품 추가는 불가능하며, 펀드상품(실적배당상품)만 추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운용지시상품 추가

특정상품추가

상품종류	상품명	투자등급	투자한도 (%)	운용비용(%)	상품삭제
예금	신한은행1년퇴직연금정기예금DB	해당사항없음	100	100	삭제
운용비용합계				100	

다음

취소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운용상품 추가

• 고객님의 투자성향분석서 정보 투자성향분석서 다시하기

투자자 유형	공격투자성	투자분석서 유효기간	2020/06/15
--------	-------	------------	------------

• 상품유형 선택 및 검색

상품 유형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원리금 보장상품 <input type="radio"/> 전체상품(펀드포함)
상품명검색	국민은행

조회

• 조회상품 리스트
 정기예금 금리는 월 단위로 표시되며 상품매수일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선택	상품종류	상품유형	상품명	원리금 보장여부	투자등급	금리(%)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3개월)	예	해당사항없음	1.24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6개월)	예	해당사항없음	1.38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1년)	예	해당사항없음	1.88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2년)	예	해당사항없음	1.89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3년)	예	해당사항없음	1.90
<input type="checkbox"/>	예금	예금	국민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5년)	예	해당사항없음	1.90

④ 운용상품 추가

취소

4-3) DB형 부담금운용지시 변경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02

상품별 매수비율 입력

01

02

03

04

▶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지시 내역입니다.

▶ 운용비율 변경시 상품별 운용비율 합계는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 특정상품 추가란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운용지시'를 의미합니다.

▶ 포괄적 운용지시 추가란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안기·비중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를 의미합니다.

▶ 포괄적 운용지시 운용비율 선택 시 원리금보장상품 추가는 불가능하며, 펀드상품(실적배당상품)만 추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운용지시상품 추가

특정상품 추가

상품종류	상품명	투자등급	투자한도 (%)	운용비율 (%)	상품삭제
예금	신한은행 1년퇴직연금정기예금DB	해당사항없음	100	50	삭제
예금	경남은행 3년퇴직연금정기예금DB	해당사항없음	100	50	삭제
운용비율합계				100	

⑥ 다음

취소

• 이용 절차

▶ STEP 2. 상품별 매수비율 입력

- 절차 : ① 포괄적 운용지시상품 추가 또는 특정상품추가 → ② 상품 유형 선택 → ③ 매수상품 선택
→ ④ 운용상품 추가 → ⑤ 상품별 매수비율 입력 → ⑥ 다음
- 상품 유형을 전체상품(펀드포함)을 선택하면 펀드상품 매수가 포함되므로 투자성향분석 화면으로 연동됩니다.
- 매수단위는 "%"로만 입력 가능하며, 매수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운용비율이 0%인 상품은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 포괄적 운용지시를 선택한 경우 기존에 선택한 원리금보장상품(포괄적운용지시 포함)은 자동삭제 됩니다.

4-4) DB형 부담금운용지시 변경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02
매수상품 선택

01
02
03
04

운용상품 추가

· 약관 및 필수 확인 사항

경남은행3년퇴직연금장기예금DB

상품약관(필수)	확인함
상품설명서(필수)	확인함

상품분봉 고객확인내용

원리금보장상품가입 공통확인사항(필수)	확인함
----------------------	-----

- 정기예금은 상품매수일(만기재예치일) 기준 금리가 적용됩니다.
- DC, IRP형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매금사보호법에 따라 매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가입자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티시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제공회사인 티금융회사에서 원리금지급을 보장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특약 : 원리금보장상품(이율보증형,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전까지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운용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 중 보령계약을 금리연동보통, 신탁계약을 대기자금으로 운용

원리금보장상품가입 공통확인사항을 충분히 읽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취소

4-5) DB형 부담금운용지시 변경 업무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03 부담금운용지시 등록 01 02 03 04

제도구분 (원)선명 :: 확정급여형 ::

상품종류	상품명	투자등급	투자한도 (%)	운용비율(%)
예금	신한은행 1년 퇴직연금장기예금DB	해당사항없음	100	50
예금	경남은행 1년 퇴직연금장기예금DD	해당사항없음	100	50
운용비율합계				100

- 계약시 및 상품 관련 자료를 수령하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입니다.)

E-mail @ nonghyup.com

이메일로 계약서류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계약서 확인 전자계약서

퇴직연금 > MY퇴직연금 > 적립금운용 >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부담금운용지시 조회/변경

04 등록완료 01 02 03 04

부담금운용지시 NH Bank

고객님의 퇴직연금 전자계약서가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 이용 절차

- ▶ 선택한 매수상품의 약관 및 상품운용에 대한 고객확인사항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 부담금운용지시 등록 내용(운용상품 및 비율)을 최종 확인하고, 계약서 및 상품 관련 자료를 수령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계약서를 '내용보기'하여 확인 후 신청한 내용과 일치시 최종 신청등록을 하시면 퇴직연금 전자계약서가 요청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2021 개정판 실무자
길라잡이 알기쉬운 **퇴직연금**

펴 낸 곳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발 행 월	2021년 6월
주 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 NH농협은행 승인 없이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와 복제행위를 금합니다.(비매품)